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5**



# 1

## 거시금융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전용식 황인창	3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12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21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최창희	29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41
마이너스 금리 국제 발행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50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임태준	60

# 2

## 보험제도 및 정책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윤성훈	71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	77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이기형	85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박선영 이선주	9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선정 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이승준	107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	118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박선영 이선주	130

# 이슈 \_Contents

## 3

### 고령화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전성주 류건식	143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 류건식	152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최창희	162
건강생활관리를 위한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시사점	오승연 김미화	173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류건식 김동겸	182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강성호	193

## 4

### 보험경영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	이태열 전용식	205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 김혜란	213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준 황인창 이성은	225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전용식 조재린	237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박선영 정봉은 이선주	247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	이기형	256

# 1. 거시금융

- |                                   |             |
|-----------------------------------|-------------|
| 1.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 전용식 황인창     |
| 2.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전용식 이해은     |
| 3.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 4.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 최창희         |
| 5.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 전용식 이해은     |
| 6.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배경과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
| 7.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 임태준         |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전용식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 요약

- 금융산업의 융합, 경쟁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 과거 두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금융실명제, 금산분리, 금융전업주의, 초기 자본금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음.
- 90년대 후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와 정보통신 등 비금융회사들이 설립을 주도하였고, 설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전업주의 완화와 더불어 금융업권간 융합, 금융과 제조업의 융합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은행금융·제조업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화된 사업모형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금융·제조업 기업의 참여와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권간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의 유연한 적용, 금융전업주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채널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업권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업권간 융합이 업권간 공정한 경쟁과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함.

# 1. 검토배경



- 2001년과 2008년에도 있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 “Mobile Direct Bank”, 혹은 “On-Line Bank”로 지칭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은행, 증권, 보험, IT, 제조업 기업들이 설립함.
    - 비대면채널 중심의 은행으로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IT와 금융의 융합,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축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금융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2015년에 검토할 계획임.<sup>1)</sup>
    -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무산 원인인 업무범위 설정,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그리고 자본금 규제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임.

〈표 1〉 은행 분야 중장기 검토과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금융위원회, 2014. 7. 24)

근거	제안 내용	검토의견
은행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li> <li>•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리스크와 무관하게 최소 자본금 등의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li> <li>•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li> </ul>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원칙과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대주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 적용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수단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 다양한 업무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은행으로 보고 있음.

1) 2014년 12월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포함함.

-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이슈와 고려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가계의 부채 상환여력이 위축되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예대업무에 그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온라인 채널에서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음.

## 2.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였고 이후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점영업은행을 설립하며 은행업에 진출함.
  -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검토회를 촉진하고자 비금융기관의 20% 이상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함.
    -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주식취득을 허가받아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산업자본이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금융건전성을 금융감독당국이 감독할 수 있으며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사실상 은행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모회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음.
  - 은행법 개정 이후 일본의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의 설립을 시작으로 소니그룹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였고, 지점영업을 하는 은행도 설립됨.
    -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닌 은행으로는 2004년 설립된 후 2010년 파산한 Incubator Bank of Japan, 2005년 도쿄도(Tokyo Metropolitan Government)가 84% 지분을 보유한 ShinGinko Tokyo은행이 있음.
-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되었는데,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둔 것은 아니고 기존 은행의 특수한 형태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유한 위험관리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국 통화감독

---

청(Office of Currency and Comptroller)이 승인함.

- 1997년 Net Bank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활발해짐.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금 규모와 유동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정성이 적절한(Well Capitalized)” 수준 이상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 위험가중자본비율 10% 이상, Tier 1 위험자기자본 비율 6.0% 이상(FDIC는 초기 3년간 8.0%) 이상, 부채비율(Leverage Ratio)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은행이 설립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영국 HSBC가 설립한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 등임.
- 보험업의 경우 영국 보험회사인 Prudential U.K.가 1995년 유럽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Egg Bank를 설립하였고 스웨덴의 대형보험회사 Skandia도 Skandia Banken을 자회사로 설립함.

■ 미국, 유럽,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IT발전, 거래금융(Transaction Banking)의 보편화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로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

-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한 형태, 비은행금융회사가 설립한 형태, 산업자본이 설립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영국의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는 은행이 설립한 사례이며 일본의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Japan Net Bank, Jibun Bank 등은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임.
-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사업다각화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남.
  - 미국의 경우,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 자동차회사가 설립한 경우가 많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의 보험회사인 Principal Financial Group과 Nationwide, 네덜란드의 ING가 설립한 ING Direct 등이 있음.

\* ING Direct는 ING가 전세계적으로 설립한 온라인 직판은행인데, 2007년 Capitle One에 인수됨.

〈표 2〉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주설립 주체	은행명	설립년도	총자산	순영업이익	세부설립주체
은행	SBI Sumishin Net Bank	2007	3.2조 엔	71억 엔	SBI Holdings, 스미토모 신탁은행
	Sony Bank	2001	2.1조 엔	34억 엔	Sony파이낸셜홀딩스,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JPMorgan
	The Japan Net Bank	2000	6,160억 엔	29억 엔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전력·통신업체
	Jibun Bank	2008	5,960억 엔	15억 엔	미쓰비시 동경은행, 통신(KDDI)
비금융	BMW Bank	1999	106억 달러	1.5억 달러	BMW
	Ally Bank	2004	978억 달러	8.8억 달러	GM
	Rakuten Bank	2001	1.1조 엔	74억 엔	전자결제회사
	Seven Bank	2001	7,900억 엔	212억 엔	유통업체
증권업	E*Trade	2001	453억 달러	3.1억 달러	증권회사
	Charles Schwab Bank	2003	1,033억 달러	7.8억 달러	증권회사
카드업	American Express Bank	2000	405억 달러	18.7억 달러	카드회사
	Discover Bank	2000	781억 달러	24.4억 달러	카드회사
보험업	Nationwide Bank	2007	99억 달러	0.4억 달러	보험회사
	Principal Bank	1998	215억 달러	1,500만 달러	보험회사
기타	Barclays Bank Delaware	2001	201억 달러	3.3억 달러	개인
	CIT Bank	2000	176억 달러	1.1억 달러	금융그룹
	Sallie Mae Bank	2005	168억 달러	3.0억 달러	금융회사(학자금대출)

주: 총자산, 예금은 2014년 3월, 순영업이익은 2013년 1~12월 기준.  
 자료: 각사 재무재표;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참고〉 미국 Principal Bank 사례

- 미국의 보험그룹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이 설립한 Principal Bank는 모회사 고객 중심의 사업모형
- 설립 초기에는 모회사 고객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기존 은행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후 모그룹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서비스에 주력하며 모그룹의 고객들과 밀착된 관계(Glue Relationship)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Principal Life의 건강보험상품과 병행한 Health Saving Account와 퇴직연금 이체계좌인 Safe Harbor 401K Saving Account 등이 대표적인 상품임

-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모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사업모형 차별화 노력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가 가속화됨.
    - 미국의 경우 2001년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4,400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3.1%로 성장함.
    - 운영이익은 2013년 7.2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운영이익 대비 5.1% 수준임.
    - 일본의 경우 2014년 3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8.5조 엔, 총예금은 7.5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의 총자산, 총예금 대비 각각 0.9%, 1.1%임.
    - 2012년 당기순이익은 4.3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1.4%를 차지함.
  - Prudential Bank의 Glue Relationship Strategy, Japan Net Bank의 유가증권 투자 중심 전략, Sony Bank의 주택모기지론, eBank의 인터넷 쇼핑물 지급결제 서비스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니치마켓을 확보하고 있음.

### 3.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주요 이슈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이슈는 아래의 <표 3>에 기술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명 확인 위탁 허용, 자본금 규모는 500억 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거나 금산분리나 금융전업주의로 인해 업무범위는 시중은행의 업무에 비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자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대출이 제한되는 등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비대면채널을 통해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표 3〉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주요 정책적 이슈

주요 이슈		내용	검토안
금융실명제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점에 가서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면채널이 없거나 빈약)	실명 확인 위탁을 허용
설립인가기준	설립자본금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설립비용과 소규모 운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자본금 완화 검토 <sup>2)</sup>	500억 원 이하로 설정
	금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유리한 ICT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업무범위 제한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금융전업주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전업주의 완화 검토	
업무범위		비대면거래의 특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고,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업무범위 설정	은행채 발행 제한, 기업 대출을 제한, 소액 외환거래 취급 등
소비자보호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의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사고 방지, 불법거래 방지 등	

■ 금산분리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 증권, 카드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대형 IT회사와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의결권 지분을 4% 이상으로 설정하여 금산분리 규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알려짐.<sup>3)</sup>
- 그러나 산업자본의 소유비율이 높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가능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

-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업무범위가 제한될 경우 특화된 사업 모형 모색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어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2) 현행: 은행의 설립자본금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

3) 파이낸셜 뉴스(2015. 1. 2).

통한 대출증기는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승인하고 있음.

## 4. 정책적 제언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통한 성장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이 예상되나 업권간 융합과 경쟁을 통한 혁신은 미미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유럽의 사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보험, 증권, 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하여 설립 기업의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 비은행금융회사와 제조업 기업의 경우 신수익원 확보, 기존 고객에 대한 편익 향상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규제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더 작을 수 있음.

〈표 4〉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관별 설립유인과 제약

기관	설립유인	제약
기존 은행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비대면채널(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과 중복</li> <li>• 지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 상충 예상</li> </ul>
비은행 금융기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전업주의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음
비금융기관 (IT 기업 및 제조업체)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수익원 확보	금산분리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음

■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어 은행 지점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 미국과 유럽의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특화된 사업모형을 통해 비은행 금융업의 비용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음.
    - 금융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핀텍(FinTech) 역시 기존의 예금-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혁신한 사례임.
  - 은행업의 채널다변화는 기존에 관측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비대면채널이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보유출 등에 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함. [kiri](#)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요약

- 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명목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2014년 3.9%(1/4분기에서 3/4분기까지의 평균 성장률임)로 소폭 상승에 그침.
-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 매매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이후 주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변화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와 소매판매, 주택매매거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 주택매매의 경우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 증가율이 -18.2%에서 8.6%로 상승했으나 2012년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됨.
  - 소매판매의 경우 2012년 5월 규제 완화 전후 3개월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0.1%p 하락했고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의 경우 0.7%p 상승에 그침.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둔화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인 금융정책과 금융회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작아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음.
  - 2011년부터 정책당국이 양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은 미약할 수 있음.

## 1. 검토배경



- 2012년 5월과 2014년 8월 제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명목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3.9%를 기록함.<sup>1)</sup>
  - 2014년 8월 규제 완화 이후 주택매매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 4/4분기 실질국민총생산(GDP)은 전기에 비해 0.4%, 민간소비는 0.5%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3/4분기 실질국민총생산이 전기대비 0.9%,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0% 증가한 것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
  
- 그러나 가계부채는 규제완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2014년 4/4분기말 가계신용은 1,089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9.8조 원, 전년동기말 대비 67.6조 원 증가함.
    - 2014년 4/4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27.6조 원, 전년동기에 비해 66.4조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임.
  - IMF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지만,<sup>2)</sup>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음.
    -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면 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2002년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도입 이후 가계부채와 주택매매 거래, 민간소비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02년 이후 DTI, LTV 관련 규제는 16차례 변화하였는데 주택매매 거래 자료가 가능한 2007년 이후 규제 변화 전후 3개월간 가계부채, 주택매매, 민간소비 증가율을 비교함.
  -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면 국내 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분석은 의미가 있음.

1) 2014년 명목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4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평균치를 사용함.

2) 기획재정부(2015. 2. 13), “15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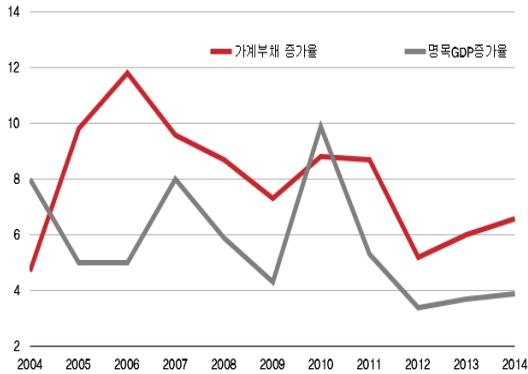
## 2. 규제 변화와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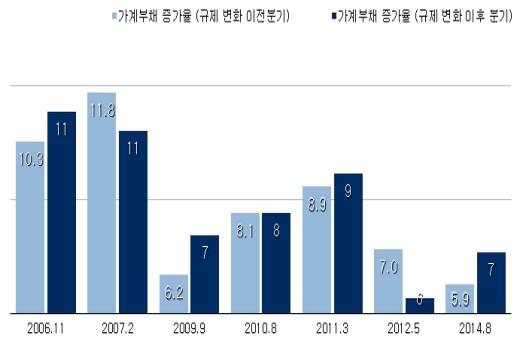
■ 가계신용<sup>3)</sup> 기준 가계부채는 2012년 5월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sup>4)</sup>

-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2년 5월 전후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7.0%와 5.5%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5.9%에서 6.9%로 확대됨(〈그림 2〉 참조).<sup>5)</sup>
  - 2007년 2월 규제 강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 4/4분기 11.8%에서 2007년 2/4분기 10.6%로 둔화되었음.<sup>6)</sup>

〈그림 1〉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 GDP증가율



〈그림 2〉 규제 변화 시기별 가계부채 증가율



주: 2014년 명목GDP증가율은 2014년 1/4분기에서 3/4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신규 주택구입 보다는 기존 대출 상환, 주거비용 마련, 생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금융업권간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

- LTV, DTI의 금융업권별 차이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보다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큼.

3)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됨. 가계대출은 1,029조 원이며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 365조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95조 원으로 460조 원 규모로 가계대출의 45%를 차지함. 가계부채는 통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금순환표 기준과 전세보증금 및 기업대출에 포함된 개인 사업자 대출을 고려할 경우 가계신용 기준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음.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2014년 9월 말 1,265조 원이며 기업대출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4년 12월 말 209.3조 원임.

4) 2002년 도입된 LTV, DTI 규제 변화는 〈첨부〉 참조.

5) 규제 변화 전후 증가율은 규제완화 해당 월이 포함된 분기의 이전과 이후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6) 2009년 7월과 9월의 경우 규제 강화 시기가 근접하여 그 효과는 서로 유사함.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01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고 이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임.
- 반면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은 6조 6천 억 원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4.1조 원이 기타대출임.<sup>7)</sup>
-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사용 목적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 비중은 2014년 1월~7월간 53.8%로 상승함.
  - 주택 구입용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 2014년 1~7월은 53.8%에 달해, 3년동안 10%p 이상 상승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사용 목적은 ‘기존 대출자금 상환’(33%), ‘생계자금’(25.2%), ‘전·월세자금’(15.9%) 등임.

〈표 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금액

(단위: 조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금취급기관	43.8	46.1	20.3	27.3	58.6
주택담보대출	24.3	29.2	12.2	13.9	42.5
기타대출	19.4	16.9	8.1	13.4	16.2
예금은행	22.0	24.4	11.4	13.9	38.5
주택담보대출	15.9	19.3	9.4	10.7	36.7
기타대출	6.0	5.1	2.1	3.2	1.8
비은행	21.8	21.7	8.8	13.5	20.1
주택담보대출	8.4	9.9	2.8	3.2	5.8
기타대출	13.4	11.7	6.0	10.2	14.3

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임.

■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4년 8월 규제 완화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말 생명보험산업의 대출금 규모는 99조 4,282억 원으로 2013년 말 90조 9,072억 원에 비해 17.1% 증가하였음.
  - 2014년 말 우체국 보험을 포함한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90조 원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추산됨.<sup>8)</sup>
  - 생명보험회사 대출 증가율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 7.06%를 상회함.
- 주요 보험회사의 2014년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조 3,935억 원으로 7월 말 24조 6,081억

7) 기타 대출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고금리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임.

8) 공식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 6월 말 대비 2014년 말 생명보험회사 대출증가율 5.8%를 적용하여 추산하였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4년 6월 말 기준임.

원보다 2,146억 원이 감소함.<sup>9)</sup>

- 2014년 상반기 중 3,000억 원 가량 늘었으나 한 달만에 큰 폭으로 감소함.

- 규제 완화 이후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계약이 은행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3. 가계부채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 1) 주택매매거래

■ 최근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8.6% 증가함.

- 2014년 8월 규제 완화 이전 분기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18.2% 감소하였으나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8.6% 증가함.
  - 2006년 1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시기는 2007년 2월과 2012년 5월 이후에 불과하고, 같은 시기 주택매매거래는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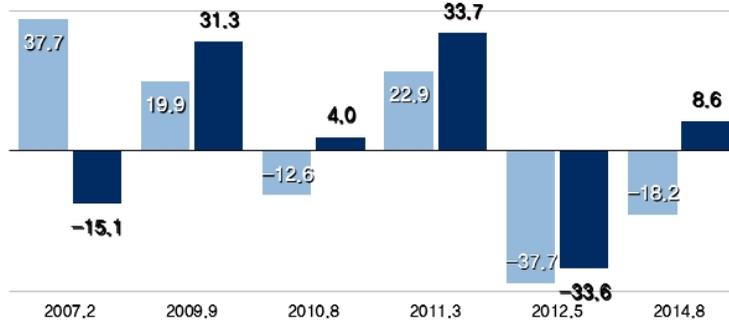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주택매매거래 건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임.

- 2007년 2월 규제 강화와 2012년 5월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이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5월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 경우 주택매매거래 건수 증가율은 규제 완화 이전 -37.7%에서 -33.6%로 감소폭이 줄어들었음.

9) 주요보험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주요 보험회사들임. 뉴시스(2014. 9. 4).

(그림 3) 규제 변화 전후 주택매매거래 증가율

■ 주택매매거래 건수 (% , 규제완화 이전 분기) ■ 주택매매거래 건수 (% , 규제완화 이후 분기)



■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매매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세가격 상승이 최근 주택매매거래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됨.
  - 주택공급의 경우 2002년 주택건설 실적은 666,541호에서 2010년 386,542호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 586,884호로 증가한 후 2013년 440,116호로 감소함.
-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기타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2)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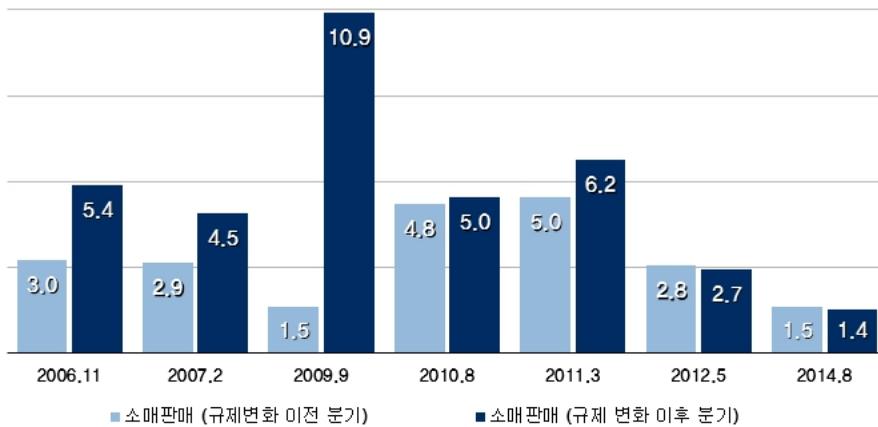
■ 201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매매거래 증가, 소비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져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음.

- 2009년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매매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하였음.
  - 2009년 규제 변화 이후 가계부채는 7.4% 증가하였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0.9%를 기록함.
- 2010년의 경우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에 그쳤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5.0% 수준에 그쳤음.

■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소매판매 증가에 미친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8월 규제 완화 이후 4/4분기 민간소비 전년동기 증가율은 1.4%로 규제 완화 이전 1.5%와 유사한 수준임.
- 2012년 5월의 경우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소매판매는 규제 완화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그림 4〉 규제 변화 전후 소매판매 증가율



주: 2014년 규제 완화 이전과 이후 분기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임.

■ 과거 LTV, DTI 규제 변화는 가계부채 → 주택구입 → 소비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2년 이후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로 주택시장의 장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가 주택수요와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증가에 기여하는 크기는 줄어들었음.

## 4. 결론 및 시사점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가계부채 증가와 실물경제 활성화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경기부진 지속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인 것으로 보임.
    - 주택매매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와 이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 감소로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 인구비중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는 신규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중 증가는 부동산 자산 매각 등 유동화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sup>10)</sup>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2011년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가운데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가계의 생활자금 비중이 커진다는 점은 가계의 소득불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경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정책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함.
    - 2011년부터 정책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대출의 양적인 억제임.
    - 그러나 2014년 8월 DTI, LTV 규제 완화는 실물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대출 규모를 증가시키

10) 생산가능 인구 및 주요 자산보유세대인 40~59세 인구 비중이 미국의 경우 2006년, 일본의 경우 1993년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됨.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등 경기침체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고령인구 비중 확대에 의한 주택수요 감소의 영향은 배제할 수 없음.

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음.

- 금융회사는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 동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함. **키리**

## 〈첨부〉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는 2002년 이후 17차례 변화하였음.

- LTV 규제는 2002년 9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DTI 규제는 2006년 3월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담보위주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실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첨부 표 1〉 국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변화

구분	내용	적용대상	성격
2002.09	전 지역 LTV 60% 적용	은행/보험	도입
2003.10	투기지역 10년 이하 대출 LTV 50%→40% 인하	은행/보험	강화
2004.03	10년 이상 대출 LTV 60%→70%	전 금융기관	완화
2005.06	투기지역 아파트 은행, 보험회사 LTV 60%→40%, 저축은행 70%→60% 하향 조정	은행/보험/저축은행	강화
2006.03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DTI 40% 이내로 적용	전 금융기관	강화
2006.10	투기지역 LTV 규제 비은행금융기관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강화
2006.11	수도권으로 6억 초과 아파트 DTI 40% 이내로 적용 확대	전 금융기관	강화
2007.02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DTI 40~60% 적용	은행	강화
2008.11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해제	전 금융기관	완화
2009.07	수도권 6억 이상 주택대출 LTV 60%→50%로 인하	은행	강화
2009.09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DTI 60% 적용 확대(서울 50%, 투기지역 40%)	은행	강화
2010.08	강남 3구 제외 지역의 DTI 규제 2011년 3월까지 한시적 폐지	전 금융기관	완화
2010.10	수도권 LTV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강화
2011.03	2010년 8월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DTI 규제 부활	전 금융기관	강화
2012.05	수도권 전체 LTV 50%, DTI 50%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LTV 40%→50%, DTI 40%→50%	전 금융기관	완화
2014.08	LTV 70%, DTI 60% 모든 금융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전 금융기관	완화



#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 요약

- 최근 국내 은행의 생산성이 20여 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 은행들이 효율적 자금배분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효율적 자금배분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부터 지속된 금융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90년대 시작된 자본자유화와 금리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규제로 인해 은행 본연의 기능인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가격(금리)결정 역량이 배양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 차주의 위험평가 역량 배양은 어려웠음.
- 보험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2000년 초 형식적인 보험료 자유화는 완료되었으나 그림자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와 가격결정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들의 미미한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에 불과하고 현지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1994년 보험료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확대되었고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외시장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원인이 이러한 핵심 역량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은 금융산업의 역할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금융산업의 가격 발견 기능 확보는 노후소득과 건강위험 보장,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금융산업의 역할 제고와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필요조건임.

# 1. 검토배경



- 김세직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은행의 생산성이 1991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국내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이 2007년 2.7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생산성은 1991년 수준과 동일한 1.7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은행의 생산성 저하 원인으로 은행의 핵심 능력 배양 부족과 외환위기 이후 외형 경쟁이 제시됨.

〈표 1〉 국내 금융산업의 ROE 추이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은행	14.6	14.6	7.2	5.8	7.2	8.4	6.2	2.7
보험	10.8	11.9	6.0	9.1	11.5	8.8	7.2	4.9
증권	11.8	14.8	6.4	8.3	7.5	5.3	2.9	-0.5

주: 증권과 보험업의 ROE는 FY기준 당기순이익/총자본으로 정의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4월부터 12월간 누적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핵심 능력이 배양되지 못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해야 함.
  - 김세직 교수는 은행의 핵심 능력을 “생산성이 좋은 기업을 가려내어 이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핵심 능력은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과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외형경쟁으로 인해 충분히 배양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보험산업의 경우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계의 노후소득과 건강위험,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적절한 가격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고객의 건강 관련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안전할증 범위 규제를 받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우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은행과 보험산업의 미미한 해외사업 경영성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핵심 능력 부재일 수 있음.
    - 국내 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4.3%,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1.0%에 불과하고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현지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함.

1) 매일경제(2015. 2. 4), “한국 금융 금리장사에만 의존...생산성 20년전 수준 곤두박질”,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영국과 독일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과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확대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규제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국내 은행의 생산성 저하 원인



- 국내 은행산업이 핵심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90년대부터 지속된 예금·대출금리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sup>2)</sup>
  - 90년대 금리자유화로 단기 여·수신 상품은 자유화되었으나 은행의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 조운제(1999)는 은행의 우대금리가 우량회사채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평가의 근거로 제시함.<sup>3)</sup>

〈표 2〉 90년대 국내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비중

(단위: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직접금융	42.4	37.9	41.4	52.9	38.1	48.1	47.2	37.1
간접금융	38.4	41.8	36.3	31.4	44.5	31.8	29.1	37.9
해외차입	6.4	4.1	7.1	1.5	6.6	8.4	10.4	6.1

자료: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 은행들은 기업 대출보다는 기업어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종합금융회사들과 경쟁함.

2)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3) 91년부터 96년까지 기업어음, 회사채 금리가 간접금융인 은행 대출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회사채 발행물량은 정부의 시중금리 상승 억제를 위해 통제되어 왔다고 평가함.

〈표 3〉 90년대 은행 신탁자산 규모와 운용

(단위: 십억 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신탁자산 규모	57,901	69,272	95,525	133,108	167,835	212,072	245,326	287,892
대출금	11,282	15,888	23,935	26,766	37,556	44,374	54,572	61,171
회사채와 기타 유가증권	27,735	32,915	48,019	76,511	91,208	123,094	148,350	182,618

자료: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 은행의 대출금리 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됨.<sup>4)</sup>
  -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은행에 대한 규제는 수수료와 금리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속되었고 이러한 가격규제는 은행들의 외형경쟁을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함.<sup>5)</sup>

■ 취약한 핵심 능력은 미미한 해외사업 성과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규모는 확대되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는 국내 은행이 여섯 개에 이르지만 해외자산 비중은 4.3%에 불과함.<sup>6)</sup>

### 3. 국내 보험산업의 가격 규제와 경쟁력



■ 2000년 초 보험료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그림자 가격 규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김석영 외(2014)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에 기본이 되는 위험률 평가가 제한되고 있음.<sup>7)</sup>
  - 감독당국은 위험률 모범기준을 통해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3년마다 참조순보험요율을 갱신하는 등 위험평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sup>8)</sup>
  - 또한 구두지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음.

4)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간접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임.

5) 한국은행(2008)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대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기 보다는 특정 수준으로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천병철·권효성(2008),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6) 전용식(2014, 5),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7) 김석영 외(2014, 11),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8) 지난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안전할증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향후 할증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보험신보(2014, 12, 15).

- 이러한 보험료 규제는 보험료 산출원칙 중 보험료의 비과도성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위험을 반영한 적정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보장하는 담보의 발생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할증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비차를 통해 부족한 위험보험료를 보전할 수밖에 없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림자 규제로 인상된 손해율만큼 보험료가 인상되기는 어려움.
  
- 이러한 규제는 국내 은행산업의 생산성 감소와 같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결정과 이에 기반한 경쟁 경험 부족은 해외 보험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2003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현지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0.06%에 불과한 반면 2003년 진출한 미국 Liberty Mutual의 시장점유율은 4.59%, 2009년 진출한 일본 미쓰이스미토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 0.18%임.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부진 원인이 이외에도 다른 것을 들 수 있으나 위험평가와 보험료 결정 등 핵심 역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sup>9)</sup>
  
-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요율과 상품규제는 철폐된 반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영국 보험산업의 규제환경을 지칭하는 “Freedom With Publicity”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규제환경이 영국 보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됨.
    - Freedom with Publicity란 독립적인 계리사 혹은 관련 기관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보험회사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의미함.
    - 이러한 규제환경은 보험회사의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sup>10)</sup>
  - 반면 독일의 경우 1994년 상품 및 요율규제 철폐 이후 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보험료 경쟁이 본격화됨.<sup>11)</sup>
    - 1994년 이전에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요율 및 약관 사전인가 의무가 있었으나 자유화 이후 요율규제가 철폐됨.

9) 전용식 외(2014. 1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험연구원.

10)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1990 Vol. 16. No 4A.

11) Allianz Annual Report(1996).

■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와 손해액 증가율은 규제 철폐 이전에 비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활발해짐.

- 전년대비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1985년에서 1993년간 평균 8.6%, 95년부터 2003년간 평균 0.2%로 크게 둔화됨.
  - 규제 철폐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경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같은 기간 평균 8.4%에서 평균 0.2%로 줄어들었고 표준편차는 5.8%에서 2.6%로 감소함.

〈표 4〉 독일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구분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손해액 증가율	평균 손해율
1985~1993	8.6%	2.5%	8.4%	93.3%
1995~2003	0.2%	1.4%	0.2%	94.2%
2004~2012	-0.1%	1.7%	0.4%	92.7%

주: 기간별 평균 수치임.  
자료: 독일 보험협회

- Altuntas 외(2012)에 따르면 1999년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33%가 해외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 46%로 늘어남.<sup>12)</sup>

■ 독일의 보험그룹인 Allianz는 자유화 이후 1995년 8월 신요율체계를 도입하여 손해보험 부문의 성장세를 가속화하였으며 대부분의 진출국가 손해보험시장에서 상위 5위 이내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전세계 손해보험부문 1위인 Allianz는 해외법인 49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손해보험부문 수입보험료의 34%를 자동차보험이 차지하고 있음.
- 규제 철폐 이후 Allianz는 개인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율을 차등화하였는데, 사고 발생률이 낮은 고객들에게는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인하함.
  - 1995년 8월 차종, 차량 연식, 차고 유무, 주행거리, 성별, 복수운전 유무, 계약자 연령과 직업 등을 기준으로 고객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요율시스템인 Risk Aligned Rate를 도입함.
-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결정 역량은 시장개척 등 수익원 다변화와 보험료 적정성 제고, 포트폴리오

12) Altuntas 외(2012)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50여 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외사업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1999년에는 39개 조사대상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13개가 해외사업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009년에는 48개 회사 가운데 22개 회사가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퀄리티 제고로 이어져 그룹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 5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캐나다에서 시작하였는데, 수입보험료는 94년 6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2004년 매각 당시 6,800만 캐나다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함.
- 기업성 보험의 경우, 기업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고 기업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함.

-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보험료 규제 완화가 보험산업의 위험평가 역량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함.
  -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위험평가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사업 성과가 미미할 수 있음.
  - 그리고 취약한 경쟁력은 은행의 경우와 같이 위험평가에 근거한 가격 결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음.

#### 4.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부재는 금융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가 원인일 수 있음.
  - 국내 은행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 가운데 장기 대출금리 규제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위험평가와 가격 설정 역량 부재는 취약한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가격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그림자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보험료와 상품 규제가 철폐된 독일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 및 보험료 결정 역량이 제고되었고 경쟁력 제고와 해외사업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자동차보험시장의 보험료와 손해액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간의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후생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역량 제고는 기업고객의 리스크 관리 제고를 유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한 것으로 보임.
  - Allianz 등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져 독일에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보험회사들도 해외사업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함.

- 
-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노후소득과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고 공적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임.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으로 제기되는 해외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
  
  - ■ 국내 은행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의 원인이 90년대 가격 규제라는 점은 보험산업의 가격 규제 철폐가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산업 역할 제고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kiri](#)



#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 요약

- 정적(Static) 리스크 관리 방법의 경우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반해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ERM은 순환적 프로세스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적(Dynamic) 리스크 관리 방법임.
- 미국 정부는 911 사태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RM 기반의 리스크 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동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육부, 항공우주국, 환경보건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관리국, 과학기술국, 식품·의약품국 등 정부 기관 리스크 관리에 ERM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도 ERM 이용해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부의 포괄적 안전혁신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의사소통 채널 운영 등 ERM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와 같이 큰 틀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부당국은 재난사고의 효과적인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ERM 도입 사례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해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배경



- 한국은 지금까지 대형 재난 사고<sup>1)</sup> 발생 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적인 방식으로 재난사고 리스크를 관리해 왔음.
  - 대형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다음과 같음.
    - 1973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이후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정
    -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1999년 화성씨랜드 사고 이후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세월호 특별법』제정
-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음.
  - 올해 1월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방향 제시<sup>2)</sup>
    - 제도 개선: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 점검 강화: 국민참여 안전대진단, 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점검
    - 인프라 보강: 안전산업 육성, 지자체 재정 지원 및 책임 강화
    - 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범국민 안전 문화운동
  -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아래와 같은 5대 추진전략 제시<sup>3)</sup>
    -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확립: 재난현장 통합지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대응표준체계 확립, 안정정책 총괄관리·개선체계 구축, 국가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표준 설정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응 역량 강화, 오염방제 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국민안전교육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주민참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안전복지 정책 강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과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분야별로 2개 과제 제시, <http://www.mpss.go.kr/main/2015plan.html>

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5. 3. 30),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 확정” 참조.

- 재난 안전예방 인프라 확산: 재난 조사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예방을 통한 기능·업무연속성 강화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학교, 에너지, 산업단지, 감염병, 의료서비스, 유해화학물질, 산업현장, 시설물, 교통, 해양, 원자력, 가축질병, 정보통신, 기타(14개) 분야에 대해 추진
  - 올해 2월~4월 정부는 제도의 사각에 있는 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sup>4)</sup>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은 재난사고 방지와 대응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과 같이 ERM을 이용해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ERM<sup>5)</sup>은 특정 기관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의사소통 채널, 지속적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됨(‘2. 해외 ERM 표준 소개’ 참조).
- 기존 정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도와 법규를 통해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해 ERM은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평가·보완하는데 중점을 둬.
- 미국 정부는 911 사태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이에 ERM을 도입하여 동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sup>6)</sup>
- 미국 감사원은 국토안보부와 같은 국가 기관의 ERM 시행 실적을 평가함.<sup>7)</sup>
  - 미국 정부기관 중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육부, 항공우주국, 환경보건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관리국, 과학기술국, 식품·의약품국 등이 ERM을 활용하고 있음.<sup>8)</sup>
- 미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정부들도 ERM을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EU는 방재,<sup>9)</sup> 세관,<sup>10)</sup> 심리사회적 리스크 관리<sup>11)</sup>에 ERM 활용
  -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은 ERM 표준을 기업과 금융기관에 제공<sup>12)</sup>

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일환임.

5) 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 위험관리’라고도 함.

6) <https://www.rims.org/resources/ERM/Documents/Risk%20in%20Government.pdf>

7) <http://www.gao.gov/assets/130/120506.pdf>

8) <http://www.gao.gov/products/GAO-06-91>,

[http://csis.org/files/publication/110314\\_Murdock\\_RiskManagement\\_Web.pdf](http://csis.org/files/publication/110314_Murdock_RiskManagement_Web.pdf)

9) [http://www.preventionweb.net/files/35805\\_02efdr06oct2014spaineceuframework.pdf](http://www.preventionweb.net/files/35805_02efdr06oct2014spaineceuframework.pdf)

10)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framework\\_doc.pdf](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framework_doc.pdf)

11) [http://www.prima-ef.org/uploads/1/1/0/2/11022736/prima-ef\\_ebook.pdf](http://www.prima-ef.org/uploads/1/1/0/2/11022736/prima-ef_ebook.pdf)

12)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http://www.tbs-sct.gc.ca/pol/doc-eng.aspx?id=19422>

- 호주는 국방,<sup>13)</sup> 교육,<sup>14)</sup> 금융<sup>15)</sup> 등에서 ERM 활용
- 일본은 후생노동성,<sup>16)</sup> 정부의 정보보안 체계 관리, 지자체 리스크 관리,<sup>17)</sup> 일본 농림수산업성 식품 리스크 관리<sup>18)</sup> 등에 ERM 활용
- 싱가포르의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RAHS<sup>19)</sup>라는 ERM 도구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함.<sup>20)</sup>

## 2. ERM의 특징 및 장점



-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는 보험, 금융, IT, 환경 보호 등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ERM은 정해진 법규와 규정으로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기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ERM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체계 구성, 리스크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정의,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운영과 평가, 관련 커뮤니티 정보 공유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이들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정함.
  - ERM을 활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는 참여자의 자발적 노력과 감독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축·운영에 더 많은 시간·노력·예산을 필요로 하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13) <http://dtic.mil/dtic/tr/fulltext/u2/a434592.pdf>

14) <http://deta.qld.gov.au/corporate/pdf/enterprise-risk-management-framework.pdf>

15) [http://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commonwealth-risk-management-policy\\_0.pdf](http://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commonwealth-risk-management-policy_0.pdf)

16)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dl/pamph01\\_03.pdf](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dl/pamph01_0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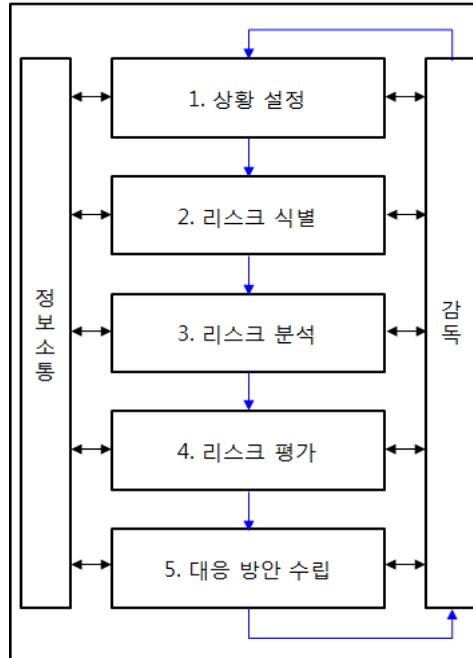
17) 일본의 경우 Sompo Japan과 같은 민간 기관이 지자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http://www.sjnk-rm.co.jp/service/rm\\_system/rm\\_admini.html](http://www.sjnk-rm.co.jp/service/rm_system/rm_admini.html) 참조.

18) [http://www.maff.go.jp/j/syoutan/seisaku/risk\\_analysis/sop/index.html](http://www.maff.go.jp/j/syoutan/seisaku/risk_analysis/sop/index.html)

19)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20) [http://csis.org/files/publication/110314\\_Murdock\\_RiskManagement\\_Web.pdf](http://csis.org/files/publication/110314_Murdock_RiskManagement_Web.pdf), pp. 74 참조.

〈그림 1〉 ISO 31000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대표적인 ERM 국제 표준인 ISO 31000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sup>21)</sup>

- ISO 31000은 리스크를 ‘기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함.
- 적용 범위, 용어 및 정의, 관리 원칙
-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프레임워크 설계, 권한과 책임, 리스크 관리 실행, 체계 모니터링과 리뷰, 지속적인 개선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의사소통 채널 구축, 조직 현황 조사 및 확정, 리스크 평가,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운영 현황 기록,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리뷰(〈그림 1 참조〉)
- ISO 31000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 다음 11가지 원칙 제시
  1. 조직의 목표 달성 및 가치 창조에 기여해야 함.
  2. 조직의 모든 운영 프로세스와 통합되어야 함.
  3. 경영의사결정에 있어 선택 및 집중의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함.
  4. 불명확성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해야 함.
  5. 체계성, 구조성, 적시 적용 가능성을 가져야 함.
  6. 활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함.

21) 외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ERM 표준은 부록 참조.

7.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조율되어야 함.
  8. 조직의 인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함.
  9. 투명하고 전체 조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10. 새로운 리스크에 동적이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11.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 ISO 31000은 ‘상황설정→리스크 식별→리스크 분석→리스크 평가→대응방안 수립’의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함(〈그림 1〉 참조).
    - 상황 설정: 조직의 내부·외부 환경 분석, 평가 기준 및 판단 기준 수립, 리스크 관리 목표 수립
    - 리스크 식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견
    - 리스크 분석: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심도 등 리스크를 분석
    - 리스크 평가: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리스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대응방안 수립: 회피(Avoid), 경감(Reduce), 분배(Share), 보유(Retain)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대응 방안 수립
    - 정보소통 채널: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간의 투명·정확·신속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은 리스크 관리 체계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 감독: 리스크 관리 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감독 책임자를 정하고 감독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지도부의 역할: 지도부는 리스크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3. 미국 정부의 ERM 적용 사례



- 최근 미국 정부는 기존 정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ERM을 이용해 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sup>22)</sup>
  - 미국 정부는 정부성과결과법,<sup>23)</sup> 정부회계감사표준,<sup>24)</sup> 감사원 연방정부 내부규제표준,<sup>25)</sup> 관리예

22) <http://www.gao.gov/assets/160/157672.pdf>, pp. 1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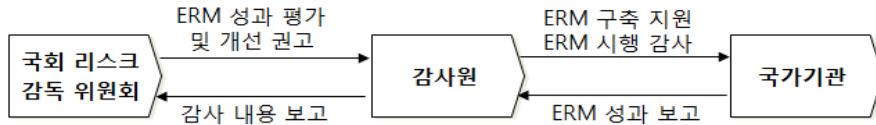
23)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 1993.

24) the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2003.

25) GAO' s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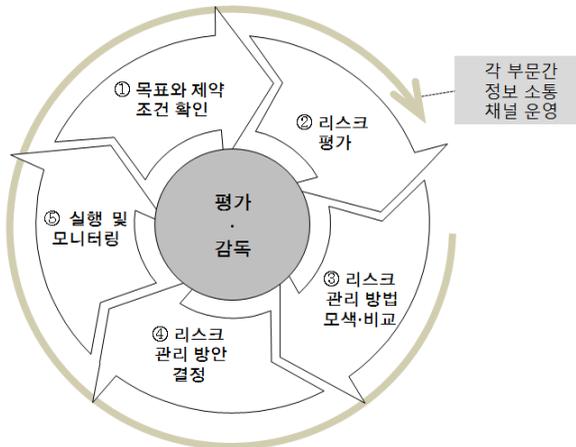
산처<sup>26)</sup> 의견, 대통령 리스크 관리 자문 위원회 의견,<sup>27)</sup> COSO<sup>28)</sup> ERM 표준, 민간 자문 위원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ERM 표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

〈그림 2〉 미국 정부의 지속적 ERM 개선 체계



- 미국 정부는 〈그림 2〉와 같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미국 국토안보부는 ERM을 하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적용하고 감사원은 이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지적함.
  - 미국 국회의 리스크 감독 위원회는 국토안보부의 리스크 관리가 예산낭비 없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3〉 미국 정부의 ERM 프로세스



자료: “RISK MANAGEMENT: Further Refinements Needed to Assess Risks and Prioritize Protective Measures at Ports and Other Critical Infrastructure”, 미국 감사원, pp. 102 참조.  
<http://www.gao.gov/assets/160/157672.pdf>

26)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27)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Risk Management.

28)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5개 민간단체(AICPA, AAA, FEI, IIA, IMA)가 결성한 민간기구로서 기관에 다양한 분야의 경영 자문 제공

- 미국 정부의 ERM 표준은 ① 목적과 제약조건 확인 ② 리스크 평가 ③ 리스크 관리 방법 모색·비교 ④ 리스크 관리 방안 결정 ⑤ 실행 및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ISO 31000과 유사한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함(〈그림 3〉 참조).
  - ① 기관의 목표와 제약조건 확인: ERM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직의 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의 제약조건을 확인해야 함.
  - ②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존재를 확인하고 리스크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
  - ③ 리스크 관리 방법 모색·비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대응방안들의 장단점과 각각의 기대 효과와 비용을 분석
  - ④ 리스크 관리 방안 결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방안 결정
  - ⑤ 실행 및 모니터링: 수립된 방안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평가
  - 각국의 리스크 관리 표준들도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제시함.

〈그림 4〉 미국 주요 기간시설·자원보호계획 조직 체계

부분	부문별 담당 기관	주요 기간시설 협력체 자문 위원회			
		무문조정위원회	정부조정위원회	지역컨소시엄	주·지방정부 조정 위원회
화학	국토안보부	✓	✓		
민간시설		✓	✓		
통신		✓	✓		
주요생산시설		✓	✓		
댐		✓	✓		
응급대응서비스		✓	✓		
IT기간시설		✓	✓		
핵발전소		✓	✓		
식품·농업	농무부, 보건 사회복지부	✓	✓		
국방산업기지	국방부	✓	✓		
에너지	에너지부	✓	✓		
건강관리· 공공위생	보건사회복 지부	✓	✓		
금융	재무부	별도로 운영	✓		
기상	환경보호청	✓	✓		
정부시설	국토안보부, 총무청	없음	✓		
교통	국토안보부, 교통부	부문별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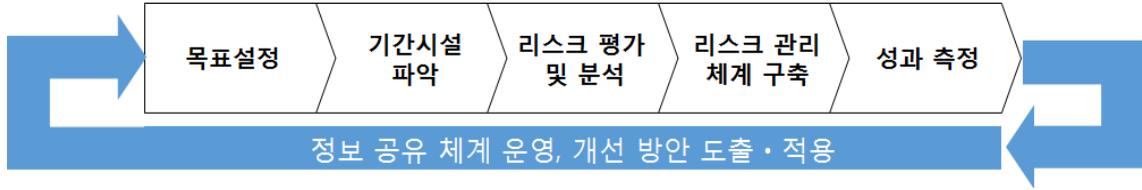
자료: NIPP(2013), "NIPP 2013 Partner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and Resilience", Homeland Security, pp. 11. <http://www.dhs.gov/national-infrastructure-protection-plan> 참조.

- 미국 국토안보부는 ERM을 적용하여 주요 국가 기반시설을 파악하고 비상시 공공·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국가기간시설·자원보호계획(NIPP)을 수립·운영하고 있음.<sup>29)</sup>
  - NIPP는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주요 기간시설·자원을 보호하는 계획임(<그림 4> 참조).
  - 본 계획은 각 부분의 담당하는 부문 조정 위원회(Sector Coordinating Council), 정부 조정 위원회(Government Coordinating Council), 부문별 담당 기관(Sector-Specific Agencies), 여러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 부문 위원회(Cross-Sector Council), 연방 고위 위원회(Federal Senior Leadership Council), 지자체 조정 위원회(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 Coordinating Council), 지역별 컨소시엄 조정 위원회(Regional Consortium Coordinating Council), 정보 공유 및 분석 기관(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Organizations), 자문 위원회(Critical Infrastructure Partnership Advisory Council) 등의 조직으로 운영됨.
  - NIPP 비전: 취약점 감소, 사고 영향 극소화, 리스크의 확인 및 중단, 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회복을 통해 물리적 또는 사이버 상의 국가기반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나라
  - NIPP 미션: 민관의 협력을 통해 기간시설·자원의 보안과 사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
  - NIPP 목표: ① 기간시설·자원의 취약점과 기간시설·자원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분석하고 리스크 관리, ② 지속가능한 비용의 효과적인 투자로 기간시설·자원을 인적·물적·사이버 리스크로부터 보호, ③ 사고가 기간시설·자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④ 관련 주제간 효과적 정보 공유, ⑤ 훈련 및 사고 전후 리스크 관련 교육 촉진
  - NIPP의 리스크 인자: 기상재해, 전염병, 테러, 시설·장비 고장, 사이버 공격 위협
  - NIPP의 핵심 원칙: 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리스크의 확인·관리는 조직 체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② 기간시설·자원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간 종속성과 상호의존도를 이해해야 함, ③ 기간시설·자원의 리스크와 부문별 상호의존도를 이해하기 위해 조직 체계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④ 민·관 협력체계의 다양성과 고유한 의견은 기간시설·자원 보안 관리에 강점을 제공함, ⑤ 지역별 관리 체계간의 협력은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 ⑥ 주요 기간시설·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국경과 지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과 상호지원을 필요로 함, ⑦ 자산·체계·네트워크 구축 시 보안과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NIPP는 <그림 5>와 같이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
  - 미 국토안보부는 NIPP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sup>30)</sup>

29) NIPP(2013), pp. 1 참조.

30) NIPP 홈페이지(<http://www.dhs.gov/national-infrastructure-protection-plan>) 참조.

〈그림 5〉 미국 국토안보부 기간시설·자원 관리 프로세스



자료: NIPP(2013), pp. 15.

## 4. 미국 사례의 시사점



〈표 1〉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미국 정부의 리스크 관리 체계 비교

구분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미국 국토안보부 NIPP
국가 ERM 표준	없음	제공
ERM 표준 적용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에 부분적 적용	부처 운영과 하위기관 및 관련 민간 기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
ERM 체계 구축 지원	없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 제공
지속적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없음	국회와 감사원이 기관의 ERM 체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개선 사항 제시, 각 부분에서 자발적·지속적으로 개선 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민간 참여 방안	안전 점검, 리스크 관리 컨설팅 확대, 재난 보험 확대 등의 민간 참여 촉진	지역별 부문별 조직에 민간 참여 장려, 민간 자원 중 비상 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 계획 수립
고려하는 사고 범위	물리적 사고(자연재해, 전염병, 화재, 안전 사고 등)를 중점적으로 관리	물리적 사고 이외에 사이버·테러 리스크 관리

■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ERM의 개념을 일부 도입해 현행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ERM을 적용해 환경 변화에 동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중 다음은 ERM의 개념이 일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보소통채널확보: 재난현장과 국민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상향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전달하는 하향식 정보체계 운영(pp. 2)
  - 순환적 프로세스 운용: 역량 개선 프로세스(pp. 16, 20), 『안전기준 등록·심의제』운영(pp. 19),

예산 사전협의-사업평가 관리 체계 구축(pp. 19), 지자체 지역안전진단 지원(pp. 23), 재난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pp. 37)

- 리스크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 그러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정적인 제도 도입이고 ERM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정부 당국은 대형 재난사고가 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사각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ERM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를 위한 ERM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실정이 맞는 국가 ERM 표준 제정<sup>31)</sup>
  - ERM 표준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방안 모색
  - ERM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하위 기관·지자체·민간에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 또한 정부당국은 리스크 관리 표준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는 리스크(예를 들어 NIPP의 사이버 공격 또는 테러)를 파악하여 이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키리**

## 부록: 외국 ERM 표준



■ 해외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은 다음과 같은 ERM 표준을 제시함.

- 해외 정부·공공기관의 ERM 표준
  - 미국 감사원 ERM 표준<sup>32)</sup>: 정부·민간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공
  -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ERM 표준<sup>33)</sup>: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 리스크 관리에 적용
  - 일본 농림수산업성 ERM 표준<sup>34)</sup>: 기관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표준

31)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이버 보안, 금융 및 기업 정보 보안, 사고대비 운영 연속성, 기록 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ERM 표준을 정하고 있으나 ERM 국가 표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나라표준 인증(<http://standard.go.kr/KSCI/>) 참조.

3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http://www.gao.gov>).

33)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http://www.tbs-sct.gc.ca/pol/doc-eng.aspx?id=19422>).

34)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risk\\_analysis/sop/index.html](http://www.maff.go.jp/j/syouan/seisaku/risk_analysis/sop/index.html)

---

● 해외 민간 기관의 ERM 표준

- COSO 리크스 관리 체계<sup>35)</sup>: 인적 요소 구성과 책임의 중요성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 OCEG Red Book 2.0<sup>36)</sup>: 관리자들의 실적 평가 기준과 정부 규제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
- ISO 31000<sup>37)</sup>: 세계 리스크 관리 표준
- BS 31100<sup>38)</sup>: 영국 리스크 관리 실무 가이드
- 유럽 리스크평가연합(FERMA) 리스크 관리 표준<sup>39)</sup>
- JIS Q31000: 일본 리스크 관리 표준<sup>40)</sup>
- AS/NZS 31000: 호주/뉴질랜드 리스크 관리 표준<sup>41)</sup>

---

35)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5개 민간단체(AICPA, AAA, FEI, IIA, IMA)가 결성한 민간기구로서 기관에 다양한 분야의 경영 자문 제공

36)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http://www.oceg.org/resources/grc-capability-model-red-book>).

37) <http://www.iso.org/iso/home/standards/iso31000.htm>

38) <http://shop.bsigroup.com/ProductDetail/?pid=000000000030228064>

39) <http://www.ferma.eu/risk-management/standards/risk-management-standard>

40) <http://kikakurui.com/q/Q31000-2010-01.html>

41) <http://sherq.org/31000.pdf>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와 해외사업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요약

- 최근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위안화 예금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는 2012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2014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6%로 지난해 10.7%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4년 4.05%, 2013년 2.69%에 불과함.
  -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11년 1.1%, 2012년 0.62%, 2013년 0.22% 수준으로 중국 진출 외국계 은행에 비해 0.33%p 높았고, 0.06%p, 0.33%p 낮음.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는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은행들의 해외사업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임.
  -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사업 확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확대 등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위안화 수요가 높아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싱가포르, 홍콩 등 중국 은행들의 해외지점에서 운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모색, 국가간 경제협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해가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현지법인과 본점과의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1. 검토배경



-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 주요 은행들은 위안화 예금 증가를 통해 규모와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고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총자산은 2008년 6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말 52조 2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008년 359억 원에서 2014년 3,178억 원으로 증가함.
  - 국내 외국환은행의 위안화 예금잔액은 2014년 말 19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억 달러 증가함.
  -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은 국내 금융회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은행과 더불어 중국의 안방보험도 국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였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안방보험은 중국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3.6%, 자산규모 160조 원 규모의 생명보험회사이며 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업 등을 수행하는 종합금융기관임.
  
-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에 비해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11년 1.1%, 2012년 0.62%, 2013년 0.22% 수준으로 중국 진출 외국계 은행에 비해 0.33%p 높았고, 0.06%p, 0.33%p 낮음.
  
-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확대와 중국 은행의 국내 경영성과를 국내 은행의 중국 사업 성과와 비교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전략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 은행들의 국내지점 경영성과는 중국 은행들의 해외사업 네트워크가 기여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업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경영성과



- 2014년 말 기준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자산규모는 영국과 미국 은행 국내지점, 일본 은행 국내지점 자산규모를 상회함.
  - 영국과 미국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총자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총자산은 2014년 말 기준으로 52조 250억 원으로 2008년 6조 1천억 원에서 크게 증가함.
    - 2012년 1월 중국농업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의 5대 대형 상업은행이 모두 한국에 진출함.
    - 2003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외국계 은행 13개사가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면서 미국과 영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sup>1)</sup>

〈표 1〉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총자산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45.0	29.4	23.5	25.7	29.0	26.4	26.0
영국	81.4	55.2	48.9	50.6	47.8	37.7	44.1
일본	26.8	22.7	26.0	34.0	34.1	36.6	37.6
중국	6.1	7.7	8.6	11.7	14.4	27.0	52.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은 국내 은행업 경기가 악화되었던 2012년과 2013년에도 안정적으로 증가함.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359억 원에서 2013년 1,435억 원, 2014년 3,17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ROA와 ROE는 국내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익성은 국내 은행 수익성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2012년과 2013년에도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음.

1) 김우진(2013. 8),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축소 배경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표 2〉 주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은행 국내지점 합계	359.0	1,205.3	1,042.4	1,293.0	1,388.0	1,435.2	3,178.1
ROA	0.59	1.72	1.15	1.17	1.03	0.74	0.80
ROE	10.33	18.17	13.88	14.07	11.34	10.73	19.60
HSBC	3,633.5	3,261.1	2,935.3	2,135.3	1,874.2	948.7	1,415.2
ROA	1.23	1.05	0.94	0.73	0.67	0.40	0.63
ROE	26.48	22.49	20.19	15.03	12.94	6.94	9.91
JP모건체이스	4,313.4	2,288.2	1,564.7	1,129.9	81.3	272.5	1,343.6
ROA	1.77	0.75	0.68	0.54	0.05	0.15	0.66
ROE	50.56	21.29	12.70	8.62	0.62	2.02	9.22
미즈호	329.4	986.8	727.4	1,041.7	1,293.0	940.9	598.3
ROA	0.45	1.17	0.93	0.85	0.78	0.55	0.31
ROE	6.57	14.91	9.62	11.29	11.38	7.59	3.58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77,443.1	69,300.4	93,134.2	117,509.9	86,812.7	38,823.3	60,244.9
ROA	0.48	0.39	0.54	0.66	0.47	0.21	0.31
ROE	7.17	5.76	7.22	8.40	6.17	2.69	4.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사업전략은 국내에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과 홍콩 등에서 현지 기업대출, 유가증권 투자로 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국내 거주자의 위안화 예금은 우리나라와 중국간 금리차와 국내 기업의 위안화 예금 수요 증가가 원인임.<sup>2)</sup>
  - 중국의 예금금리는 최근 2.5%로 하락하였으나 국내 은행의 1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는 2014년 4/4분기 평균 2.2%에서 2015년 1/4분기 2.0% 수준으로 하락하여 금리차가 유지됨.
- 중국교통은행과 공상은행 국내지점 등은 외화예수금을 외화예치금, 외화대출금, 본지점 거래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표 3〉 참조).
  - 외화예수금은 국내 기업들의 위안화 예금이 대부분이며 운용처 중 외화예치금은 중국 은행 국내지점들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에 예치한 자금임.
  - 해외 운용의 대부분이 중국 및 홍콩에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국내 은행의 ROA 0.31%, ROE 4.05%에 비해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교통은행의 ROA, ROE는 2~3배 이상임.

2) 위안화 예금 증가추세와 중국의 금리 추세는 별첨 참조.

〈표 3〉 주요 중국 은행 국내 지점들의 조달-운용 및 수익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중국공상은행 국내 지점		중국교통은행 국내 지점		
		2013	2014	2013	2014	
조달	원화자금 합계	644	3,022	154	361	
	외화자금 합계	32,472	80,072	26,221	55,711	
	외화예수금	외화예수금	968	42,329	1,015	27,697
		외화차입금	23,342	29,366	17,843	19,552
		본지점	8,097	8,377	7,209	8,462
		조달 합계	41,958	93,707	28,523	58,977
운용	원화대출금	602	1,874	1,252	1,779	
	외화예치금	188	27,138	963	24,895	
	외화대출금	12,269	13,317	16,039	15,635	
	본지점	4,788	9,702	8,979	14,897	
합계		41,958	93,707	28,523	58,977	
자산총계		48,877	125,225	38,650	74,335	
중국/홍콩 운용 비중		76.3%	90.9%	76.5%	74.5%	
자본총계		4,705	5,547	2,165	2,374	
총자산순이익률 (ROA)		0.56%	0.64%	1.41%	0.93%	
자기자본이익률 (ROE)		5.43%	12.70%	20.31%	25.68%	

주: 중국 운용 규모는 국내 운용규모를 제외한 해외 운용규모 가운데 중국 및 홍콩 운용 비중임.  
 자료: 각사 공시자료.

- 중국 은행 국내지점들은 중국 현지의 예대율 규제 회피와 우리나라와 중국간 이차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중국의 은행들은 예금잔액의 75%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은 예대율 규제 대상이 아님.
  - 중국의 금리도 하향추세이나 2014년 중 중국 인민은행이 책정한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각각 6.0%, 3.0%로 국내 원화대출평균금리 4.39%, 저축성수신금리 2.42%보다 높은 수준임.<sup>3)</sup>

3) 2014년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평균 금리임.

### 3. 중국 진출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



- 2013년 국내 은행의 중국 점포 자산증가율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자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국내 은행의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내 은행의 중국 점포 총자산은 2011년 128억 달러에서 2014년 말 218.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자산증가율은 2012년 20.6%, 2013년 30.3%에서 2014년 8.8%임.
    -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07년, 신한은행이 2008년, 기업은행 2009년 외환은행 2010년, 국민은행이 2012년에 진출함.
  -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이 2012년 3,772억 달러에서 2013년 4,168억 달러로 10.5%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
    -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은행(현지법인과 지점 포함)은 2013년 말 947개이며 외국계 은행의 자산비중은 2012년 1.82%에서 2013년 1.73%로 감소함.
  
- 국내 은행 중국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중국 은행산업의 세후순이익은 2011년 1,937억 달러에서 2013년 2,83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은행 중국점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54.2% 감소함.
  -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세후순이익도 2011년 25.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2.8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11.9% 감소하였음.
  
- 2014년 국내 은행 중국점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140.9%를 기록하였으나 대손충당금 환입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임.
  - 2014년 국내 은행의 중국 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 570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임.
    -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수익이 2014년 6억 2,88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 증가한 대손충당금의 환입 등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sup>4)</sup>
  
- 중국 진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성일 수도 있으나 유사한 시기에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 국내지점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2012년 국내에 진출한 중국농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78억 원, 2013년 115억 원, 2014

4) 금융감독원(2015. 4. 29).

년 248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2012년에 중국에 진출한 국민은행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모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함.<sup>5)</sup>

〈표 4〉 국내은행 중국점포의 경영성과 비교<sup>1),2)</sup>

구분		국내 은행 중국 점포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국 은행 산업	
총자산 (억 달러)	2011	128.0		3,332.1		172,647.4	
	2012	154.4	(20.6%)	3,772.7	(13.2%)	207,292.5	(20.1%)
	2013	201.2	(30.3%)	4,168.1	(10.5%)	240,930.8	(16.2%)
	2014	218.9	(8.8%)			261,504.7	(8.5%)
당기순이익 (억 달러)	2011	1.42		25.9		1,937.0	
	2012	0.96	(-32.8%)	25.9	(0.0%)	2,395.7	(23.7%)
	2013	0.44	(-54.2%)	22.8	(-11.9%)	2,837.2	(18.4%)
	2014	1.06	(140.9%)				
당기순이익/ 총자산	2011	1.11%		0.78%		1.12%	
	2012	0.62%		0.68%		1.16%	
	2013	0.22%		0.55%		1.18%	
	2014	0.48%					

주: 1) 위안/달러는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2014년 중국 은행산업의 총자산은 1분기 수치이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은 발표되지 않았음.

##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주요 국유상업은행들의 해외진출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그리고 축적된 자금 운용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 확대로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임.

- 2013년 말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총자산대비 해외자산 비중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27.7%, 중국공상은행 8.5%, 교통은행 4.8% 수준이며 이익비중도 중국은행 19.4%, 공상은행 4.9%, 교통은행 1.4% 수준임.

- 국유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으로 중국정부가 대주주임.
- 2013년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해외자산 규모는 중국은행 3.8조 위안, 공상은행 1.6조 위안,

5) 지만수(2014, 12), 『중국 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한국금융연구원.

---

교통은행 7,310억 위안임.

- 글로벌 은행으로의 성장전략, 은행의 사업다각화와 위험분산 목적도 해외진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로 평가됨.<sup>6)</sup>
- 지점을 통한 진출과 더불어 국경간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도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공상은행은 2010년 10월 광주은행 인수에 입찰한 바 있으며, 우리은행 민영화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하였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 투자은행 설립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국내 시장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 은행 국내지점의 높은 수익성은 중국 은행들의 해외사업에서 유발되는 규모의 경제효과임.

- 중국 공상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중국 대도시 지점, 싱가포르, 아부다비, 호주 지점과의 거래를 통해 약 342억 원의 이익을 창출함.
  - 2014년 중국공상은행 국내지점의 당기순이익 870.6억 원의 39% 수준이며 본지점 거래를 통해 중국공상은행의 해외지점에서 현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과 홍콩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국내 본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그리고 정부의 지원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성과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해외사업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성장의 토대 확보이어야 함.
  - 중국 금융회사의 국내 사업 성과는 금융회사의 상품 및 판매전략이라기 보다는 중국 금융회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경영환경 변화를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저금리,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등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커진 위안화 수요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
    -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홍콩, 호주 등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글로벌 은행인 HSBC, JP모건체이스, 글로벌 보험회사인 독일의 Allianz, 영국의 Prudential, 미국의 MetLife 등은 해외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음.

---

6) Boston Consulting Group(2008), "Venturing Abroad: Chinese Banks and Cross-Border M&A".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은 현지 경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미미한 해외사업 네트워크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과 본점과의 이해상충이 완화되어야 함.
  -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를 촉진해야 함.
- 국가간 경제협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kiFi**

〈첨부〉

〈첨부 표 1〉 중국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추이

(단위: %, 원)

구분	대출금리	예금금리	원/위안화 환율
2007-12-20	7.47	4.17	123.81
2008-12-22	5.31	2.25	199.25
2010-12-25	5.81	2.75	170.16
2011-07-06	6.56	3.50	168.75
2012-06-07	6.31	3.25	181.93
2012-07-05	6.00	3.00	181.93
2014-11-21	5.60	2.75	176.80
2015-02-28	5.35	2.50	176.45

주: 원/위안화 환율은 금리 책정 해당 시기의 평균 환율임.  
 자료: Bloomberg.

〈첨부 표 2〉 통화별 외화예금 잔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미달러화	218.1	213.6	192	245	296.8	359	360	381.6
위안화	-	-	0.5	0.8	1.7	66.7	193.7	181.1
유로화	19.4	19.4	18.4	23.1	34	19.5	21.2	21.8
엔화	22.5	19.1	16	22.2	19.5	26	23.7	24.3
기타	3.9	9.5	5.9	8.2	8.3	13.1	12.5	13.2
합계	263.9	261.6	232.8	299.3	360.3	484.3	611.1	622.0



#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요약

- 2015년 상반기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함(금전대차거래시 금리는 0% 이상).
  - 발행채권을 국가별(독일, 스위스 등), 표시통화별(유로화, 스위스프랑화), 만기별(6개월~10년)로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됨.
  - 채권 유통시장(지난 6월 말 기준)에서도 만기 3년 이하 국채 중 4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됨.
  -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만기가 5년 이상인 중장기 채권의 발행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주목할 만함.
- 금리는 실물경제의 기초요인(실물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금리, 향후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으로 결정되는 위험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됨.
  - 국채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위험프리미엄(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
- 따라서 중장기 국채의 마이너스 발행금리는 다음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 가능함.
  - 실물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기대로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증가
  - 유로화원국의 재정위기로 상대적 안전자산의 공급축소에 인한 국채 과다수요
  - 환차익, 자본차익 등과 관련된 채권 기관투자자의 국채 매입행위
-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저금리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 국채에 대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유럽보다 크지 않을 뿐 더러 재정기초여건이 양호하지 못해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함.
  - 현재 우리나라 국채는 유럽 및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팽배,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채권 투자 수요 확대 등의 조건이 만족될 때, 중장기적으로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 현황



■ 2015년 상반기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함.<sup>1)</sup>

- 발행채권을 국가별, 표시통화별, 만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광범위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됨 (<표 1> 참조).
  -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더불어 폴란드, 포르투갈 등 신흥국에서도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됨.
  - 유로화 표시 채권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화 표시 채권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됨.
  -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뿐만 아니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중장기 채권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됨.

<표 1> 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 발행 현황

국가	날짜	만기	규모	금리	표시통화
핀란드	2015.02.04	5년	10억	-0.017%	유로
독일	2015.02.25	5년	32억 8,000만	-0.08%	유로
아일랜드	2015.03.19	6개월	5억	-0.01%	유로
스페인	2015.04.07	6개월	2,500만	-0.002%	유로
스위스	2015.04.08	10년	2억 3,251만	-0.055%	스위스프랑
프랑스	2015.04.15	5년	34억 4,600만	-0.03%	유로
폴란드	2015.04.28	3년	8,000만	-0.213%	스위스프랑
포르투갈	2015.05.20	6개월	3억	-0.002%	유로

자료: Financial Times; 각 중앙은행.

- 또한 지난 6월 채권 유통시장에서도 만기 3년 이하 국채 중 4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됨 (<표 2> 참조).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의 국채가 유통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됨.

1) 자금대차거래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차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임.

〈표 2〉 유럽 국가들의 만기별 국채 유통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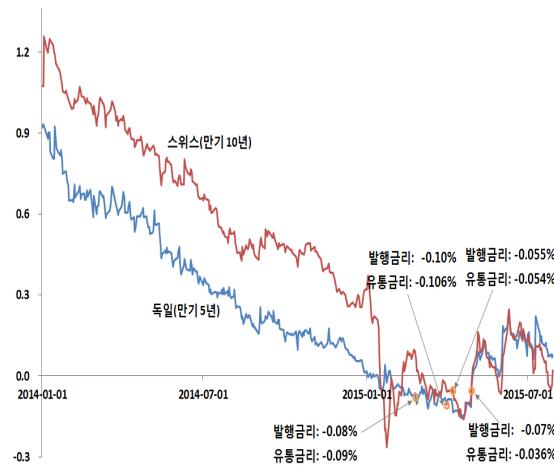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3개월	-0.280	-0.192	0.02	-0.21	-0.2			-0.018	-0.93	
6개월	-0.238	-0.175	0.02	-0.2	-0.18					
1년	-0.210	-0.175	0.031		-0.17	-0.153	-0.195	-0.004	-0.289	-0.872
2년	-0.159	-0.122	0.064	-0.133	-0.11	-0.07	-0.133	0.097	-0.28	-0.815
3년	-0.091	0.004	0.319	-0.016	0.025	0.074	0.05	0.243		-0.779
5년	0.228	0.396	1.036	0.277	0.395	0.361	0.305	0.717	0.214	-0.373
10년	0.950	1.279	2.275	1.152	1.291	1.103	1.009	1.759	1.123	0.235
30년	1.655	2.123	3.336	1.758	2.082	1.81	1.654	2.638	1.684	0.906

주: 2015년 6월 9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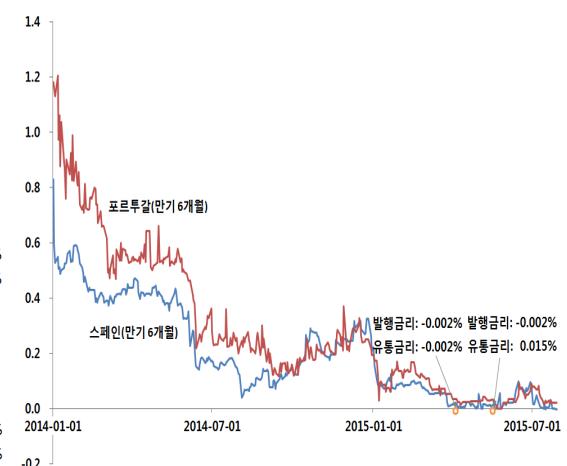
- 국가별 국채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스위스(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에서는 만기 5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에서 상당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국가)에서는 단기 채권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보임(그림 <1, 2> 참조).

〈그림 1〉 독일, 스위스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2〉 스페인, 포르투갈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 독일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발행 사례(2015년 2월 25일 발행, 5년 만기, 표면이율 0%)를 자세히 살펴보면, 낙찰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응찰금액이 몰려 발행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함(표 3) 참조).
  - 독일정부는 제로금리를 목표로 국채발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예상보다 높은 국채수요의 결과로 발행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함.
    - 총 응찰금액은 65억 유로 수준이었지만, 그 중 절반가량인 33억 유로 정도만 낙찰됨.
    - 경쟁입찰에서의 최저낙찰가격은 100.39%이고, 비경쟁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인 가중평균가격은 100.39%라서 채권의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높은 할증채권(premium bond)으로 발행<sup>2)</sup>
  - 마이너스 발행금리는 독일정부가 5년 만기시점에 원금보다 이하수준으로 상환하거나 또는 채권투자자로부터 금리를 받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함.
    - 만기 시점에 100을 주는 무이표채권(중도 이자지급 없음)을 발행 시점에 100.39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0.08%임.

〈표 3〉 2015년 2월 25일 독일 만기 5년 국채(표면이율: 0%) 입찰결과

(단위: 백만 유로)

응찰결과	6,465.00
경쟁	4,384.00
비경쟁	2,081.00
입찰결과	3,280.85
- 최저낙찰가격	100.39%
- 가중평균가격	100.39%
- 평균 금리(수익률)	-0.08%
- 배정	
- 최저낙찰가격시	100%
- 비경쟁응찰시	85%
응찰률	2.0
유통시장조절용	719.15
총발행금액	4,000.00

자료: 독일 중앙은행.

2) 독일 국채발행프로그램은 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로 나뉘짐. 경쟁입찰 시 채권의 액면가(par value) 대비 비율로 가격 제시를 해야 하고, 금리(또는 수익률) 제시는 받지 않음. 경쟁입찰의 경우,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국채를 낙찰을 받으며, 비경쟁입찰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낙찰을 받음.

- 이러한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번 경우는 특히 만기가 5년 이상인 중장기 채권의 발행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마이너스 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차입자가 채권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차입행위(차입에 대해 이자지급)와 상반됨.
    - 채권자는 자금을 남에게 빌려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대여하는 현상은 경제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임.
  -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국채금리가 제로수준에 한시적으로 머문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마저도 유통시장에서만 발생하였음.
- 본고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단기가 아닌 중장기 채권에서 조차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함.
    - 유로존 회원국보다 먼저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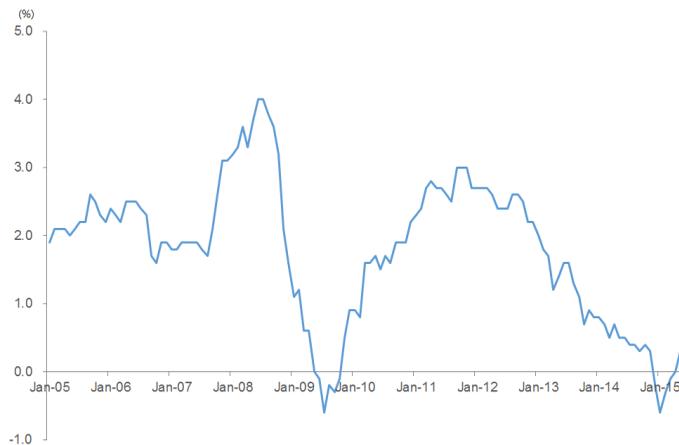
## 2. 마이너스 금리 현상에 대한 분석



- 먼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금리는 실물경제의 기초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실질금리, 향후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으로 결정되는 위험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됨.
    - 국채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위험프리미엄(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 등)
  - 만기가 긴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 지속, 마이너스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향후 실물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일 때 가능함.
  - 실질금리는 실질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 전통적인 거시경제모형의 장기균형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됨.
    - 실질금리 = 시간선호율 + 위험기피도 × 기대소비증가율

- 시간선택효율은 0.02로 0에 가깝고, 위험기피도는 보통 2 이상이라 가정함.
  - 만일 소비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면, 기대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되어 실질금리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향후 실물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임을 반영함.
- 또한 실질금리가 0%보다 클 경우에도 디플레이션 및 위험 프리미엄이 실질금리 수준을 압도할 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때 중장기 금리가 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
-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채권투자자의 전망을 반영함(〈그림 3〉 참조).
  - 이러한 투자자의 디플레이션 전망은 거시경제 악화를 우려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정책시행에 의해 정당화됨.
    - ECB가 지난 3월부터 1조 1000억 유로 규모의 QE를 시작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로 낮추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음.
  - 유럽도 현재와 같은 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됨.
    - 3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0.1%, 스위스 물가상승률은 -0.9%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 가능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수 추이



자료: Eurostat.

---

■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금리의 주된 요인은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과다수요와 관련된 낮은 위험프리미엄에 기인한다고 봄.

- 이는 상대적 안전자산의 수요 확대, 담보거래의 활성화 또는 중앙은행과의 거래 시 국채 수요가 워낙 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유로화 붕괴 가능성에 대한 피난처로 기축자산인 스위스 프랑화 자산이나 독일 국채매입 선호로 이어짐.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거래(RP거래 또는 중앙은행과의 거래)시 담보물 제공거래가 선호되는 현상이 뚜렷이 발생하고 있음.
  - RP거래란 금융기관간 안전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의 대차거래를 하는 담보부 거래의 일종임.
  -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격 담보취득을 전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 국채가 담보로 제공됨.
- 또한 건전성 감독 강화차원에서 안전성이 높은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래에 대해 낮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함.
  -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 규정상 의무적으로 유입자금의 일부를 국채 매입에 사용해야 함.

■ 또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위험프리미엄의 하향화가 심화됨.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IMF는 2016년까지 안전자산 공급물량이 9조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공급물량이 대폭 축소됨.
  - 유럽 재정위기 이전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재정상태가 건전한 독일 또는 스위스 국채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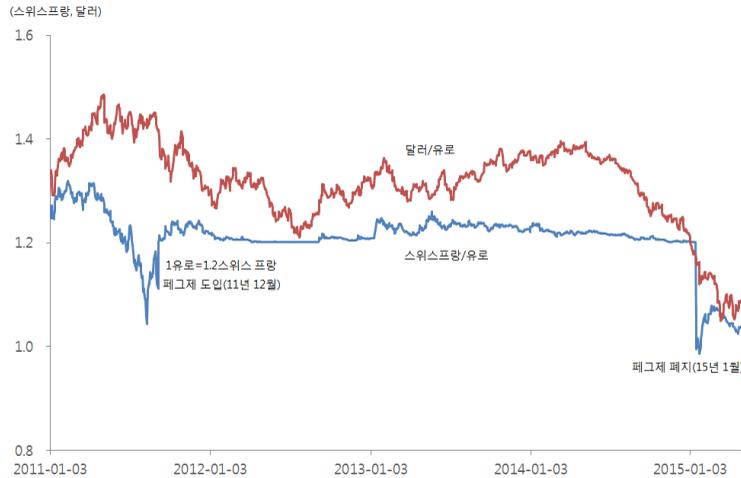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채권투자자의 행위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발생 현상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일지라도 실질금리가 양(+)이면 실질적으로 투자수익이 가능함.
  - 유로존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물가 하락폭이 금리 하락폭을 능가하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수 있음.
  -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투자의 대상은 실물자산에서 명목자산으로 옮겨가는데, 일본의 경우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투자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에서 현금과 일본 국채로 이동했었음.
- 둘째, 외국 투자자들은 금리에서의 손실을 환차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경우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스위스 프랑의 통화 가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환차익은 마이너스 금리손실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음.

<그림 4> 스위스프랑 및 미국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셋째, 중앙은행이 채권매입이나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금리의 추가 하락으로 자본차익이 발생함.
  - ECB가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 역시 국채매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의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은행과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유치할 경우 수수료 발생으로 투자처 확대 요구가 발생함.
  - 유로존, 스위스, 덴마크 중앙은행의 예금금리는 현재 각각  $-0.2\%$ ,  $-0.75\%$ ,  $-0.75\%$ 로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투자기회가 존재한다면 투자할 것임.

### 3. 시사점



■ 지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초저금리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일본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례 없이 낮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 국채에 대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유럽보다 크지 않을 뿐더러 재정기초여건이 양호하지 못해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함.

● 일본 장기금리가 저물가에 대한 기대심리와 엔화국채에 대한 내재적인 수요로 제로금리영역에 머무르고 있음(〈그림 5〉 참조).

– 엔화국채에 대한 수요는 건전성 감독 강화추세와 일본 중앙은행의 대량 국채매입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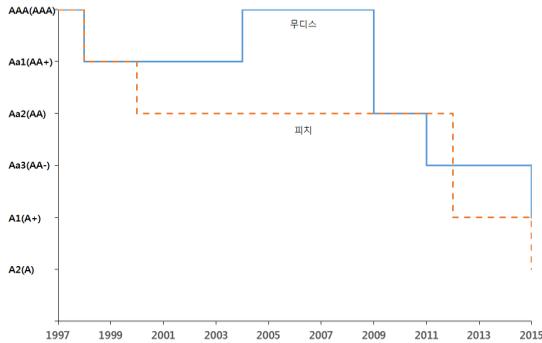
● 하지만 일본 장기금리가 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것은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 엔화 약세 추세, 그리고 일본 국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투자 비중으로 기축통화 수요에서 발생하는 위험프리미엄의 역할이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임(〈그림 6, 7〉 참조).

〈그림 5〉 만기 10년 일본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6〉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주: 괄호 안은 피치 신용등급임.

〈그림 7〉 외국인 국채 투자비중



자료: Bank of Japan.

■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국채가 글로벌 관점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임.
- 다만 중장기 국내 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어서 낮은 실질금리 및 디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팽배가 작용하는 경우
  - 건전성 감독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와 외국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한 수요 확대(예, 원화 강세)로 위험프리미엄이 하락하는 경우
- 이러한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국내 10년 국채금리도 일본과 비슷한 초저금리 수준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kiri](#)



#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금 현황과 시사점

임태준 연구위원

## 요약

-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가계부채는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1%)을 기록,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4년 8월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단행된 LTV·DTI 규제 완화의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일반대출마저 급등
- 한편, 생명보험 산업 내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가계부채 급등이 가계경제 악화로 이어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9월까지 지급된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13.7조 원에 달함.
- 그러나,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총 보유계약 대비 해지(효력상실) 환급금 비율에 변동이 거의 없고 효력상실해지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의 이유를 가계부채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다만, 보험해지(효력상실)시 발생하는 해지공제액 및 운영비 등의 차감에 기인한 고정비용의 존재는 보험해지(효력상실) 행위에 비분할성(lumpiness)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대규모의 보험해지(효력상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 (2015년 국내총생산 추정치인 1,437조 원의 81.1%에 해당)에 도달하였음.<sup>1)</sup>
  - 특히,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단행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은 거시경제의 대내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2015년 3/4분기 말 기준 누적보험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부진, 가계경제 악화 및 부채 급증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월간생명보험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지급된 해지환급(효력상실환급) 건수는 334만(105만)여 건, 지급총액은 13.7조(1.3조) 원에 달함.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별 가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대출) 및 보험 상품 등을 활용함.
  -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지라도, 개별 가계는 소비수준을 과도하게 축소 시키기보다는 예금의 인출 및 대출, 혹은 보험의 해지 등을 통해 기존의 소비수준을 최대한 유지시키고자 함.
-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 규모 증대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험 해지 시에 초래되는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보험해지(효력상실) 건수 및 금액 간에는 비선형관계(non-linearity)가 존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해지(효력상실)시 납입보험료(혹은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사업비 등을 차감한 부분만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액은 보험해지(효력상실)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즉 고정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부채의 자본비용이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개별 가계의 부채 수준이 충분히 높아 부채의 추가조달비용이 보험해지시의 고정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을 상회할 경

1) 가계부채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지표로서 한국은행이 집계·제공하는 가계신용과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가 주로 사용되나,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는 가계부채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 부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목적상 가계신용을 가계부채 규모의 주요지표로 사용함.

우 보험 해지(효력상실)가 발생함.

- 즉, 개별 가계수준에서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유발하는 부채의 임계점(critical point/trigger point/threshold level)이 존재하여 부채수준이 임계점을 넘어선 가구들이 보험을 해약함.<sup>2)</sup>

● 그러므로,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났을지라도 보험 해지(효력상실) 규모가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가계부채와 해지(효력상실)환급 간의 관계가 거시경제와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2. 가계부채 현황



■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3/4분기 말 기준 81.1%에 달함(그림 1) 참조).

● 2002년 465조 원에 머물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4분기 말 기준 1,166조 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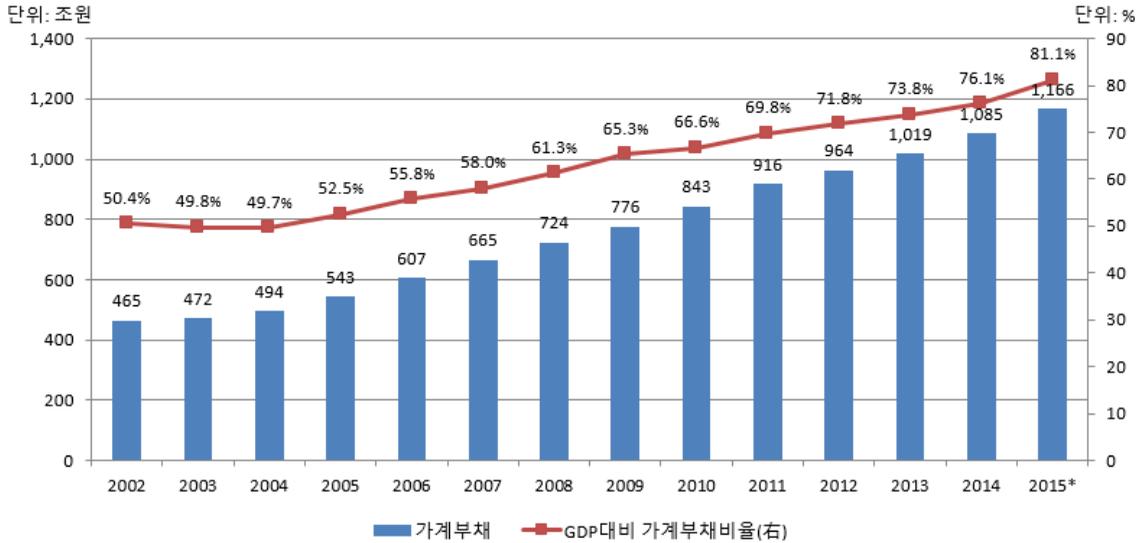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결과 50.4%에서 49.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압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음.

● BIS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84%로 신흥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뒤이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이 각 69%, 69%, 66%를 기록함.

2) 이를 줄여, 보험해지(효력상실)의 행위에는 비분할성(lumpiness)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그림 1〉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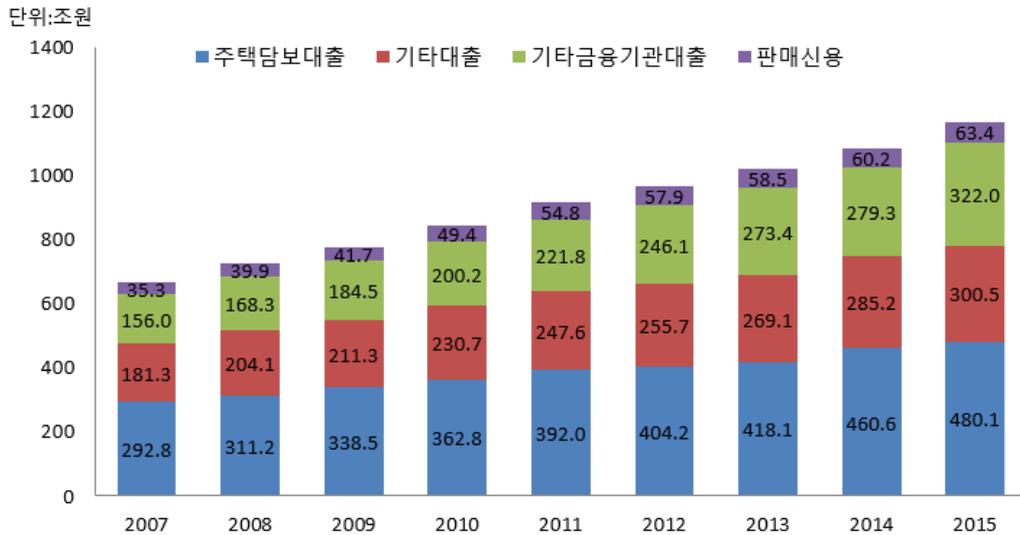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기준.

■ 2007년 이후,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전 항목에서 꾸준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는데 특히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단행된 LTV·DTI 규제완화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든 반면 기타대출이 급증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4분기 말 현재 81.1%로 2014년 말 대비 5.0%p 상승함(그림 1, 2) 참조).

- 가계부채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국은행이 집계·제공하는 가계신용 데이터가 사용되었는데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가계대출은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구성됨.
- 2014년 가계신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66.2조 원에 달하며, 이 중 42.5조 원(64.15%)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였고, 이는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의 결과로 해석 가능함(〈그림 3〉 참조).
  - 국토교통부가 집계·제공하는 주택규모별 준공 실적에 따르면, 2014년 추가 공급된 주택은 총 431,339호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였음.
  -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4년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도 대비 2.0% 상승함(2012년, 2013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 -0.2%, 0.4%에 그침).
  - 이는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가 주택공급 증가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됨.
- 2015년 가계신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80.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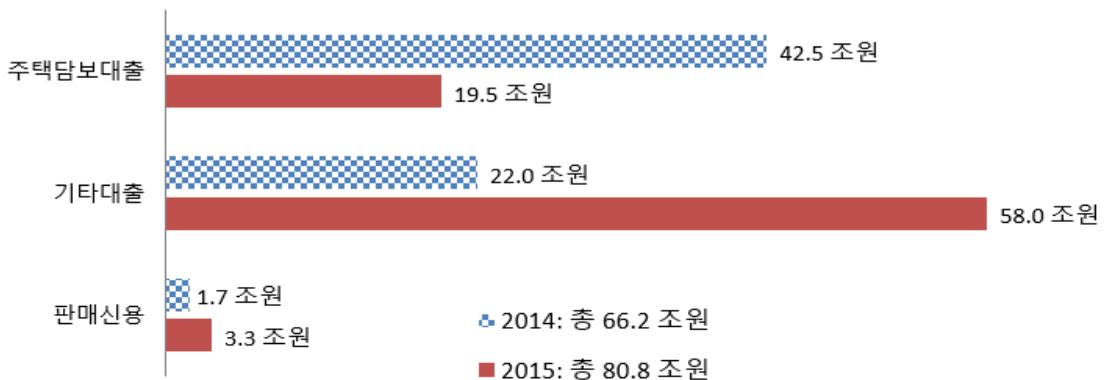
19.5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로 감소하였으나, 일반대출 증가는 58.0조 원(가계신용 증가액의 71.8%)으로 전년도 대비 2.6배, 판매신용 증가는 3.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배 늘어나는 등 가계신용 증가를 견인하였음(〈그림 3〉 참조).

〈그림 2〉 가계신용 구성요소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기준.

〈그림 3〉 가계신용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증감액: 2014 v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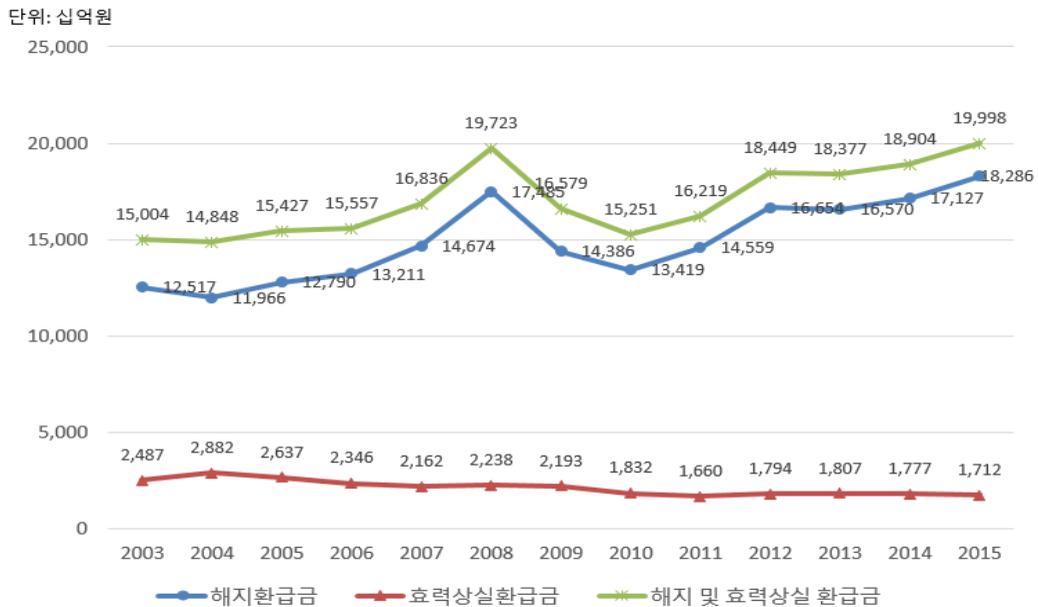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3.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현황



- 생명보험 산업 내 해지환급금 지급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그림 4〉 참조).
- 반면,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총액은 매년 소폭의 하락세가 관측됨.
- 2015년 3/4분기 말 기준 효력상실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해지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의 10% 미만(18조 원 vs. 1.7조 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추이는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 추이에 좌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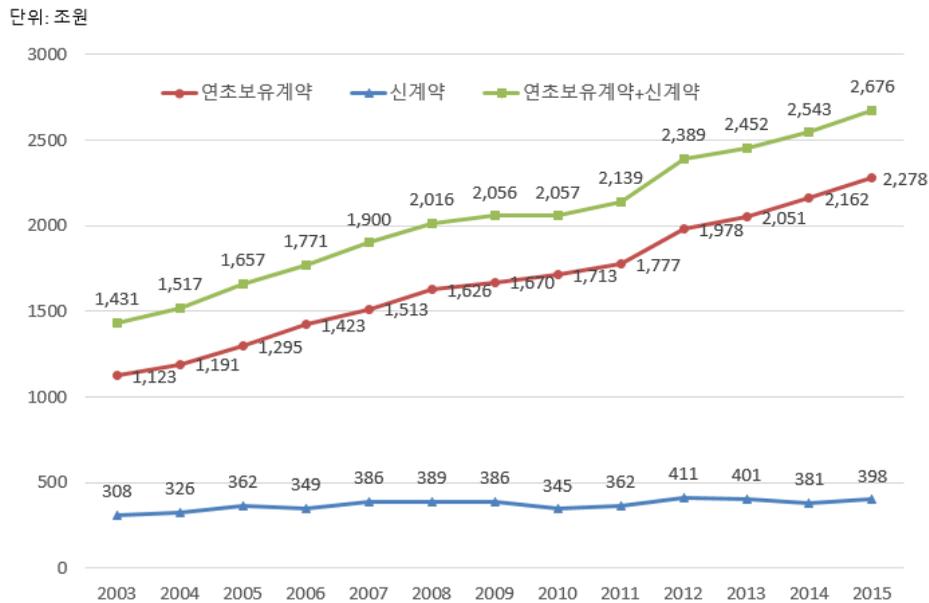
〈그림 4〉 생명보험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현황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2015년의 경우 3/4분기 말 자료를 바탕으로 연환산.

-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해지 및 효력상실 관련 환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해지환급금 절대금액의 증가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은 2003년 1,431조 원에서 2015년 2,676조 원(연말기준추정)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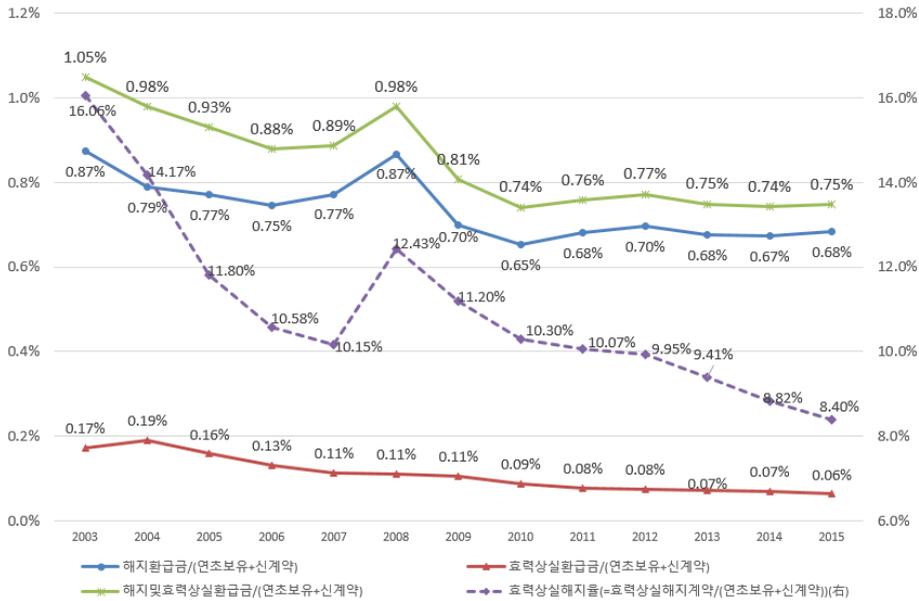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 연도별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 실제로,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 대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2003년 1.05%에서 매년 꾸준히 하락한 결과 2007년 0.89%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98%로 급등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0년 0.74%를 기록한 이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임(〈그림 6〉 참조).
  - (보유계약 대비) 해지 환급금 지급비율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과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하락세가 관측되었으며, 2010년 0.65%를 기록한 이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임.
  - (보유계약 대비)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의 경우는, 2004년 0.19%를 기록한 이래 매년 예외 없이 하락하였으며, 2015년 0.06%(연말기준추정)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효력상실해지율(=효력상실해지계약/보유계약)의 경우도 2003년 16.06%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하락하여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42%p 하락한 8.40%를 기록하였으며, 따라서 최근 이슈화된 해지 환급금 지급총액의 증가는 생명보험 산업 내 총 보유계약의 증가에 따른 단순 착시에 불과함(〈그림 6〉 참조).

〈그림 6〉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대비 해지(효력상실) 환급금비율 및 효력상실해지율: 연도별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 4. 요약 및 시사점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생산성 충격에 의해 가계의 임금(소득)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동할 때 위험회피적인 개별 가계주체는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를 추구하며, 음의 충격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거나 보험 상품을 구매함.
- 부의 공급충격(negative aggregate supply shock)이 경제에 발생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며, 이는 노동수요 감소와 실질임금 및 소득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짐.<sup>3)</sup>
  - 이 경우 소비의 평탄화를 추구하는 개별 가계주체는 소득수준이 감소한 만큼 소비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보유한 저축 혹은 대출이나 보험의 해지 등을 통해 소비의 급락을 저지하고자 함.
  -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계부채 및 보험해지(효력상실)규모 증대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상황임.

3) 이는 Real Business Cycle(RBC) Theory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임.

- 
- 다만, 일반 보통예금과 달리 보험해지(효력상실)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고정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경기 부진시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 규모가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의 인출 시 발생하는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은 반면, 보험해지(효력상실)의 경우 총 납입보험료(혹은 총 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평가액)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운영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손실(고정비용)이 초래됨.
    - 따라서, 보험해지(효력상실)의 행위에는 비분할성(lumpiness/indivisibility)이 존재함.
    - 즉, 개별 가계수준에서 부채가 일정 임계점(critical point/threshold level)을 넘어서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대출비용)이 보험해지(효력상실)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상회할 때 비로소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함.
  
  -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의 절대규모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급증하는 가계부채비율과는 달리 (생명보험 산업 내) 보유계약대비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비율에는 변동이 없고 효력상실해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가계 경제 악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에서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찾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임.
  
  -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한국경제 및 보험산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 추세 지속될 경우 다수의 가계 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위한 임계점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경우 대규모의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2015년 이전까지의 가계부채 증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과열 및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의 결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인함.
    - 반면, 2015년 증가한 가계신용 81조 원 중 71.8%에 달하는 58조 원이 일반가계대출(非주택담보대출)의 증대에 기인하였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대규모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kiri](#)

## 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 윤성훈     |
| 2.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 김세중     |
| 3.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 이기형     |
| 4.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 박선영 이선주 |
| 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선정 기준의<br>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 이승준     |
| 6.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 이기형     |
| 7.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 박선영 이선주 |





#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
  - 첫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 강화, 경영 비용 확대, 규제차익 제거 등 규제 개혁 방안들은 개별 규제 상호간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사회후생 극대화 차원에서 최적의 조합이 마련되고 있음.
  - 둘째, 이러한 규제 개혁으로 인해 시장경쟁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의 역할 제고를 위해 금융의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하락하고 있는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표현처럼 무엇인가 고장나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함.
-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할 것임.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업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는데 소홀하였음.
  -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이 포화되어 가고 경제가 저성장하는 시기에는 질적 성장과 해외진출 등 신수익 원 발굴이 필요하나 핵심역량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함.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재무건전성, 영업행위 등 다른 규제 개혁과 조화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 및 사회후생을 하락시킬 것임.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우려인데, 장기적으로 시장경쟁과 혁신 촉진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와 함께 재무건전성 규제 등 여타 규제 개혁은 최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 기준을 이미 따르고 있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보험업의 경우 일정에 따라 국제 기준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부채시가평가의 충격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퇴출 역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함께 진입 규제도 완화되어야 할 것임.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규제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책실수 우려, 규제편의 감소, 정치적 부담 등인데,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이번 금융규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됨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고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금융업은 주요국에 비해 질적 성장이 지체되었음.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업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100점) 대비 67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융 경쟁력을 반영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말라위(79위), 우간다(81위)와 비슷한 수준임.
  - 금융업의 경우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1년 6.4%에서 2014년 5.5%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고 있음.
  
- 경제의 장기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중개, 위험관리, 부가가치 창출 등 역할 확대를 통해 금융업은 실물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및 견인하고 자체적으로도 성장해야 하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표현처럼 무엇인가 단단히 고장나 있음.
  
- 금융업의 질적 성장을 유인하고 금융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본고는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2. 금융규제 개혁의 국제적 흐름



-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시장실패 등이 존재하는 한편, 신용위기를 실물경제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의 목표는 'Back to the Basic'으로 금융이 위험관리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 및 견인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과도한 이익추구와 이로 인한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음.

-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신용위험, 금융투자업은 시장위험, 보험업은 보험위험 관리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첫째, 각 개별 규제 사이의 최적 균형과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sup>1)</sup>

- 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②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 강화, ③ 겸영에 대한 높은 자본비용 부과, ④ 규제차익 제거 등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개별적인 시각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마련되고 있음.<sup>2)</sup>
- 이는 각각의 규제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금융업의 성과(수익성, 재무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영향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예금이나 보험 등 소비자에게 약속된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하게 요구하면 되나, 이럴 경우 금융서비스 가격이 크게 올라가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규제 조합을 찾고자 하는 것임.

■ 둘째, 이러한 규제 개혁으로 인해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sup>3)</sup>는 금융의 역할을 자금 공급자(출발지)와 수요자(목적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고속도로에 비유하였고, 금융위기는 과속을 단속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함.
  - 실러 교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국제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한 것임.<sup>4)</sup>
- 금융규제 범위를 ‘Safety and Soundness(시스템 위험, 재무건전성)’과 ‘Compliance(지배구조,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등<sup>5)</sup>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의 기본 역할 수행 및 혁신을 위해서는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원활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1) Patric M. Liedtke and Jan Monkiewicz(2011), “The Future of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A Global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2) 이와 함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회사 경영자 인센티브 체계도 논의되고 있음.

3) Robert J. Shiller(2013),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노자양 조운정 옮김, RHK.

4) 강호(2015), “고장난 금융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매일경제신문 2015. 3. 28.

5) Bert Ely(2008), “Financial Regulation”,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 3.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 금융규제 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은 무엇보다도 일반도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융이라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과감하게 올리는 한편,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격과 관련된 그림자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금융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의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기능이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 있음.
  - 둘째, 가격발견 및 정보생산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금융업은 그 동안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게 되어 업무영역이나 판매경쟁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예를 들면, 예정이율과 위험률에 대한 규제로 인해 보험업은 사업비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바리다매식 신계약 위주 경영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은행업 역시 예대마진 및 수수료 규제로 바리다매식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비이자수익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은행업은 신용평가능력이 축적되지 못하였고, 금융투자업은 위탁매매업에, 보험업은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 셋째, 재무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저해하는 상반된 규제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오히려 하락시킬 것임.
    - 보험업의 경우 RBC 규제 강화로 요구자본 규모는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해 2018년 부채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보험회사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보험업이 사업비차익보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률차익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보험회사의 생존과 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임.
    - 궁극적인 소비자보호는 적절한 수익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에 있으나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움.
    - 재무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은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면서(자동차 안전도 강화)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과거와 같이 유지(속도 제한)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국제적 흐름(규제간 최적의 조화, 시장경쟁 및 혁신 유인 유지)과도 맞지 않으며, 금융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넷째,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저성장·저금리 고착화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는 환경 변화와도 부합하지 않음.
    - 과거처럼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을 통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으나,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질적 성장과 해외진출 등 신수익원을 발굴해야 생존이 가능함.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핵심역량 부재를 낳았고 이는 금융업의 질적 성장과 해외진출 등 신수익원 발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sup>6)</sup>
  - 다섯째, 현 규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업은 수익성 하락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sup>7)</sup>가 감소하고 혁신 부재로 실물경제를 지원 및 견인하는 중간재 역할도 약화될 것임.
    - 저성장기일수록 기업은 향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중요해지는데 현재와 같이 낮은 금융업의 ROE 수준은 투자 유인이 없음.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철폐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개연성인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보다는 규제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 철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비정상적 정상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재무건전성 강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료의 경우 사차익과 이차익이 확보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비를 줄일 여유가 생기며,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 및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적안전망 및 실물지원 역할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음.
    -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되어 가격 인상 압력도 크지 않을 것임.
  - 은행업과 보험업에서 가격발전 및 정보생산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헤지도 원활해짐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역할도 제고될 수 있음.
  - 자원배분이 가격기능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후생이 높아질 것임.

6)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5),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험연구원.

7)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이익, 고정자본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와 함께 여타 규제도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재무건전성 기준에 의한 퇴출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진입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함.
-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을 이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강화 명목의 추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나 보험업은 국제적 기준을 예정된 일정에 맞게 따라가야 할 것임.
  - 다만 부채시가평가 시행은 보험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충격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 철폐를 통해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강화되는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 결정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규제 개혁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규제 개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

■ 그러나 정부 주도의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철저히 극복해야 할 것임.

- Yandle(1983)<sup>8)</sup>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① 정책실수 우려(Cost of making a mistake), ② 규제편의 감소(Cost of enforcement), ③ 정치적 부담(Political costs) 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규제 개혁이 사회비용을 줄이기보다는 늘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 개혁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업계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임. [kiri](#)

---

8) Bruce Yandle(1983), "Bootleggers and Baptists - The Education of a Regulatory Economists", AEI Journal on Government and Society. Yandle은 규제를 바꿀 때 정부는 정책실수 가능성이나 정치적 압력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음.



#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 요약

- 영국 정부는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등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시행함.
  - 2015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던 고용의 과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자율화함.
  - 은퇴자들은 여전히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급방식이 자유로워지면서 적립금의 다양한 분할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종신연금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고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방식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1. 검토 배경



- 영국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등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시행함.
  - 영국은 지금까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75%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종신연금 또는 분할인출(withdrawal)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해 왔음.
  - 그러나 영국 의회는 2014년 3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 55% 세율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축소하였고, 이는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함임.
  - 한편 2011년에는 강제 종신연금 전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영국 의회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sup>1)</sup> 2014년 말 기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95.2%이고 연금 수급자 비중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sup>2)</sup> 2015년 세제개편 이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이 3% 미만이며,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 3.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연금수령을 유도함.
  
- 본고는 영국 DC형 퇴직연금 지급방식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제해왔던 영국이 은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금융감독원(2015. 2),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2) 기획재정부(2014. 8),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제적인 흐름이 퇴직연금의 강제화보다 은퇴자의 선택권 강화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를 강제하지는 주장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은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국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에 비해서도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 2.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



- 2015년 4월 이전 영국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금의 75%에 대해 연금 또는 분할인출을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왔음.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25%에 대해서는 비과세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제한된(capped) 분할인출을 통해 노후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제한된 분할인출의 인출금액은 종신연금 수령액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단 연금 적립금이 1만 8천 파운드 이하인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trivial commutation) 이중 25%는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됨.
  - 일시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75%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시금 인출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금 인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DC형 퇴직연금 이외에 연 2만 파운드의 소득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액의 크기에 제약을 두지 않고(flexible withdrawal) 있으며, 인출액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음.
- 2014년 3월 영국 의회는 2015년 4월부터 일시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75%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고율의 과세를 폐지하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은퇴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제도 변경의 결과 55세 이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25%의 비과세 일시금을 제외하고 연금, 분할인출, 일시금 중 자유롭게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연금 또는 분할인출과 같이 소득세율로 과세됨.
  - 따라서 제도 변경 이전에 존재하던 소액 적립금의 전액 일시금 인출허용 제도(trivial commutation), 제한된 분할인출 시 인출금액 상한 제도 등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됨.

〈표 1〉 영국 DC형 퇴직연금 지급방식 제도 변화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4월 이후
비과세 일시금 인출 한도	총 적립금의 25%	총 적립금의 25%
추가 일시금 인출 시 세율	55%	소득세율
은퇴 시 선택옵션	연금보험 또는 분할인출	제한 없음
소액 적립금 인출 허용한도	총합계 1만 8천 파운드 미만	제한 없음
정기인출 시 한도	연금수령액의 120%	제한 없음
제한 없는 인출 기준	2만 파운드 이상의 은퇴소득 확보 시	제한 없음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퇴자의 일시금 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자들이 임대주택 구입 등에 일시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은퇴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한 후 주택매입 및 임대를 통해 연금과 유사한 정기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이 선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은퇴자가 은퇴자산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시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임대소득을 통한 노후소득은 연금 또는 분할인출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은퇴자는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금을 매년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을 소득세율이 변경되는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적립금이 3만 파운드에 불과해 주택임대시장의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은퇴자들은 여전히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할인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종신연금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은퇴자들이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 해도 분할인출 시 인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인출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 수요가 분할인출 수요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5년 4월 23일 Financial Times<sup>3)</sup>는 종신연금 수익률(annuity rates)<sup>4)</sup>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종신연금 수익률은 기대수명 증가

3) Financial Times(2015. 4. 23), "Annuity rates fall to record lows after sweeping pension reforms".

4) 종신연금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 수준을 나타내는 수익률임.

와 시중금리 하락이 겹치면서 수년간 하락해 왔음.

- 연금 수익률 하락과 퇴직연금제도 개선안 발표로 인해 2014년 4/4분기 종신연금 판매는 50% 이상 감소한 반면, 분할인출은 두 배 가까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제도 개선의 의도는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근로자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사적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데에 있음.

-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많은 은퇴자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으나, 저금리 환경으로 연금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연금지급 방식의 자율화는 현 근로자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할 유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효용을 증진시키고 연금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연금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은퇴자의 연금상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연금시장의 역선택 확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함.

■ 은퇴자들의 선택권 확보는 노후소득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은퇴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더라도 은퇴자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노후소득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 판매 또는 사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실제로 1986년 영국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 강제가입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연금판매인들이 수수료가 더 높은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Plans) 가입을 유도하면서 많은 은퇴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 이번 연금개혁은 독립 재무 서비스(Independent Financial Advice)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노후소득상품 선택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함.

■ 한편 2014년 6월 OECD는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변화에 대해 은퇴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2012년 OECD는 DC형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로드맵에서 OECD는 공적 연금의 기능이 약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연금보험을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함.

- OECD는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이번 제도 변화는 OECD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은퇴자들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영국의 연금 연구기관 Pensions Institute도 종신연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하고 이번 제도 변화가 은퇴자에게 종신토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DC형 연금 제도의 본분을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함.

### 3.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급방식 현황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으며,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분류과세를 통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자료<sup>5)</sup>에 따르면 총급여 3천 500만 원, 7천만 원인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은 각각 2.4%, 3.1%로 연금수령 시의 세율 3.3%에 비해 일시금 수령이 세계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1억 2천만 원, 2억 원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은 각각 3.6%, 4.0%로 높지만 퇴직자 중 비중은 크지 않음.
  - 2015년 세계개편<sup>6)</sup>으로 연금수령 시 세율을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의 70%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연금과 일시금에 대해 모두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영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은 약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발표<sup>7)</sup>에 의하면 2014년 4/4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 명) 중 연금 수급자는 4.8%(1,611명)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말 3.0%에 비해서는 높아

5) 기획재정부(2014. 8),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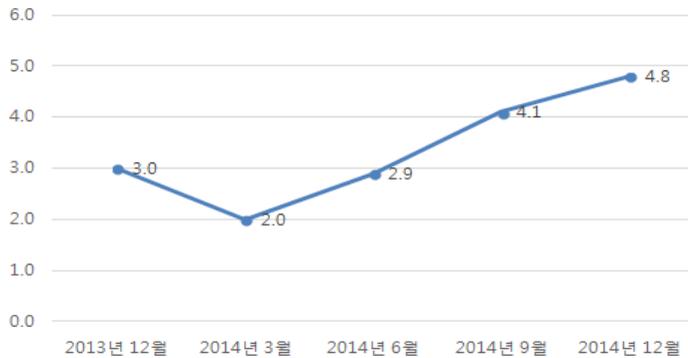
6) 기획재정부(2014. 12),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7) 금융감독원(2015. 2),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금융업권별로 연금지급 비율을 비교해보면 종신연금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연금지급 비중이 6.6%에 그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2.2%를 나타내는 등 모든 업권에서 연금지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지급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중이 낮은 것은 세제유인과 같은 연금선택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단기 지급에 그칠 수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지급 이외의 지급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의 대안으로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함.
  - 또한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선택하더라도 단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연금과 유사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분할인출 선택이 가능함.

##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과 같이 일시금 인출에 대해 패널티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이 일시금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하였음.
  - 저금리로 인해 종신연금 상품의 보장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연금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 근로자의 은퇴저축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OECD의 권고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 시 연금선택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거나, 연금 선택 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의 사례와 같이 연금과 유사한 노후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분할인출 상품을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포함하여 연금상품과의 조합을 통해 은퇴자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은퇴가 임박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급옵션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은퇴자가 노후소득 확보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은퇴자가 종신연금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은퇴자가 최적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고, 연금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kiri](#)



#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위험시설에 대해 배상한도 2,000억 원 이내의 보험 가입을 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책임법”이라 함)』이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음.
  -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상 보호하는 오염사고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과 진동, 해양오염 등이며, 의무가입대상인 위험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영업자, 해양시설임.
  
- 환경책임법은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보험제도외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였음.
  - 피해구제제도는 오염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배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보험수요가 적고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보험인수 실적이 적은 상태임.
  - 향후 환경책임법이 발효되는 경우 의무보험제도와 임의보험제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수전략이 필요함.
  
- 환경책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한 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와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종합적인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오염피해의 범위, 오염사고 기준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최대가능손실평가 등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함.
  - 국가 재보험을 보험제도 운영초기부터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책임과 관련한 법률 제정 논의가 있어 왔는데, 2013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환경책임법의 제정논의와 제정의 계기가 되었음.
  - 독일은 1986년 산도스사의 오염사고로 환경책임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미국은 Love Canal 오염사고로 강력한 수퍼펀드법이 1980년에 제정되었음.
  -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2949호)』<sup>1)</sup>은 환경오염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시설에 대해 보험가입을 강제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하였음.
    - 동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가입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국내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개념이 아직 정착 또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보험제도의 활용도 미약한 상황임.
  - 환경책임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과거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보다 강력한 법리가 적용되어 오염유발 가능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리스크(legal liability 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음.
    - 이에 따라 위험시설의 의무가입과 더불어 다른 시설도 환경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의 구분, 보험상품 구성, 보험계약 인수 방식 등에서 결정될 사항이 남아 있음.
  
- 본고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환경책임법의 주요내용과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개발과 운영에 대해 고찰하였음.
  -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 오염사고와 오염피해의 범위, 오염피해지구제체계, 의무보험 가입내용 등을 살펴보고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요소를 검토하였음.

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참조([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534&PROM\\_NO=12949&PROM\\_DT=20141231&HanChk=Y](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534&PROM_NO=12949&PROM_DT=20141231&HanChk=Y), 2015. 7. 15).

## 2.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 오염 등 주요내용



- 환경책임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등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 환경오염피해배상은 적용대상 중 위험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 오염 및 시설,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는 과거 법률안 내용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 적용대상 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및 진동,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오염으로 과거의 입법안과 비교할 경우 지반침하, 방사능, 지하수 고갈, 일조방해, 자연생태계 파괴 등은 제외되었음(법 제2조 제1항).
    - 적용대상 시설은 대기오염시설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취급업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환경오염시설이며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임.
    - 이들 시설로부터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침해 받았을 경우 피해자는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4조).
  - 적용대상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국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퍼펀드법과 같이 오염책임자범위<sup>2)</sup>를 확대하지 않았음.
  - 동법의 책임법리는 과거의 입법안과 유사하게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조항과 오염유발 사업자의 사고내용 신고의무를 도입하였음.
    - 인과관계의 추정은 사업자의 시설이 오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로부터 오염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켰음(제9조).

2) 미국 수퍼펀드법의 적용대상 사업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유해물질 처분당시의 소유자 및 관리자, 유해물질 발생자, 유해물질 수송자, 담보대출기관이 해당됨. 이기형(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2, p. 82.

〈표 1〉 2016년 시행 환경책임법의 주요내용

구분	1989년 법안	1997년 법안	2000년 법안	2016년 시행 법률
법명	환경오염피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에대한 배상법안	97년과 동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목적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적용대상 대상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진동, 악취, 일조권 방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및 진동, 해양, 기타 오염
배상책임 범위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년과 동일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사고신고의무
오염피해 범위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휴업손해포함)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97년과 동일	제3자 생명·신체 피해, 재산피해,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침해시 원상회복
배상한도 및 방법	-	한도설정	97년과 동일	2,000억 원 이내(고의 등은 제외), 금전배상(원상회복)
보험가입	-	위험시설 의무화	97년과 동일	위험시설 의무화
보장계약	-	-	-	운영기관과 체결
재보험	-	-	-	정부 운영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결정 및 각하 등 심의	-	-	피해구제정책위원회
피해구제	-	-	-	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원회 피해구제계정 운용
정보제공 요구권	-	피해자에게 부여	97년과 동일	피해자에게 부여
미가입자 관리	-	-	-	책임보험전산망 운영

자료: 이기형(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2, p. 28 및 제정 환경책임법 이용 작성.

- 환경오염유발자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한도(limit of legal liability)는 2,000억 원 이내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발생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차등화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6조).
  - 그러나 오염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함.
  - 환경오염피해의 범위는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용대상 오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피해(정신적 피해 포함), 재산 피해(동일한 원인으로 의한 일련

의 피해를 포함)로 규정(법 제2조 제1항)

■ 환경책임보험은 적용대상 시설 중 위험시설(대기, 수질, 지정폐기물, 폐기물시설, 토양오염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영업자, 해양시설)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시설, 분뇨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의무가입에서 제외하였음.

- 이들 의무가입시설의 보험가입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 운영하며 소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위험시설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보험업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로 제한되며, 환경오염리스크의 거대성을 감안하여 공동인수 형태의 보험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 국가는 환경책임보험에 대해 다른 재해 정책보험과 같이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음.
- 의무가입시설이 보험회사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 운영기관과 환경책임보장계약을 체결하여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불가능 문제를 해결함.
  - 보장계약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위험시설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구제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음.

■ 환경책임법의 피해구제는 환경오염 피해가 원인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존부의 불분명,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함(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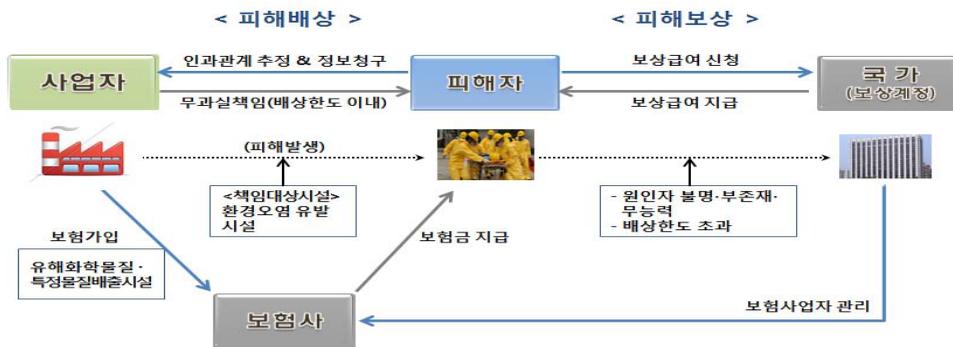
- 국가는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자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의 수입원은 재보험료, 계정 운용수익금, 차입금, 정부출연금, 구상금, 재보험회수금 등이며 지출은 보장금의 지급, 재보험금의 지급 등임(법 제35조, 36조).
- 피해구제에 대한 심의기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법 제24조)와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운영기관에 설치(제29조)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을 심의하며, “구제급여심사위원회”는 지급결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청구내용을 논의함.

### 3. 환경책임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 보험회사는 2016년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책임 관련 보험상품을 검토하여 새로운 환경책임법에 부합한 상품설계와 보험사업 운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책임보험은 위험시설물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 최고 2,000억 원 한도로 피해 배상을 하며, 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됨.
- 보험회사가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오염사고 배상책임 외에도 오염사고의 형태, 배상책임의 범위 등 구체적 담보내용 등이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되어야 함.

〈그림 1〉 환경책임보험과 피해자구제제도의 운영체계



자료: 환경부(2014), 『환경백서 2014』, p. 28.

- 환경책임보험 상품은 담보하는 위험, 사고형태, 담보기준 등을 명확하게 약관에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 보험료가 산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률상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위험(covered peril)은 법률상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the third party liability)이며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고 종업원을 비롯한 당사자 손해(the first party loss)는 보상하지 않음.
  - 환경오염피해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사고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표 2〉 법률상 환경책임보험의 담보손해 범위

구분		기본담보	선택담보
제3자 배상책임	생명 및 신체손해	정신평해 포함	배상한도 초과액
	재물손해	일련의 손해 포함	배상한도 초과액
	자연환경과 경관 침해	원상회복 청구	-
당사자 손해	생명 및 신체손해	종업원을 포함하여 보상하지 않음	담보 가능
	재물손해	보상하지 않음	담보 가능

- 환경책임보험의 담보기준(trigger)은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policy) 또는 표명담보기준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을 줄이고 보험료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손해사고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청구가 이루어 져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국가의 보험회사들도 1980년대 미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채택하고 있음.
    - 표명담보기준(manifestation trigger)은 독일 환경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가입기간 중에 담보하는 사고라고 정부 또는 평가기관이 증명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방식임.
  - 보험요율은 국내 환경오염사고의 경험통계자료 부족과 연간 오염사고 발생건수는 적으나 손해심도가 매우 커 대수의 법칙과 보험수리적인 방법에 의한 새로운 요율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경험요율과 국내의 사고율과 손해심도 등을 감안하여 적용함.
- 보험상품의 운영과 인수방식은 현재 개별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쟁시장 상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상품의 운영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손해보험회사들은 환경책임법제 부합한 상품을 단독상품(stand alone)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04년에 채택된 EU 환경책임법을 이행하는 국가와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32개 국가들의 2014년 현재 보험상품 개발형태를 보면, 독립상품 운영국가는 11개 국가이며,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임.<sup>3)</sup>
    - 국내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운영전략과 경영효율성 제고 가능성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상품 또는 독립적인 환경책임보험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본담보위험으로 법률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특약으로 법률상 배상책임한도 초과담보, 오염지정화비용담보, 자기를 위한 사고에 대한 방어비용, 휴업손실 등을 선택 특

3)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7.

약으로 개발을 검토

- 또한 보험인수방식은 개별회사 인수방식, 공동 인수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회사별 경영전략적 결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보험시장 상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 재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가 더 많은 위험인수가 가능해 보험제도를 통한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험사업단(공동인수 풀) 형태로 인수하는 국가는 프랑스(Assurpol)<sup>4)</sup>, 이탈리아(RC Inquinamento), 네덜란드(Nederlandse Milieupool), 스페인(Pool Español de Riesgos Medioambientale) 등 유럽국가 4개국임.<sup>5)</sup>
- 환경오염사고는 일반적인 재물손해나 배상책임손해와 달리 예상최대손해액(probable maximum loss)의 평가와 손해액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내부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4. 결론



- 국내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오염유발자에게 과거에 비해 엄격한 책임법리를 적용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위험시설의 보험가입 배상한도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경책임법과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풀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5,000만 유로 이상, 스페인 2,000만 유로~3,000만 유로의 담보력을 제고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스페인과 프랑스는 100만~500만 유로이고 이탈리아는 500만 유로 미만임.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10.

5) Aon(2011), "ENVIRONMENTAL INSURANCE: SOLUTIONS & MARKETS", p. 15.

〈표 3〉 국내 환경오염사고의 평균피해액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환경오염사고 유형, 피해금액			사고건당 피해액
	유형	사고건수	피해액	
1970년대	대기오염	1	100	100
1980년대	수질오염	6	2,088	348
	해양오염	2	1,455	728
	소계	8	3,543	443
1990년대	대기오염	2	638	319
	수질오염	8	22,439	2,805
	토양오염	1	700	700
	해양오염	2	250,182	125,091
	소계	13	273,959	21,074
2000년대	대기오염	5	55,471	11,094
	수질오염	1	60	60
	토양오염	2	6,000	3,000
	해양오염	2	4,200,014	2,100,007
	소계	10	4,261,545	426,154
총 합 계		32	4,539,147	141,848

자료: 강남일(2014,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사위 체계지구검토보고서』, pp. 12~14 활용 재작성.

- 현재 법률에서 최대 배상한도액을 2,000억 원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시설별 또는 업종별로 세분화시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 보험제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sup>6)</sup>
  - 배상한도액을 초과한 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 구제계정에서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6) EU 국가들의 경우 기업규모별 가입하는 보험한도를 보면 덴마크는 중소기업 500만 유로, 대기업 1,000만 유로 이상이며, 영국은 중소기업 500만 유로, 중견기업 1,000만 유로, 대기업 3,000만 유로인 것으로 알려짐. Carmen Bell(2014), “Insurance Europe examin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markets generally across the EU”, p. 11.

〈표 4〉 환경책임보험제도와 피해자구제제도의 비교

구분	환경책임보험제도		피해자 구제제도
	보험계약	보장계약	
적용대상	위험시설의 의무가입대상(대기, 수질, 지정폐기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해양오염)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원인제공자 파악불가능,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 배상한도 초과시
담보범위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제3자의 생명 및 신체손해(정신적 피해 포함), 재산손해)		
적용법리	무과실책임, 소급책임, 연대책임, 인과관계추정		
배상한도	최고 2,000억 원 이내, 고의 중과실은 제외		-
사업자(계약방법)	보험사(단독계약) 또는 사업단(공동인수계약)	운영기관	운영기관
재원조성	보험료(소기업 보조 가능)	구제적 사항 시행령 규정	피해자구제계정
위험분산	국가 재보험 가능		없음

■ 보험회사는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기타시설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구분하고, 각 상품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환경오염피해 정의, 오염사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U 국가들에서 환경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은 경영전략적 판단에 따라 2004년 환경책임법에 부합한 독립상품 개발, 기존 배상책임보험의 확장 담보, 종합상품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니즈에 따라 기존 영업배상책임의 특약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새로운 환경책임법에 부합한 단독 종합상품(제3자 배상책임을 기본담보, 당사자리스크는 선택담보)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국가 재보험을 의무보험제도 시작할 때부터 도입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보험사업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환경오염피해 리스크평가와 손해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수반되어야 함. [kiri](#)



#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 요약

- 지난 7월 5일 금융감독원에서 민원 건수 위주의 민원 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민원평가 제도개편은 감독 위주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종합 평가제도로 개편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됨.
  - 민원 건수 위주의 일률적 상대평가에서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을 평가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반면에 민원 정보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은 미흡해 향후 제도보완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그동안 금융민원 평가체제에 초점을 둔 반면에 해외에서는 금융민원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인 해결과 자정노력에 초점을 두고 각종 민원정책이 추진되었음.
  - 올 상반기 미국에서 실시된 민원인의 동의하에 관련 일화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한 “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Consumer Complaint Narrative Policy)”은 민원 정보공개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영국의 윈스톱 민원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포괄적인 민원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정책임.
- 그동안의 하향식 민원 해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자율과 소비자 중심의 상향식 민원 해결 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원 관련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
- 정보공개 등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 및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윈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제언함.

## 1. 검토 배경



-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금융민원 관련 제도 변화 움직임이 활발함.
  - 금융민원 제도는 크게 금융민원 평가 방식과 금융민원 정보공개 제도로 구별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민원 평가방식에 초점을 둔 반면에 해외에서는 금융민원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인 해결에 초점을 둔 측면이 강했음.
  
- 국내에서는 지난 7월 5일, 금융감독원이 기존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평가제도인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올해 종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발표함.<sup>1)</sup>
  -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는 민원 건수 위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해 금융회사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양적·질적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은 민원평가 방식보다는 금융민원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가 정책의 중심기조로 논의되었음.
  -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에서 소비자의 동의하에 민원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서술식으로 공개하고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인 “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Consumer Complaint Narrative Policy)”<sup>2)</sup>을 시행함.
  - 영국에서도 시장 자정 및 자율규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Name and Shame” 원칙하에 민원 관련 데이터 공개의 원칙과 대상, 방식을 엄격히 관리하는 금융민원 윈스톱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본고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민원 관련 제도 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정책 변화의 함의 및 쟁점을 도출한 뒤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금감원 보도자료(2015. 7. 6),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2) 이 정책은 제3자를 통하거나 대행사를 경유하여 제출된 민원 스토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2. 국내 민원 평가제도 현황



- 이번 개편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민원 건수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소비자 중심의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음.
  - 민원 건수 및 소송건수 등 계량항목 이외에도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등한시되었던 민원해결 프로세스 전반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추가되었음.
    -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여부 등 비계량항목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킴.
- 이번 개편안은 줄 세우기식의 일률적인 정량 평가 방식을 탈피해 민원해결 프로세스 전반의 질적 개선을 반영하는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독위주의 하향식 민원평가 방식의 폐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구분	기존안	개선안
시행시기	2002년 시작, 올해 종료	내년 4월부터 시행
평가항목	민원 건수 위주	(계량항목) 민원 건수, 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비계량항목)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평가방식	상대평가	절대평가
평가등급	1~5등급 종합점수 부여	항목별로 3단계(양호/보통/미흡) 평가 종합등급 미산정
공개여부	공개	공개
평가대상	민원발생건수 및 영업규모 비중이 1% 이상인 회사	민원발생건수 및 영업규모 비중이 1% 이상인 회사 *그 외 중소형사는 자율평가 후 금감원이 사후 점검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7. 6),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 이번 개편안에서는 민원데이터의 정보공개 방식과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 체제하에서 민원 관련 정보공개라고 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http://consumer.fss.or.kr>)에서 매년 각 금융회사별 민원등급과 영업규모 대비 민원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정도였음.<sup>3)</sup>

3) 이와 함께 금융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등급을 1개월간 팝업공지하고 팝업 클릭 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2006년 이후 전체 평가결과 상설계시판으로 링크되도록 하고 있음.

- 
- 유사 민원 발생 시 소비자가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개내역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짐.

### 3. 해외사례



- 해외에서는 금융민원 평가방식보다는 민원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가 민원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금융민원 정보공개제도와 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1) 미국

##### 가. 민원 정보공개 제도

- 지난 3월부터 CFPB(금융소비자보호국)<sup>4)</sup>는 소비자의 동의하에 민원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서술식으로 공개하고 회사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인 “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Consumer Complaint Narrative Policy)”을 시행함.

- 이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민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기능, 투명성,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민원 스토리 공개현상을 제도권으로 흡수 통합하는 기능도 부여함.

---

4) CFPB(금융소비자보호국)은 2010년 7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통해 설립된 기구로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 금융소비자와 연관되는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함. 취급 대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 대출, 리스, 부동산 금융, 지급결제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다만, 보험업, 증권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뮤추얼펀드 등은 CFPB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보험업은 해당 주의 보험규제당국이 관할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기 다른 보험감독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CFPB“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주요 내용

구분	내용
CFPB의 민원 공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FPB는 소비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민원을 공개하기 이전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삭제해야 함</li> <li>• 민원정보는 회사로 발송된 이후 60일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공개될 수 있음</li> </ul>
소비자의 조치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는 민원 스토리(complaint narrative) 공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opt-in)”란에 체크를 해야 함</li> <li>• 소비자들은 동의하에 공개된 자신의 스토리를 언제든지 Complaint Database로부터 삭제(Withdrawal)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li> <li>• 그러나 공개 동의 후 삭제하기 이전에 다운로드 된 정보들은 다시 회수할 수 없음</li> </ul>
회사의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시기적절하게 CFPB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민원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첫 응답은 15일 이내에, 최종 응답은 60일 이내에)</li> <li>• 회사는 공개적인 답변을 위해 정형화된 응답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음(회사가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음)</li> </ul>

자료: pwc(2015, 4), *CFPB Consumer Complaints Narrative Policy*.

■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따르면 “Complaint Narrative Policy”가 도입된 이래로 CFPB의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민원사례가 7,700건에 이르고 있음.

- CFPB는 민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 접수 현황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을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고 있음.<sup>5)</sup>
  - 민원정보는 회사로 발송된 이후 60일이 지나면 고객의 동의하에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수 있음.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을 공개하기 이전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삭제한 상태에서 주요 민원 내용과 해결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함(〈표 3〉 참조).
  - 아울러 소비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5) CFPB의 Complaint Database는 2011년 7월부터 소비자의 민원을 받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신용카드 관련 민원으로 국한되었음. 그 이후로 예금, 대출, 리스, 부동산 금융, 학자금 대출 등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민원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6월부터 온라인 Complaint Database의 선별된 소비자 민원을 공개하기 시작함.

〈표 3〉 CFPB “소비자 민원스토리 정책” 사례

항목	내용	항목	내용
Date received	2015. 6. 30	Company	Resident Collect, Inc.
Product	Debt collection	Date sent to company	2015. 6. 30
Sub-product	Other (phone, health club, etc.)	Company response to consumer	Closed with explanation
Issue	Communication tactics	Timely response?	Yes
Sub-Issue	Threatened to take legal action	Consumer disputed?	-
State	GA	Complaint ID	1446062
Consumer complaint narrative	Resident Collect 회사로부터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계좌에 대한 우편물을 받았음. 나는 Resident Collect 회사에 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주소를 준 적이 없음. 그들은 2015년 XXXX XXXX 날짜에 보통 우편을 통해 나에게 연락함. 이 우편은 그들이 나에게 보낸 첫 편지임. 그 편지에는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들의 사무실로 알리지 않는다면 채무는 나의 것이며 판결문을 복사하여 나에게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함		
Company public response	회사는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에 반박함		

자료: CFPB(<https://data.consumerfinance.gov>).

## 나. 민원 해결 프로세스

■ CFPB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민원인과 CFPB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 답변은 60일 이내에 해야 함.

■ 보험민원의 경우에는 미국 각 주의 보험감독청이 이를 담당하는데, 대개 소비자들은 먼저 보험회사와 민원 해결을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험감독청에 민원을 제기함.<sup>6)</sup>

- 보험민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업자가 상호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조정이 실패하거나 보험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청에 접수하는 체계로 운용함.
  -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해태 및 위반을 살펴 민원 제기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정식 민원으로 수용하고 보험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불수용 종결 처리함.
  -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액 판정 등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6) 생명보험협회보 통권 39호(2014. 5), 「생명보험업의 민원발생 유형 분석 및 소비자보험 강화방안 연구」.

- 기타 민원처리 기관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도 있음.<sup>7)</sup>
  - BBB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과 해당 기업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전문 조정인(mediator)이 중재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

## 2) 영국

### 가. 민원 정보공개 제도

- 영국에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이하 FSMA) 이후 8개 옴부즈만 기관<sup>8)</sup>을 하나의 단일 옴부즈만 기구인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로 통합시켜 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sup>9)</sup>
- 영국 FOS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처리 절차와 결정사항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자정 및 자율규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Name and Shame”원칙하에 민원 관련 데이터 공개의 원칙과 대상,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sup>10)</sup>
  - 영국 FOS는 2009년 8월부터 민원 데이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각 회사 및 상품유형별로 비교데이터(Comparative Data)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음(<그림 1> 참조).<sup>11)</sup>
    - 민원 관련 데이터는 개별 회사뿐 아니라 업권별, 그리고 상품군으로 분류되며 상품군은 5대 분류기준(은행, 모기지 포함 가계금융(Home Finance), 일반손해보험 및 순수 보장성 보험, 저축성 생명 및 연금상품, 투자상품)을 따르고 있음.
    - 공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신규 민원 건수, 전체 민원 중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난 민원이 전체 해결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민원 처리 단계 등이며 민원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7) 미국 중재협회는 민원내용이 복잡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의 민원 사안을 취급함.

8) 개정 전 금융분쟁조정기관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The Office of the Banking Ombudsman, 주택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한 The Office of the Building Societies Ombudsman, IMRO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The Office of the Investment Ombudsman, 보험회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The Insurance Ombudsman Bureau, PIA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The Personal Insurance Arbitration Service, SFA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The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 Complaints Bureau and Arbitration Service, FSB(SIB)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The FSA Complaints Unit and Independent Investigator로 나뉘어 있었음.

9) 맹수석(2010),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10) FOS(May 2009), “Policy Statement: Publication of Complaint Data: What We Will Do”.

11)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민원 30건 이상, 해결 민원 30건 이상인 금융회사는 전부 공개 대상임.

〈그림 1〉 영국의 민원 관련 데이터 공개 예시

business name	business group	% resolved in favour of consumer (average for all businesses = 57%)	% resolved in favour of consumer - by complaint category (and average figure for all businesses - for comparison)					
			banking and credit (average for all businesses = 40%)	mortgages and home finance (average for all businesses = 32%)	general insurance (average for all businesses = 36%)	PPI (average for all businesses = 64%)	investments (average for all businesses = 46%)	life & pensions and decumulation (average for all businesses = 29%)
Abbey Life Assurance Company Limited	No Group	24%	*	*	*	*	*	23%
ACE European Group Limited	No Group	56%	*	*	56%	*	*	*
ACF Car Finance Limited	No Group	20%	*	*	*	18%	*	*
Acromas Insurance Company Limited	No Group	34%	*	*	34%	*	*	*
Admiral Insurance Company Limited	Admiral Group	24%	*	*	24%	*	*	*
Advantage Insurance Company Limited	No Group	51%	*	*	51%	*	*	*
Ageas Insurance Limited	Ageas Insurance Limited	45%	*	*	45%	*	*	*
AIB Group (UK) Plc	No Group	42%	39%	*	*	43%	*	*
AIG Europe Limited	No Group	35%	*	*	35%	*	*	*
Allianz Insurance Plc	Allianz Insurance	59%	*	*	35%	62%	*	*
American Express Insurance Services Europe Limited	No Group	30%	*	*	*	28%	*	*

자료: 영국옴부즈맨(<http://www.ombudsman-complaints-data.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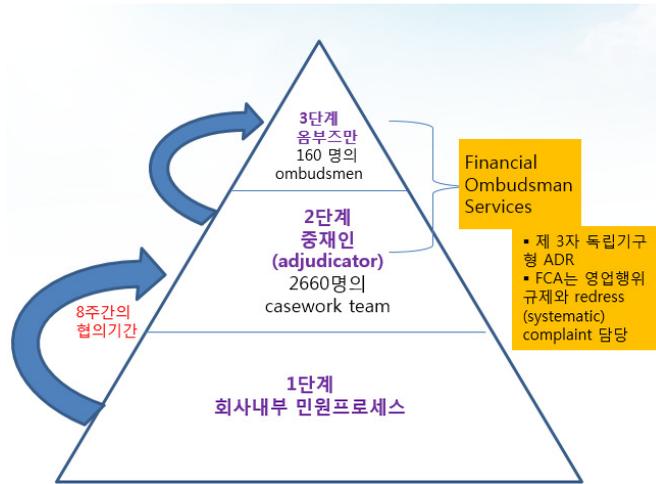
## 나. 민원 해결 프로세스

■ 영국의 FOS는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금융회사 내부 민원 해결 절차를 중시함.

●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 민원 해결 절차와 FOS에 접수된 이후 진행되는 외부 민원 해결 절차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원인은 FOS에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최대 8주까지 내부 민원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8주 내에 회사와의 민원 처리가 잘 안될 경우 그 다음에 FOS에 접수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영국의 3단계 민원 프로세스



자료: 박선영·권오경,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p. 60.

## 4. 주요 쟁점



- 해외사례와 유사한 민원 관련 원스톱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쟁점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원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닌 당사자간 비밀주의 원칙하에 외부 공개를 꺼리는 상황임.
  - 해외에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민원인의 사후적 정보공개 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하에 민원관련 일화를 공개하는 한편 민원인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에서 공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소비자들 각 금융회사별 민원처리 성향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금융상품 구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금융민원 해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의무대상은 아님.
    -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sup>12)</sup>에서 금융분쟁조정 중이라도 소송이 제기

---

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는 채택되어 있지 않음. 13)14)

- 조정전치주이란 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15)

-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분쟁조정 중지 후 소송으로 갈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자본력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16)

●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금융민원 관련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의 주요 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절차를 거친 민원만 처리함.

- 영국은 금융민원전담기구인 FOS가 금융회사와의 조정이 끝난 민원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실시함.

■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는 조정전치주의 및 편면적 구속력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액 금융분쟁에 관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소비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나 금융회사는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강제를 말함.

- 영국은 금융옴부즈만기구(FOS)에서 결정한 10만 파운드(1억 9천만 원) 이하, 독일은 보험옴부즈만협회가 결정한 5천 유로(860만 원) 이하 분쟁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함.

● 편면적 구속력이 강제될 경우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시작 후 분쟁 상대방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받게 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음.

---

12) 제56조(조정지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13) 소액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조정신청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

14) 이택길(2011),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자료, 법제처.

15) 2009년 금감원은 조정신청 이전에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분쟁조정세칙」 변경 안을 예고했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음.

16)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고승덕 의원과 조문환 의원에 의해 두 차례 제출된 바 있음(2009. 6. 12, '고승덕의원안') (2010. 11. 3, '조문환의원안').

## 5. 제도개선안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민원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소비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해외와 비교할 때 취약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편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http://consumer.fss.or.kr>)에서 매년 각 금융회사별 민원등급과 영업규모 대비 민원 건수 정도만을 공표하고 있음.
  
-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 및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함.
  - 영국의 경우처럼 민원 건수, 분쟁 해결 건수, 분쟁 해결 선호도, 민원 처리 단계 등 민원 관련 원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원 유형별로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유사 민원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웹사이트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이같이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 공시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업계 공동의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져 이상 패턴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음.
    - 이 같은 민원정보를 민원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에 활용해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sup>17)</sup>

〈표 4〉 민원 데이터 정보공개 제도개선안

구분	현행	제도개선안
정보전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나 금융소비자보호처 웹사이트에 민원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신설</li> <li>• 민원데이터를 회사별, 산업별, 상품별로 세분화해 비교표로 공시</li> </ul>
정보공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등급</li> <li>• 민원 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민원등급에 소비자 피드백 반영</li> <li>• 민원 데이터 공개(민원 건수, 분쟁해결 건수, 분쟁해결 선호도, 민원 처리단계 등)</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별 순위 및 추세파악 용이</li> <li>• 소비자 인지도 취약</li> <li>• 순위 변동이 없을 경우 소비자 정보 유용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민원정보 관련 접근성 확대</li> <li>• 고객의 금융회사 선택권 보완</li> <li>• “Name and Shame”을 통한 업계 자율시정 및 학습효과</li> </ul>

자료: 박선영·권오경,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p. 86.

17) 일부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영국 및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의 민원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정보보호 위반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임.

- 
- 원 해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일부 법적 쟁점의 조속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자율조정제도”를 활성화해 금융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 우선 자율조정 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함.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소비자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민원관련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관련 절차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연구원이 보험민원 제기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소비자들의 상당수가 불만 발생 시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kiri](#)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 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이하 G-SIFIs) 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각 금융권역별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관심이 모아짐.
- 국제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실패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 부실화나 실패의 확률 보다는 그 부실화나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 FSB의 G-SIFI 식별체계는 크게 지표기반 측정방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으로 이루어짐.
-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은 범주의 가중치와 지표의 선정에서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 차이와 영업 포트폴리오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반영함.
  - 범주의 가중치 측면에서 보험권역은 전통적 보험영업보다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비중(45%)과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상호연계성(40%)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함.
  - 지표를 보면 국제적 활동이나 규모에 비해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상호연계성과 대체가능성 지표 선택에서 금융권역 간 차이가 나타남.
- 금융권역별 G-SIFIs 선정방안 검토를 통해 각 금융권역의 선정방안이 일관된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를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의 선정과정에서도 각 금융회사 사업모형의 특성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1.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이하 G-SIFIs) 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각 금융권역별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시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와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sup>1)</sup>
  - FSB는 은행권역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sup>2)</sup>), 보험권역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sup>3)</sup>), 금융투자권역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sup>4)</sup>)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안정성 관련 논의를 이끌어 왔음.
  
-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라는데 인식이 모아지면서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짐.
  - G-SIFI 규제는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요약되는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대형 금융회사 파산 시 구제금융 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예상한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 FSB는 G-SIFIs에 대한 선정 및 규제 방안을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함께 2011년부터 권역 별로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최근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에서도 선정방안 수정 초안이 발표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 은행권역의 경우, FSB는 BCB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하 G-SIBs)의 선정 및 규제방안을 2011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수정된 내용이 나왔음.<sup>5)</sup>
  - 보험권역의 경우, FSB는 IAI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이하 G-SIIs)의 선정방안과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2013년 발표하였음.<sup>6)</sup>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의 경우, FSB는 2015년 3월에 IOSCO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비보험 금융회사(이하 NBNI G-SIFIs) 선정방안의 수정 초안(Draft)을 발표하였음.<sup>7)</sup>

1) FSB(2010),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y Commissioners.

5) BCBS(2011),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 BCBS(2013),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updated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

6) IAIS(2013a),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initial assessment methodology"; IAIS(2013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olicy measures".

- 본고는 FSB가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함께 발표한 G-SIFIs 선정방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의 금융권역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가 어떻게 금융회사의 시스템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방법에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
  - 향후 논의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D-SIFIs) 선정에 필요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방안



-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 부실화나 실패의 확률보다는 그 부실화나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 어떤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확률이 낮더라도 일단 부실화되는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금융회사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화 또는 실패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규제<sup>8)</sup>와 구분됨.
- 시스템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실패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은행은 자금중개와 지급결제 등 핵심 사업모형의 특성 상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며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 과도한 레버리지와 불충분한 자본으로 유동성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대형은행이 부실화되면 상호연계된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sup>9)</sup>

7) FSB and IOSCO(2015), "Assessment methodology for identifying non-bank non-insure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Consultative Document(2nd). 이 문서의 1차 초안은 2014년 1월 발표되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3월 수정 초안이 나옴. 본고는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의 다양한 사업모형 중 NBNI G-SIFI 선정 논의에서 최종안에 근접한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함.

8) 은행권의 바젤 III 규제, 보험권의 Solvency 또는 RBC 규제, 금융투자권역의 순자본규제(Net Capital Rule)는 각 금융권역의 대표적 미시건전성 규제라 할 수 있음.

9) BCBS(2010), "The Basel Committee'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report to the G20".

- 전통적인 보험영업은 그 자체로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나 신용부도스왑(CDS) 같은 금융보증 등의 비전통·비보험 영업(NTNI Activities)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은 다른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sup>10)</sup>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글로벌 보험그룹 AIG의 부실화는 금융투자 자회사인 AIGFP의 파생상품 거래와 이를 통한 부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화시켰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다양한 사업모형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며 그 중 특정 리스산업과 같은 시장의 집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위기 시 자산급매각으로 인한 시장혼란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sup>11)</sup>
    - 예를 들어, 항공리스크와 같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시장구조를 가진 금융업은 부실 시 빠른 대체가 어려운 시장구조로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함.
    - 또한 투자금융회사는 금융시장의 주요 채권채무자로 기능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시 증거금납부 요구(Margin call)나 자산급매각 등의 경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금융권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FSB는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G-SIFIs 선정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G-SIFIs 선정의 기초단계인 G-SIFIs 후보 금융회사 샘플은 각 금융권역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감독자 판단을 거쳐 후보군을 선발하고, FSB는 이들 중 G-SIFI 식별체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G-SIFIs를 선정함.
- 은행권역의 경우, 바젤 III 레버리지 비율 노출 측정<sup>12)</sup>에 기초한 75대 글로벌 은행과 전년도 G-SIBs 지정 은행<sup>13)</sup>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보험권역은 총자산이 6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총수입보험료 중 해외 비중이 5%를 넘는 글로벌 보험회사와 총수입보험료 중 해외비중이 5% 이하지만 총자산이 2,0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됨.
    - 금융보증보험회사 등이 추가적으로 감독자 판단을 거쳐 포함될 수 있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sup>14)</sup>의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

10) IAIS(2013a).

11) FSB and IOSCO(2015).

12) 바젤 III 레버리지 비율 노출 측정은 a) 재무상태표상 노출 b) 파생상품 노출 c)증권금융거래(SFT) 노출 d) 부외(OBS) 항목의 합계로 구성됨. (BCBS, Basel III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 2014)

13) 감독자들이 충분한 이유를 들어 제외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전년도 지정 G-SIBs는 후보군에 포함됨.

14) 다양한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 중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에 대해서만 기준이 정해진 상태임.

는 총자산 1,000억 달러를 넘는 경우 NBNI G-SIFIs 후보회사로 포함됨.

■ FSB의 G-SIFI 식별체계는 크게 지표기반 측정방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으로 이루어짐.

- 지표기반 측정방법<sup>15)</sup>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국제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보험은 비전통·비보험)의 5개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고 각 범주를 지표(Indicator)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점수화함.
  - 예를 들어 지표기반 측정방법에 의해 기준 점수(Cut-off score)를 넘은 은행은 감독자 판단을 거쳐 G-SIBs로 지정됨.
  - 5개 범주 중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비전통·비보험) 등은 특히 해당 금융권역의 사업 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간과할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엄격한 적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의성을 배제함.
  - 예를 들어, BCBS는 감독자 판단을 위한 4가지 원칙<sup>16)</sup>을 정하여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 보험권역은 감독자 판단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량적 판단기준으로 IFS(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평가<sup>17)</sup>를 사용하여 보험회사 영업행위가 시스템적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자 판단 과정에서 고려함.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가용한 정량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감독자 판단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FSB 및 IOSCO는 제안하고 있음.<sup>18)</sup>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 지정 과정에서 각 나라 사정에 정통한 감독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15) 지표기반 측정방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실패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16) 1. 감독자 판단으로 인한 조정은 정량적 점수를 뒤집어야 하는 드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2. 감독판단 과정에서 은행의 리스크(즉, 부실 또는 부도 확률)가 아니라 부실 또는 부도 발생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3. 국가 내 정책/청산 체계의 질에 대한 견해는 G-SIBs 식별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문서화되고 증명가능한 정성 및 정량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

17) 보험회사 영업활동을 전통적 보험, 준전통보험, 비전통적 보험, 비보험금융, 산업활동으로 나누어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함.

18) FSB and IOSCO(2015), pp. 6-7.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주로 영업행위 관점에서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이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떨어짐.

〈표 1〉 2014년 11월 발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그룹(Bucket)* 및 추가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5(3.5%)	(해당은행 없음)
4(2.5%)	HSBC, JP Morgan Chase
3(2.0%)	Barclays, BNP Paribas, Citigroup, Deutsche Bank
2(1.5%)	Bank of America, Credit Suisse, Goldman Sachs, Mitsubishi, UFJ FG, Morgan Stanley, Royal Bank of Scotland
1(1.0%)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Bank of New York Mellon, BBVA, Groupe BPCE, Group Credit Agricol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NG Bank, Muzuho FG, Nordea, Santander,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State Street, Sumitomo Mitsui FG, UBS, Unitcredit Group, Wells Fargo

주: G-SIBs는 속한 그룹(Bucket)에 따라 차등화된 추가적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를 받음.  
 자료: FSB(2014), 2014 update of list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 FSB는 개별 금융권역 선정방안에 따라 매년 11월 G-SIFIs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현재 30개 은행과 9개 보험회사가 지정되어 있음.

- 은행권역에서는 HSBC와 JP Morgan Chase를 비롯하여 Barclays, BNP Parisbas, Citigroup, Deutsche Bank 등 대형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성에서 상위 그룹<sup>19)</sup>에 속함(〈표 1〉 참조).
- 보험권역에서는 미국 AIG, Prudential Financial, Metlife, 영국 Aviva, Prudential, 프랑스 Axa, 이탈리아 Generali, 독일 Allianz, 중국 Ping An 등 9개 보험회사가 지정됨.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현재 선정방안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 중에 있으며 NBNI G-SIFIs의 선정 및 규제 방안을 확정된 후 지정할 예정임.

### 3. 금융권역별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 비교



■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은 범주의 가중치와 지표의 선정에서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 차이와 영업 포트폴리오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반영함.

19)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지정은 그 중요도에 따라 5개 그룹(Bucket)으로 나누어 그룹에 따라 1%~3.5%의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범주의 가중치는 은행은 5개 범주에 20%씩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보험은 복잡성을 대체하는 비전통·비보험에 45%, 상호연계성에 40%를 배분하고 나머지 3개 범주에 5%씩 배분함.<sup>20)</sup>
  - 지표의 경우, 모든 금융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지표들도 있지만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들도 포함되어 금융권역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짐.
- 범주의 가중치 측면에서 보험권역은 전통적 보험영업보다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비중(45%)과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상호연계성(40%)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함.
- 보험업의 경우,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 보험의 리스크는 다른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독립적이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효과적인 리스크 풀링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함.
  - 따라서 전통적 보험营业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의 규모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 등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규모(45%)가 시스템적 중요성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 보험회사의 규모(5%) 가중치가 시스템적 중요성의 판단에 있어 은행의 규모 가중치(2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이기도 함.

〈표 2〉 G-SIBs(은행)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

범주	범주 가중치	지표	지표 가중치
국제적 활동	20%	국가 간 채권	10%
		국가 간 부채	10%
규모	20%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에 정의된 총노출	20%
상호연계성	20%	금융기관 간 자산	6,67%
		금융기관 간 부채	6,67%
		유통 유가증권	6,67%
복잡성	20%	장외파생 명목 금액	6,67%
		level 3 자산*	6,67%
		거래 및 매매 가능 유가증권	6,67%
대체가능성 / 금융기관 하부구조	20%	수탁자산	6,67%
		지급결제 활동	6,67%
		부채 및 주식 인수거래	6,67%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BCBS(2013).

20)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아직 범주 및 지표별 가중치가 정해지지 않음.

〈표 3〉 G-SII(보험)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

범주	범주 가중치	지표	지표 가중치
글로벌 활동	5%	해외부문 수입	2.5%
		활동국가의 수	2.5%
규모	5%	총자산	2.5%
		총수입	2.5%
상호연계성	40%	금융기관 간 자산	5.7%
		금융기관 간 부채	5.7%
		재보험	5.7%
		시장유통 파생상품	5.7%
		거대노출	5.7%
		회전율	5.7%
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복잡성)	45%	level 3 자산*	5.7%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	6.4%
		파생상품거래	6.4%
		단기자금조달	6.4%
		금융보증	6.4%
		변액보험 최저보증	6.4%
		그룹내부 약정	6.4%
보험부채 유동성	6.4%		
대체가능성	5%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	5%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IAIS(2013a).

- 또한 보험회사는 시스템리스크의 근원이기 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촉발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채권 및 채무관계, 재보험, 파생금융 등 금융시장을 통한 상호연계성(40%)도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
- 지표를 보면 국제적 활동이나 규모에 비해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상호연계성과 대체가능성 지표 선택에서 금융권역 간 차이가 나타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표 4 참조).
  -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시스템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은 담보하는 리스크의 종류가 중요하며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회사조직이나 보유자산의 복잡성이 보다 중요함.
    - 보험의 경우, 비전통보험인 변액보험과 금융보증, 은행 사업모형과 유사한 단기금융, CDS 등 파생금융상품 등이 지표를 구성하며, 이들 비전통·비보험의 리스크는 전통적 보험과 달리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위기 시 보유자산이나 회사구조가 복잡하여 기업가치의 평가가 어렵고 신속한 청산이 어려우면 시스템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지표 선택에 이러한 점이 반영됨.
  - (상호연계성) 보험권역 상호연계성 지표의 주요 차이점은 재보험, 파생거래, 자산회전을 등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한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을 포함하는 점임.
    - 금융기관 간 자산 및 부채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자산급매매에 따라 유사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전이되는 공통점도 반영함.
  - (대체가능성) 보험과 비은행비보험 금융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실패 시에 신속하게 대체할 회사가 부족한 경우의 시스템적 영향을 반영함.
    - 따라서 보험의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나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정성적 판단 등을 대체가능성 지표로 선정함.

〈표 4〉 금융권역별 지표 비교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은행 (G-SIBs)	보험(G-SIs)	금융투자(NBNI G-SIFs)	
			여신전문회사	투자금융회사
국제적(글로벌) 활동	국가 간 채권	해외부문 수입	국가 간 채권 국가 간 부채	국가 간 채권 및 부채
	국가 간 부채	활동 국가 수	해외 자산 및 매출 활동 국가 수	활동 국가 수
규모	바젤Ⅲ 총노출	총자산	총 글로벌 연결자산	총 글로벌 연결자산
		총수입	총 글로벌 연결부외노출	총 글로벌 연결부외노출 시장유통 고객자산
상호연계성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재보험	유형별 채무	레버리지 비율
		시장유통 파생상품		단기채무 비율
	시장유통 유가증권	거대노출	레버리지 비율	장외파생 자산 및 부채
		자산회전율		청산기관 요구마진
level 3 자산*				
복잡성 (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장외파생 명목금액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 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 명목금액	연결 자회사 수 (구조적 복잡성)
	level 3 자산*	단기자금조달	청산의 난이도	level 3 자산* (운영상 복잡성)
	거래 및 매도가능 유가증권	금융보증	비유동자산규모 (level 3 자산* 등)	
		변액보험 최저보증		
		그룹내부 약정 보험부채 유동성		
대체가능성	수탁자산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 (대재해, 항공, 해상, 금융보증 등)	시장점유율 및 대체성을 고려한 정성적 판단	시장이 증개인에 의존하는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지급결제 활동			시장점유율 (i)국내 거래소 점유율
	부채 및 주식 인수거래			(ii) (가용한 경우) 국제 유가증권시장 점유율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BCBS(2013), IAIS(2013a) 및 FSB and IOSCO(2015).

## 4. 국내 금융규제에 주는 시사점



- 금융권역별 G-SIFIs 선정방안 검토를 통해 각 금융권역의 선정방안이 일관된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를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범주의 가중치에서 은행과 보험의 차이는 규모, 상호연계성, 복잡성(비전통·비보험) 등이 각 금융권역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에 미치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 지표의 경우, 공통되는 항목도 다수 있으나 특히 상호연계성, 복잡성 및 대체가능성 등 금융권역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범주에서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각 금융권역 별 규제의 특성에 따른 통계자료의 가용성과 같은 제약과 지표방식에 따른 정량적 방법론이 간과하는 금융권역의 특수성은 감독자 판단으로 반영함.
  
- 보험권역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성은 주로 비전통비보험 사업모형을 통해 나타나므로 시스템리스크 관련 규제에 이러한 보험업 사업모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sup>21)</sup>가 필요한 전통적 보험영업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은행처럼 20%의 규모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상을 왜곡시켜 규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
    - 이 경우, 전통적 보험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대형 보험회사는 시스템적 중요성이 낮음에도 G-SIFIs로 선정되는 반면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비전통·비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의 선정과정에도 각 금융회사 사업모형의 특성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D-SIFIs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재량이 큰 비중을 가지므로 해당 금융권역 감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KiRI](#)

21)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통적 보험영업은 효과적인 리스크 풀링을 위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함.



#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요약

- 2000년대에 들어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등 테러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의 911테러와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항공기 추락과 파리의 연쇄테러는 테러리스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크는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러방지 국제적 협조 관계 형성과 빈번한 테러 위협신고 건 등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테러리스크가 화재 등 일반적인 담보리스크와 달리 사고발생의 우연성과 손해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911테러로 확인됨에 따라 상공업물건 계약의 테러보험 구입이 어렵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의 상황에 부합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테러보험제도는 자연재해정책보험과 달리 거대사고이므로 국가재보험과 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화학, 핵, 방사능, 사이버에 대해서는 선택적 담보로 검토
  - 테러보험상품은 독립된 상품개발보다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 종합보험에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상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1. 검토배경



-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추락, 프랑스 파리에서의 연쇄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였고 전 세계에 테러 공포를 확산시켜 국내외적으로 테러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전환하여 만일의 테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테러리스크는 보험관점에서 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 달리 사고발생이 의도적이고 손해심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인수한도를 낮추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별한 리스크로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2001년 429억 달러라는 거대손해가 발생한 911테러 이후 더욱 확대되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정책적으로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상공업물건의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험을 통한 테러리스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의 운영체계는 국내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테러리스크와 일반 담보리스크의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테러보험제도에서 담보하는 테러방법, 국가 재보험담보 제공과 한도, 운영방법 및 기구 등을 비교하여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테러리스크의 특징



- 테러(terror)는 사전적으로 “①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sup>1)</sup> 또는 ② 어떤 대상에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의되며,<sup>2)</sup> 테러리즘

1) 민중서림,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p. 1951.

2) 군사적인 개념으로 테러는 “주권 국가 또는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의 사용을 협박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terrorism)은 폭력에 호소하는 정치상의 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음.

-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의 경우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별로 보험보장여부를 명시하는 형태로 테러보험(terrorism insurance)을 운영하고 있음.

■ 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과 신체 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OECD국가들의 테러리스크 정도(terrorism index)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의 한국의 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이며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1〉 2014년 OECD국가의 테러리스크 지수 및 발생현황

(단위: 횟수, 명)

국가	리스크 지수	세계 순위	테러 건수	사망자 수	국가	리스크 지수	세계 순위	테러 건수	사망자 수	국가	리스크 지수	세계 순위	테러 건수	사망자 수
터키	5.98	17	34	57	스페인	1.84	69	5	0	포르투갈	0.23	105	0	0
멕시코	4.66	32	4	40	캐나다	0.95	84	3	0	에스토니아	0.16	109	0	0
미국	4.71	30	9	6	스위스	1.34	77	2	0	아이슬란드	0.08	113	0	0
영국	5.17	27	131	3	덴마크	0.19	107	1	0	헝가리	0.07	116	0	0
그리스	4.73	29	53	2	노르웨이	3.57	44	0	0	일본	0.01	121	0	0
이스라엘	4.66	32	28	2	스웨덴	1.07	82	0	0	핀란드	0	124	0	0
칠레	2.59	58	4	2	독일	1.02	83	0	0	뉴질랜드	0	124	0	0
체코	0.81	85	1	1	네덜란드	0.58	89	0	0	폴란드	0	124	0	0
아일랜드	3.09	47	24	0	벨기에	0.53	93	0	0	슬로바키아	0	124	0	0
이태리	2.55	62	7	0	호주	0.41	95	0	0	슬로베니아	0	124	0	0
프랑스	2.67	56	5	0	오스트리아	0.24	103	0	0	한국	0	124	0	0

주: 리스크지수는 과거 테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해 등을 고려하여 10(이라크)을 최고로 산출한 것임.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 pp. 8~9; Global Terrorism Index 2014, p. 35 이용하여 재작성.

■ 또한 테러리스크는 사고발생의 우연성 및 발생빈도, 발생 손해의 광범위성 등에 있어 화재 등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음.

- 테러리스크는 테러행위 그 자체에 국한하여 보면 고의적인 행위이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우연성이 있으며 리스크관리기법을 이용하여 방지 또는 회피 등 관리가 가능함.
  - 예를 들면 테러발생이 빈번한 국가에 여행을 가지 않고 안전한 국가로 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이 자국 내 테러 용의자를 입국시키지 않기 위해 지문채취와 동공사진 촬영 등 입국통제방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국방과학기술품질원(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법도 리스크방지의 예에 해당됨.

- 테러리스크로 인한 손해 유형은 통상적으로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 등 간접손해, 인적손해가 있으며 이 같은 손해는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표 2〉 테러리스크가 보험종목별 손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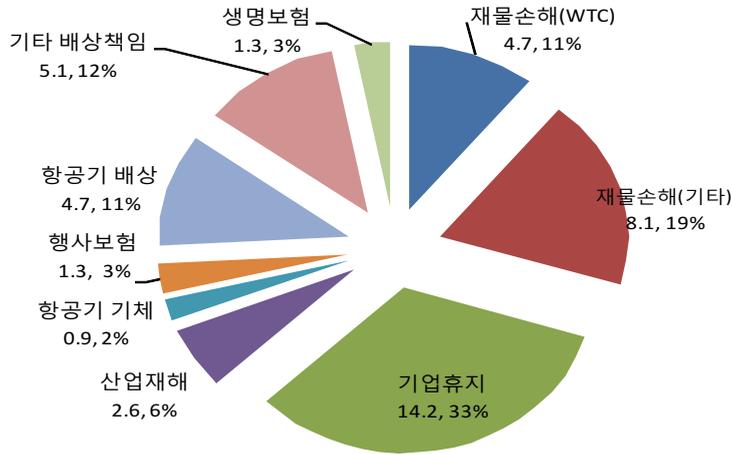
폭력방법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무장공격	●	●	○	-	●
방화/소이탄	●	●	○	-	●
생물학작용제	○	●	●	○	●
화학작용제	○	●	●	○	●
재래식폭탄	●	●	●	○	●
사이버공격	○	●	-	-	-
위험물질방출	○	●	●	○	●
핵무기	●	●	●	○	●
방사능제	○	●	●	●	●
감시	-	●	-	-	-
무단침입	-	●	-	-	-

주: ●는 가능한 관계, ○는 잠재적인 관계를 의미함.

자료: Willis North America(2013),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AUTHORIZATION ACT", p. 3.

- 2001년 911테러는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429억 달러의 보험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2015년 11월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의 테러는 인적손해 중심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911테러의 보험 손해액 비중을 보면, 건물과 항공기 재물손해 32%, 인적손해 3%, 배상책임손해 23%, 기업휴지 등 간접손해는 36%임(〈그림 1〉 참조).

〈그림 1〉 911테러의 손해유형 현황 및 손해액(2009년 기준, 십억 달러)



주: 1) 2013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2) 총액에는 뉴욕시가 2010년 10,000명의 Ground Zero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657.5백만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Terrorism Risk and Insurance" (<http://www.iii.org/issue-update/terrorism-risk-and-insurance>).

- 테러리스크는 고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빈도가 화재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더라도 사고발생확률 예측이 어려우며 거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테러리스크는 보험으로 전가하여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지만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인수한도(보상한도)를 크게 낮추거나 인수거절을 하게 되어 보험가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면 시카고 O'Hare공항은 911테러 이전에 750백만 달러의 보험금액에 대해 보험료 12.5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었으나 테러 후에는 150백만 달러에 대해 6.9백만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금문교의 경우에는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크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테러리스크 이외의 담보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1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달러로 크게 낮추어졌으며 보험료도 50만 달러에서 1.1백만 달러로 크게 인상되었음.<sup>3)</sup>

■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들이 테러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거나 담보에서 제외함에 따라 테러리스크가 큰 국가들은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관리하고 있음.

- 현재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002<sup>4)</sup>), 오스트리아(2002), 벨기

3)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 p. 152.

4) 테러보험제도 시행연도를 의미함.

에(2008), 독일(2002), 네덜란드, 스위스(2003), 영국(1993), 러시아, 대만, 남아공,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홍콩이 있음.<sup>5)</sup>

- 이에 비해 호주(2003), 프랑스(2002), 스페인(1941), 이스라엘(의무)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발생 이후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하여 전쟁 및 테러면책 특약(war and terrorism exclusion)<sup>6)</sup>을 신설함에 따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시설물에 대한 공동인수물 형태의 테러보험제도<sup>7)</sup>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현재는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의 계약자들은 선별적으로 테러 보험담보를 구매하고 있음.

### 3.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

#### 가. 미국<sup>8)</sup>

■ 미국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자발적인 테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보험시장의 경색화로 정부와 보험회사가 협력하는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911테러 이후 미국 45개주가 산재보험이외의 보험에서 테러리스크의 부담보를 인가함에 따라 계약자들은 낮은 보상한도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테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2년 중간선거 이후 테러리스크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이하 “TRIA”라 함)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2년 12월에 제정되었음.

5)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22.  
 6)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테러행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의 사용을 의미하며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한 폭력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면책특약을 첨부하고 있음.  
 7) 국내 테러보험 풀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재물손해 150억 원, 인적손해 100억 원이었음. 파이낸셜타임즈(2014. 2. 23), “국제사회, 정책성 테러보험 니즈 높아져”.  
 8)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테러보험제도는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과 OECD, *International Platform on Terrorism Risk Insurance*의 국가별 자료,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TRIA는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파트너십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체계이며, 정부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최고한도로 보장하며 시행일 이후 3년마다 검증하여 보험제도를 재연장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세 번째 연장하여 2020년까지 운영됨.

- 테러보험제도는 상업용자동차, 도난 및 강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임원배상 제외), 농업보험을 제외한 상업용손해보험(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며, 테러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무성 장관이 테러행위(act of terrorism)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됨.
  - 재무성장관은 테러로 인한 총손해액 5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국토보안성장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며, 2007년까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가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한 테러에만 한정하였으나 2008년 개정 시 국내외 테러 구분을 삭제하여 테러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테러를 위한 폭력수단에는 생화학약제 사용, 핵 사용, 방사능제 사용은 선택적 담보가 가능하나 사이버테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표 3〉 미국 테러보험법 개정 현황

(단위: 달러)

구분	제정법	1차 개정법	2차 개정법	3차 개정법
	2002. 11. 26~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2008. 1. 1~2014. 12. 31	2015. 1. 1~2020. 12. 31
법명	Terrorism Risk Insurance of Act 2002	Terrorism Risk Insurance Extension Act 2005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07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15
담보행위	외국인 테러행위에 한정	외국인 테러행위에 한정	국내인과 외국인 테러행위 구분을 삭제	2차 개정과 동일
담보지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인정손해	5백만	5백만	5백만	5백만
정부보전 기준	5백만	2006: 5천만, 2007: 1억	1억	2015: 1억, 2020: 2억 (매년 2천만 증액)
보험사 자기부담	2003: 7%, 2004: 10%, 2005: 15%	2006: 17.5%, 2007: 20%	20%	20%
정부보전	90%	2006: 90%, 2007: 85%	85%	2015: 85%, 2020: 80% (매년 1% p 감소)

주: 보험사 자기부담은 전년도 보유경과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5 및 Baird Webel(2014, 2015),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참조하여 작성.

-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위험분산체계는 다른 국가제도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2014년 기준을 보면 손해액 1억 달러까지는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며, 1억 초과 1,000억 달러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보험회사가 각각 85%, 15%를 분담하되

보험회사는 전년도 원수보험료의 20%를 360억 달러를 한도로 자기부담해야 함.

- 2014년 12월 3차 개정 시 정부가 보전하는 기준액 1억 달러를 2020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씩 증액하여 2억 달러로 하며, 정부보전비율은 2020년에 80%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영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임.

## 나. 프랑스

■ 프랑스는 911테러 이전에도 잦은 테러로 인해 1986년에 보험법(article L.126-2)을 개정하여 상공업물건과 자동차 물적손해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테러리스크를 면책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 갱신할 때 테러리스크를 담보에서 제외시켰음.

- 이로 인해 상당수 상공업 계약자들은 테러리스크에 대해 무보험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보험회사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2001년 12월에 민관파트너십의 테러보험제도(이하 “GAREAT”라 함)를 도입했음.
- GAREAT는 강제보험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상업 및 공업물건(특히 화학공장 생화학공장, 방사선 및 핵시설 포함) 중 보험가액이 600만 유로 이상<sup>9)</sup>인 화재보험계약에 첨부하며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함.
  - 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자동차물적손해담보, 항공기기체보험(비영리 및 비상업적 용도로 가액 100만 유로 미만), 선박보험(바다, 호수, 내륙수로의 레저용으로 가액 100만 유로 미만)도 운영하고 있음.
- 담보하는 테러행위는 더티폭탄(다이나마이트에 방사성물질 혼합), 생화학폭탄(biological or chemical), 핵무기를 포함하지만 사이버 리스크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대규모물건에 대한 재보험분산체계는 연간한도(annual aggregate limit)를 기준으로 6단계 초과손해액 형태의 체계를 지니고 있음(소규모는 5단계로 운영).

- 1단계인 손해액 5억 유로까지는 GAREAT에 참여한 원보험회사가 공동인수 형태로 보유하며, 이를 초과하는 2단계와 5단계까지의 24.2억 유로까지는 풀과 로이드 등 국제재보험에게 초과손해액 방식으로 분산됨.
  - 24.2억 유로를 초과하는 6단계의 경우에는 국영재보험회사인 Caisse Central de Reassurance(CCR)이 무한대로 부담함.

9) 프랑스 테러보험제도는 보험금액 2,000만 유로를 초과한 계약을 대규모리스크(large risk)라 하고, 그 이하 계약을 중소규모리스크(small and medium size risk)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보험분산체계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재보험료는 원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5억 유로 미만까지 12%, 5억 유로초과 시 18%를 적용하고 핵시설인 경우에는 24%를 적용함.

〈표 4〉 프랑스 테러보험의 재보험 체계(2015)

재보험 분산체계(연간한도)			재보험료	
단계	손해액	인수보험사	보험금액	재보험요금
1단계	5억 유로 이하	폴 참여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	2억 유로 ~5억 유로미만	원보험료의 12%
2단계~5단계	5억 초과~24.2억 유로까지	GAREAT, 재보험사 (Lloyd's 등)	5억 유로 이상	18%
6단계	24.2억 유로 초과~무한	국영재보험(CCR)	핵시설물	24%

자료: Willis(2013), *Terrorism Insurance Review*, pp. 23~24 및 OECD(2015), France-Terrorism Insurance Program 참조하여 작성.

#### 다. 독일

- 독일 보험회사들은 911테러 이전까지는 상공업물건의 보험계약에서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테러리스크를 담보해 주었으나, 테러 이후에는 보험금액 2,500만 유로 이상인 상공업물건의 담보위험에서 테러리스크를 제외시켰으며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 추가보험료를 부담시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음.
- 보험업계와 연방재무성은 테러리스크의 보험담보에 대해 6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2년 9월에 새로운 손해보험공사인 Extremus AG를 설립하여 2002년 11월부터 임의보험으로 테러보험 풀을 시작하였음.
  - Extremus AG는 보험금액 2,500만 유로 이상인 상공업물건의 보험계약에서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며 인적손해와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됨.
    - 또한 계약당 또는 지역당 연간보상한도(maximum annual aggregate limit)는 15억 유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보상한도액은 100억 유로로 운영함.
  - 담보하는 테러리스크는 독일 내 영토에서 발생한 것에 제한되며 24시간 동안 발생한 테러는 동일한 사고로 간주하는 “24 hours occurrence clause”를 운영함.
    - 제외하는 위험은 쟁의, 전쟁 및 민란, 사회적 불안, 몰수, 핵, 생화학, 오염, 컴퓨터바이러스와 데이터손실, 항공 및 해상임.
- 재보험 체계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3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 손해액 1.5억 유로까지의 1단계는 회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1.5억 초과 2억 유로까지는 해외의 국제 재보험회사가 인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10억 유로까지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

장하는 유한담보체계(limited Coverage)임.

-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와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의 체계는 2015년 말까지 운영됨.<sup>10)</sup>

## 라. 영국

- 영국은 1993년부터 재물보험계약에서 테러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Pool Re를 신설하여 원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종 담보제공은 없음.
  - 테러보험은 임의 가입이며 재물보험계약(건물, 완성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 등)의 한 부분으로 담보하며 기업휴지손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적손해를 담보하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됨.
- 담보하는 테러리스크는 테러법(Acts of Terrorism 1993)에 따라 재무성 장관이 승인한 것에 한정하며 바이러스(해킹 등 유사한 행위)에 의한 컴퓨터시스템 손괴 등 사이버리스크는 면책이며, 생화학, 방사능, 핵오염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재보험 분산체계는 특별히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보험회사의 담보력에 따라 Pool Re에 출채하고, Pool Re의 준비금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재보험료는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데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0.03%, 높은 지역은 0.06%임.
    - 기업휴지보험은 지역별로 차등없이 0.021%로 동일하게 적용함.

## 4. 국내 테러보험 운영에 대한 시사점



- 국내의 테러리스크는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가 분석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러방지에 대한 국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10) Baird Webel(2014),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14.

- 또한 국내에는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 재물손해와 인적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의 테러보험은 911테러 이후 상공업물건에 대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전쟁 및 테러면책특약을 첨부하여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는 테러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러시아 항공기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의 연쇄적인 테러로 인해 정부는 2015년 11월 17일에 테러경보단계<sup>11)</sup>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 차례 입법논의되었던 대테러방지법<sup>12)</sup>의 제정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

- 대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주요내용이 되고 테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복구절차나 방법 등은 없는 상태임.

- 2014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대테러활동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및 재산피해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 복구비를 보조하고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sup>13)</sup>

- 이에 따라 테러리스크는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는 대책법에서도 보험제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테러가 발생한 경우 경제주체들은 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테러리스크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경우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테러보험제도는 국내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표 5 참조).

- 보험제도는 다른 정책보험과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규모 시설물이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험제도에서 담보하는 테러의 행위는 국가별로 보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에 부합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인 테러행위와 생화학, 방사능 등을 사용한 경우는 선택적 담보를 하고 사이버리스크의 제외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
- 정부의 재보험제공은 국내의 사고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평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과 지

11) 테러경보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등 4단계이며, ‘경계’ 단계에서는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강화 및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조치 등이 내려지고, ‘심각’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및 테러사건대책본부 운영 등이 이루어짐. 조선일보(2015. 11. 19), “IS 폭파위협 소동 코엑스 ‘테러 경보 못들었다’ 일상적 경비”.

12) 16대 국회 테러방지법과 2009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은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으며, 2014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소관위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음. 최근 2개 법안의 내용은 유사함.

13) 허영호(2014),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급여력에 큰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정부의 재보험담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거대손해인 원자력보험과 같은 기존 풀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kiwi**

〈표 5〉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체계 비교

국가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풀명	TRIP(2002)	GAREAT(2002)	Pool Re(1993)	Extremus AG(2002)
담보 테러	정부가 승인한 테러행위이며 생화학, 핵, 방사능(BCNR)은 선택적 담보	형법상 정의한 테러행위로 핵, 생화학도 포함	재무성이 승인한 테러행위이며, 생화학, 핵, 방사능 사용 테러는 부보가능하나 사이버리스크는 제외	생화학, 핵, 사이버 리스크 제외
가입 형태	임의보험	의무보험(1986), 소규모는 임의보험(보험금액 2,000만 유로 미만)	임의보험	임의보험
적용 보험	상업용 손해보험(commercial property&casualty), 산재보험, 개인보이지보험,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의료과실보험, 건강 및 생명보험, 풍수해보험, 재보험	선박, 항공, 운송보험(철로)을 제외한 모든 재산 및 기업휴지보험	재물보험계약(건물 및 완성 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 기업휴지보험	재물보험(material damage) 및 기업휴지보험
적용제외보험	상업용자동차, 도난강도보험, 전문인배상(임원배상 제외), 농장종합보험	인적손해(생명, 건강, 상해), 배상책임, 선박, 항공, 사이버보험, 도난	인적손해(생명, 건강보험), 선박, 항공, 운송보험, 자동차 제외	인적손해 및 배상책임보험 등
재보험 제공	100만 달러 초과손해에 대해 85% 제공(2020년 80%)	GAREAT: 24.2억 유로까지 CCR: 24.2억 유로 초과 무한담보제공	풀의 한도는 없으며 정부차입 가능	20억 초과 80억 유로까지 국가 제공
재검토일	2020. 12. 31	2018. 1. 1	영구존속	2015. 12. 31

주: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물건에 대한 재보험은 다른 한도로 운영.  
 자료: OECD,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mes by country*  
 (<http://www.oecd.org/finance/insurance/terrorism-risk-insurance-programmes.htm>).



#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 요약

- 판매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판매수수료에서 벗어난 독립자문업자의 보수체계 정비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독립자문업자(IFA)가 오랫동안 활성화된 영국은 이 같은 개선 노력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로 손꼽힘.
- 영국은 2012년 12월부터 판매채널 개혁 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을 단행, 독립자문업자의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자문수수료만 수취하도록 조치함.
  - RDR 시행 이후 은행 소속 투자자문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자문업자의 수는 1만 명 이상 감소했음.
  - 은행 중심의 자문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중산층과 부유층간 “자문서비스 갭”(Advice Gap)이 늘어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됨.
  - 반면에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랫폼 관련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수수료 개혁의 전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RDR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평가는 좀 더 시일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투자금액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문업자들은 투자금액별 고객 세분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가의 유료 자문서비스를 대체하는 인터넷상의 비자문 채널인 D2C(Direct to Customer, 이하 D2C) 플랫폼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권별 영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기존 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단순자문부터 독립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단순 자문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D2C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

##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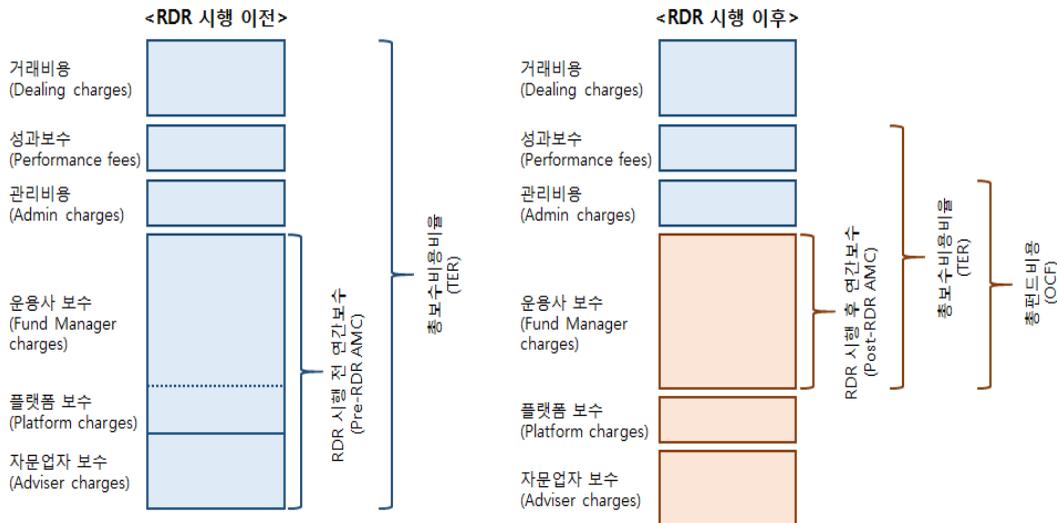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대부분 판매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고객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보험·은행·증권 등 전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독립자문업자(IFA)가 오랫동안 활성화되었지만, 판매수수료 중심의 영업 관행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확산되면서 2013년 이후 판매와 자문수수료를 분리하고자 하는 판매채널 개혁 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을 단행함.
  - 영국의 감독당국은 판매행위와 자문행위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IFA가 제조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보수체계가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함.
  - 금융자문업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여 전반적인 자문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도 작용했음.
- 국내에서도 최근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판매와 자문의 개념 정의 및 역할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금융상품자문업의 도입 방식 및 범위에 따라 기존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시장 상황 판단과 신중한 도입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업 시장 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RDR 연혁 및 주요 내용



- 영국은 개인연금, 모기지 양로상품 등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제도 개편, 채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판매채널 개혁 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 자문업자는 금융상품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commission)도 받을 수 없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fee) 수취만 가능함.
    - 독립자문업자의 수수료 수취 금지는 연금 펀드 등 생명보험 및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되며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외 적용을 받음.
    - RDR 시행 이전에는 펀드 수수료의 경우 운용사 보수, 플랫폼 보수, 자문서비스 보수가 연간보수로 한꺼번에 책정되어 일부는 리베이트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발생해 RDR 이후에는 서비스 주체별로 수수료가 분할 지급되며 교차 지원이 금지됨(<그림 1> 참조).

<그림 1> RDR 시행전후 펀드 비용구조 변화



자료: Dewhurst Torevell(2013), *Understanding fund charges post-RDR: AMC, TER, OCF and the effect of dealing costs*,

- 자문서비스 형태를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과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으로 구분하였으며, 제공하는 자문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함.

-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의 상품을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서비스 형태임.
- 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소 전문 자격요건의 상향과 더불어 매년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전문기관 발행 자격 유지 및 새로 도입된 윤리강령 준수가 요구됨.
  - 모든 자문업자에 대한 최저 자격요건이 QCF(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레벨 3에서 QCF 레벨 4로 상향 조정됨.
  - 그 외에 매년 전문가 교육과정(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3. RDR 시행 이후 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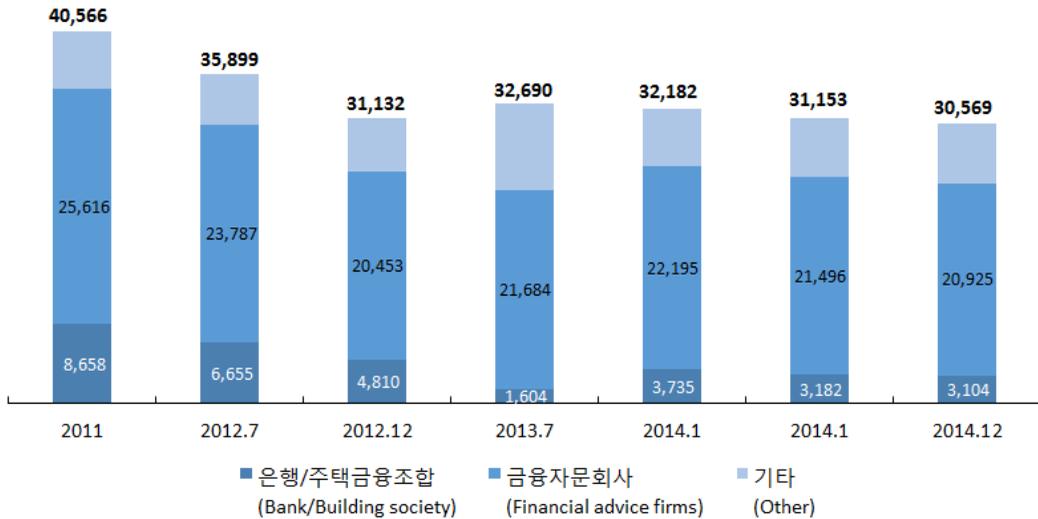
- RDR 시행 이후 영국에서 전체 자문업자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은행 소속 투자자문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sup>1)</sup>
  - 유럽 이코노믹스의 「RDR 실행 리뷰」에 따르면 영국의 자문업자 숫자는 2011년 4만 500명에서 2014년 3만 1,150명 수준으로 감소했음(〈그림 2〉 참조).
  - 감소 인원의 58% 가량은 소매 고객 대상 은행들의 대량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소속 자문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남.<sup>2)</sup>
    - 바클레이 은행은 점포 영업 중심에서 온라인 영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도모함.
    - 로이드 은행은 자문서비스 제공 대상을 투자자산 10만 파운드 이상(한화로 약 1억 7,000만 원)으로 제한함.
  -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독립자문업자 숫자가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영국 시장의 특수성도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연금 개혁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해 퇴직연금상품이나 개인

1) Europe Economics(2014), “Retail Distribution Review Post Implementation Review”, p. 55.

2) 영국 은행들의 경우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하 PPI) 불완전판매 스캔들 이후 전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대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연금상품 또는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퇴직연금 자문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임.<sup>3)</sup>

〈그림 2〉 자문회사 유형별 자문업자 수 변화 추이(2011~2014)



주: 기타(Other)에는 증권중개인(Stockbrokers), 투자일임업자(Discretionary), 투자관리회사(Investment Managers) 등을 포함.

자료: RS Consulting(2011); FCA(2012 onwards); Europe Economics(2014) 재인용.

■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채널 이용 패턴에 변화가 일면서 자문수수료 지급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자문서비스 시장 이탈이 감지되고 있음.

● NMG가 소비자 4,0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RDR 시행 이전 자문서비스를 받은 고객(advised only) 606명 가운데 84명(14%)은 자문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객군(non-advised only)으로 돌아섰음.<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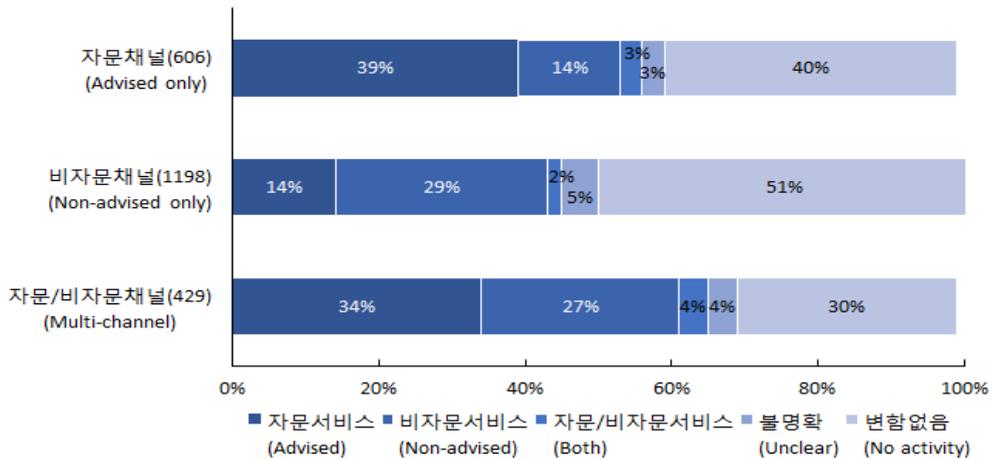
- RDR 시행 이전 자문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객(non-advised only) 1,198명 가운데 167명(14%)은 자문서비스를 받는 고객군(advised only)으로 돌아섰음.

- 이같이 신규 자문서비스 진입은 자발적인 자문서비스 수요 이외에도 정부의 연금개혁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3) 김세중(2015), 「영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4) NMG가 소비자 4,0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RDR 시행 이전 응답자의 29%는 투자시 자문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반해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자문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음.

(그림 3) RDR 시행(2013년 1월) 이후 채널 이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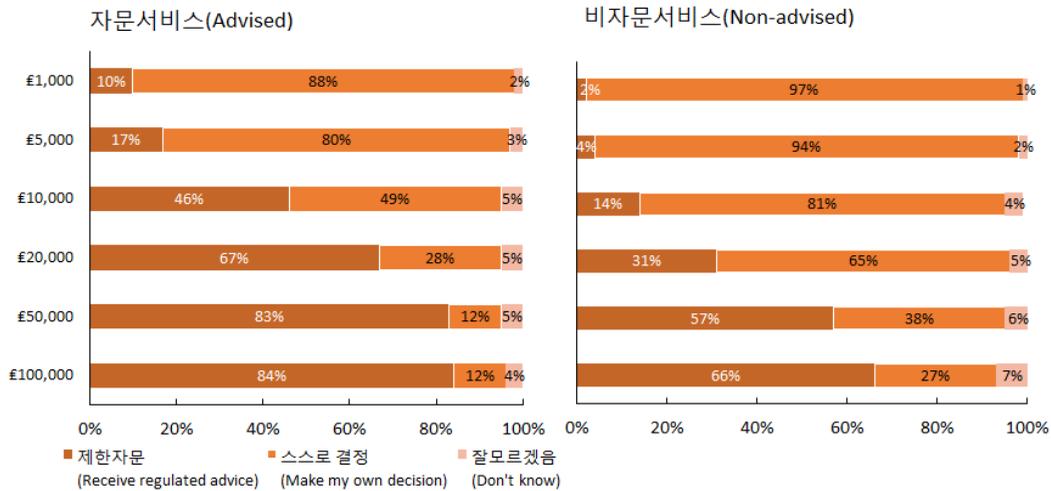


주: RDR 시행(2013년 1월) 이전에 가입한 투자형 상품을 보유하고 이용채널을 알고 있는 응답자 대상.  
 자료: NMG Consulting(2014), *Impact of the Retail Distribution Review on consumer interaction with the retail investments market*, p. 37.

## 4. 자문시장 추이 및 전망

- 소비자 수요 분석 결과 투자금액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문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별 고객 세분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됨.
- 투자금액별로 살펴보면 투자금액이 5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다른 채널 보다 IFA 채널을 사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자문서비스 이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투자금액이 5만 파운드 (약 8,863만 원 가량)일 경우에는 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고객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으로 증가했음.
  - 2만 파운드(약 3,545만 원 가량)를 넘어설 경우 절반 이상인 67%가 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음.
  - 반면에 투자금액 5,000파운드(886만 원 가량) 이하 고객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자문서비스 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음.

〈그림 4〉 향후 투자 시 이용 의향이 있는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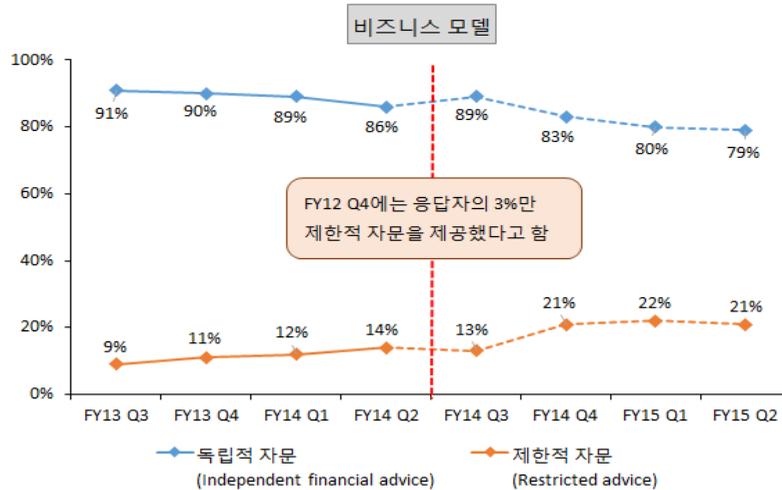
주: 가장 최근 투자활동을 끝냈을 때 제한자문을 받은 응답자 대상(730명 비가중).

주: 제한자문 없이 가장 최근 투자활동을 끝낸 응답자 대상(810명 비가중).

자료: NMG Consulting(2014), *Impact of the Retail Distribution Review on consumer interaction with the retail investments market*, p.38

- RDR 개혁 이후 독립자문서비스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문업자들이 제한자문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이 다변화하면서 단순자문, 제한자문, 독립자문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 NMG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자신의 자문서비스 성격을 “제한자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9%에 불과했으나 RDR 시행 후 2015년 2분기에는 이 같은 응답자 비중이 21%로 늘었음.
  - 독립자문서비스의 비중은 2013년 3분기 91%에서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 2분기 현재 79%를 차지했음.
  -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완화하고 이를 가격 인하를 통해 이탈하는 소비자층을 흡수하기 위해 제한자문서비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자문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주: 1) 설문대상은 모든 응답자.

2) 질문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자료: NMG Consulting(2014), *Financial Adviser Census Business Trends Report*, p. 5.

- 자문서비스 수수료 지급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유료 자문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비자문 채널 시장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D2C(Direct to Customer) 플랫폼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음.
- 고객 세분화와 관련한 딜로이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 IFA, 인터넷 플랫폼 세 가지 채널을 기준으로 채널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중 계층(Mass Market)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사용 비중이 크게 늘었음.
  - 5000~1만 파운드 사이 대중 계층(Mass Market)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용 성향이 평균보다 높음.<sup>5)</sup>

5) 반면에 10만 파운드 이상의 부유층(Affluent Market)의 32% 가량이 IFA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밝혔음.

〈표 1〉 딜로이트의 고객세분화에 따른 채널선택 분석(2012)

고객층/현금보유액		은행	독립자문업자(IFA)	웹사이트/인터넷 플랫폼
부유층 (Affluent)	10만 파운드 이상	23%	32%	14%
	5만~10만 파운드	21%	26%	22%
대중 부유층 (Mass affluent)	3만~5만 파운드	21%	19%	24%
	1만~3만 파운드	28%	18%	15%
대중 계층 (Mass market)	5,000~1만 파운드	12%	10%	14%
	5,000 파운드 이하	15%	11%	10%
평균		17%	13%	11%

자료: Deloitte(2012).

■ 이 같은 D2C 플랫폼은 고객 원격지원 서비스나 독립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고용시장의 변화를 가져옴.

-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네트워크 소속의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이하 AR)<sup>6)</sup>이 늘어나고 있음.
  - AR은 자문서비스 관련 규제 준수 비용이 확대되면서 직접 인가를 받는 사업자로 활동하기보다는 인가사업자를 위해 자문 행위를 하지만 규제 준수 의무는 피해 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선호하는 자문업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임.
  - 유럽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소속 AR의 증가는 독립자문업 인가사업자로 활동하는데 따른 운용비용을 줄이면서도 직관 조직에 소속되기보다는 독립적인 활동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자 하는 자문업자들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D2C 플랫폼의 성장 배경에는 독립채널의 성장으로 보험회사(provider)가 채널 지원 업무를 줄이면서 인터넷 플랫폼들이 대신해서 교육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고객과의 접점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따른 결과임.

6)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이란 인가를 받은 기업과 선임대리인 사이에 선임대리인이 해당기업의 규제대상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선임대리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책임을 서면으로 인수한 경우, 선임대리인에 대해서는 인가의무가 면제됨(FSMA 39조 1항).

## 5. 시사점



- 자문업자의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영국의 RDR 시행 후 시장 변화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최종적인 평가는 자문수수료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좀 더 시일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랫폼 관련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수수료 측면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기존 자문업자들은 부유층 대상 서비스에 주력하는 한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 자문서비스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산층과 부유층간 자문서비스 갭이 늘어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됨.
  
- 국내에서도 최근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소법)」 등에서 ‘금융자문업’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법률 통과가 미뤄져 답보상태에 있음.
    - 기존 금소법 안에서는 보험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투자성 상품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고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기존 법안에 따르면 신규업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문의 독립·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 관계가 있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도록 함.
  
- 영국의 RDR 시행에 따른 시장의 효과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업권별 법률이 상이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개별 업권별 영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기존 판매채널과 금융상품자문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내방형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은행 및 증권 상품과는 달리 아웃바운드 형태의 푸시 마케팅을 기본 영업 전략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업권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수차례의 상담을 통한 설득 과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실상 동태적·포괄적 조언 행위가 보험 상담에 포함되어 있음.

---

■ 자문서비스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단순 자문서비스부터 독립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영국의 예와 같이 단순 자문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D2C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문수수료 정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자문서비스가 오히려 시장에서 후퇴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도 병행되어야 함. [kiri](#)

### 3. 고령화

- |                                       |         |
|---------------------------------------|---------|
| 1.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 전성주 류건식 |
| 2.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 강성호 류건식 |
| 3.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 최창희     |
| 4. 건강생활관리를 위한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시사점 | 오승연 김미화 |
| 5.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 류건식 김동경 |
| 6.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 강성호     |





# 미국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 도입 동향과 시사점

전성주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최근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자동 가입시키는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일리노이 주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개인퇴직계좌(Roth IRA)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곤 주를 비롯한 17개 주 정부도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부족한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일리노이 주 법안은 2017년부터 2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Roth IRA계좌에 연봉의 3%를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ERISA 법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장들이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 IRA계좌는 해지(Opt-out)가 가능하며 3%의 적립비율과 운용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캘리포니아 주도 현재 투자 이사회와 기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법안 도입을 위한 시장 분석과 예비 조사를 수행함.
-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 법제화는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데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기업주가 스폰서를 제공하는 401(k) 플랜의 경우 가입절차를 가입 동의에서 일괄 자동가입으로 전환한 후 근로자의 참여율이 평균 57%에서 86%로 급격히 상승함.
  - 자동가입은 근로자가 최적의 저축결정을 이루는 행위를 방지하고 가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주며 가입에 따른 득실을 용이하게 인식하고 참여를 기본으로 인식하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이 허용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보장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이후 기존 근로기간에 적합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 1. 검토 배경



- 2015년 1월 일리노이 주지사 팻 퀸(Pat Quinn)은 미국의 주 정부 최초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자동 가입시키는 프로그램을 입법화함.
  - “Illinois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7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퇴직연금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개인퇴직계좌(Roth IRA)를 설정하여 연봉의 3%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계좌는 강제 가입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해지할 수 있음.
    - 2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사업주가 별도로 기여하는 부분은 없음.
  
- 일리노이 주의 자동가입 프로그램 입법화는 오리곤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고려하고 있는 17개 주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sup>1)</sup>
  -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2년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Trust Act”를 입법화하여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오리곤 주 또한 2013년 7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태스크 포스를 발족시킴.
  - 이외에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등 많은 주 정부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개인퇴직계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미국의 주별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도입 현황 및 배경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Time(2015), “Why Illinois May Become a National Model for Retirement Saving”.

## 2. 도입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부족한 은퇴준비 문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은퇴준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0년 현재 55~64세 사이 근로자 가구의 중위 퇴직계좌 저축액은 12만 달러에 불과하며 45~54세 사이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2)</sup>
  -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85%가 퇴직연금플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49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퇴직연금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5%에 그침.
  
-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입법화한 일리노이 주의 경우 은퇴자의 3분의 1 이상이 소득의 90% 이상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sup>3)</sup>
  - 일리노이 근로자들의 연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15,228달러(월평균 1,269달러)임.
  -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절반에 달하는 250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플랜을 보유하지 않아 이들의 중위 퇴직계좌 저축액은 겨우 3,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캘리포니아는 630만 명에 달하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퇴직연금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퇴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sup>4)</sup>
  - 약 3,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는 저소득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퇴직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 비율이 높은 수준임.
    -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26,000달러로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중위소득 절반에 해당
    - 연소득 상위 4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68.5%가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22.1%만이 연금플랜을 가지고 있음.
  - 25~64세 근로자 가운데 개인퇴직계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998년과 2000년 사이 50%에서 2008년과 2010년 사이 45%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2) Munnell, A.H.(2012), "401(k) Plans in 2010: An Update from the SCF",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3) Illinois Asset Building Group(2014), "Secure Choice Fact Sheet: Fall 2014".

4) Sprague, A.(2013), "The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Program : An Innovative Response to the Coming Retirement Security".

■ 따라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부족한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리노이 주 등은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에 이룸.

- 이는 연금 자산 축적에 있어 개인의 자율적인 최적 저축결정(Optimal Saving Decision)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직장내 퇴직연금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myRA라는 개인퇴직계좌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하고 자동가입 프로그램 입법화를 추진함.
  - myRA계좌는 소득제한(싱글 12만 9,000달러, 부부 19만 1,000달러)이 있으며 일년에 5,500달러, 총 1만 5,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변동금리 국채 중심으로 운영됨.<sup>5)</sup>
  -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myRA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후 myRA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임.

### 3. 도입 현황



#### 가. 일리노이 주: Illinois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 Act

■ 2015년 발효된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법안(Illinois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 Act)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 Roth IRA계좌에 연봉의 3%를 적립하도록 규정함.<sup>6)</sup>

- 저소득 근로자들이 계좌를 통해 세후 소득을 적립하여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59.5세 이후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리노이 주민의 연평균 가구소득인 55,137달러를 기준으로 근로 초기부터 연봉의 3%를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은퇴 후 약 21만 달러를 적립할 수 있음.<sup>7)</sup>
- 강제 가입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은 개인퇴직계좌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연봉의 3%로 설정된 적립비율과 적립금의 운용 포트폴리오를 자율적으로 변경가능
- 근로자가 직장을 이전할 때에도 계좌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

5) myRA계좌 잔고는 최장 30년 동안 US 1만 5,0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기간 혹은 잔액이 한도를 넘게 되면 민간부문의 Roth IRA로 이전됨.

6) Illinois Asset Building Group(2014), "Secure Choice FAQ".

7) 26세부터 67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를 상정함.

우에도 한 계좌를 통해 적립하는 것이 가능함.

- 2017년부터 2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2년 이상 된 사업장이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동가입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함.<sup>8)</sup>
  -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에 참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개인퇴직계좌에 자동 가입된 후 9개월 내에 해지(Opt-out)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연봉 가운데 근로자가 지정한 비율 만큼 공제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도록 함.
  - 영세사업자들로 하여금 ERISA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여금을 분담하지 않도록 규정함.
- 적립된 기금은 주정부 재무책임자(Treasurer), 재무감독관(Comptroller), 예산집행관과 두 명의 투자전문가,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관장됨.
  - 운영비용과 투자비용은 총 자산의 0.75% 이내로 제한되며 주정부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 이사회는 기금 운용회사로부터 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투자방침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보고 받으며 4년마다 기금 운용수익률, 비용, 고객센터 서비스 등을 검토하여 각 기금 운용회사의 성과를 평가함.

#### 나. 캘리포니아 주: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Trust Act

-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도입 법안(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Trust Act)에 따르면 적립한도는 근로자 연봉의 3%임.
  -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가 최초 설정된 후 90일 이내에 해지(Opt-out)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적립금을 인출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음.
    - 매 2년마다 사업주는 이전에 개인퇴직계좌 설정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개인퇴직계좌를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적립을 정지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계좌가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정되므로 직장 이전 시에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함.
  - 일리노이 주처럼 사업주에 대한 ERISA 법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주 부담금은 현재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ERISA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기금 투자위원회에 의해 사업주 부담금 지정이 가능함.

8) 이미 퇴직연금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참여 불가함.

- 현재 주정부는 투자 이사회(Investment Board)와 기금 위원회(Retirement Savings Trust)를 구성하고 개인 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 시장 분석과 예비 조사를 수행함.<sup>9)</sup>
  - 이사회는 주지사과 주 상원위원회, 주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9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기금의 투자 집행을 수행할 주체는 입찰을 거쳐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투자 매니저로 정해질 계획임.
  -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프로그램을 통해 적립될 기여금은 퇴직저축기금을 통해 통합 운영되므로 투자 위험에 대한 풀링(Pooling)이 가능하며 전문 투자자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존 IRA나 401(k) 플랜에 비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특히,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될 적립금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 운영자는 민간 보험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정 부분 보장된 수익률을 제공할 예정임.
  - 법안에서 기금의 예정 수익률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체 자산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예정 수익률은 투자위원회에 의해 매년 결정될 예정이며 기금 운영자는 미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임.
    - Stubbs and Rhee(2012)는 기금 자산을 주식과 채권에 동일하게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5%의 실질 수익률을,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수익률 보장 비용을 고려할 때 2~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sup>10)</sup>

#### 다. 기타 주정부

- 현재 개인퇴직계좌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오리곤, 버몬트 등임.
  - 코네티컷 주는 40만 달러를 설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행할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매사추세츠 주는 비영리단체 근로자들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주정부 재무책임자가 스폰서하는 법을 제정함.
  - 메릴랜드, 오리곤, 버몬트 주 등도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여 자동가입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행할 예정임.

9) Pension Rights(2014), "State-based retirement plans for the private sector."

10) D.M. Stubbs and N. Rhee(2012), "Can a publicly sponsored retirement plan for private sector workers guarantee benefits at no risk to the state?", U.C. Berkeley Center for Labor Research and Education,

- 이외에 애리조나, 콜로라도, 인디애나, 메인,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에서도 자동 가입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적극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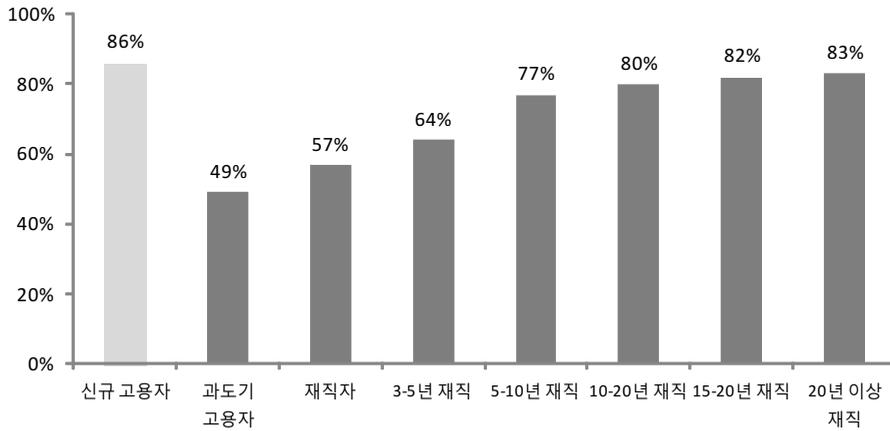
## 4. 도입 효과

-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자동가입 프로그램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데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기업주가 스폰서를 제공하는 401(k) 퇴직연금 플랜의 경우 가입 절차를 가입 동의에서 일괄 자동 가입으로 전환한 후 근로자 참여율이 크게 상승함.<sup>11)</sup>
    - 제도 변경 전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평균 57%에 불과하였으나, 제도 변경 후 고용된 근로자들의 참여율은 86%로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 초래<sup>12)</sup>
    - 제도 변경 후 고용된 근로자의 약 76%가 기여율 3%로 유지하였으며 자산 배분 또한 평균 86.5%를 머니 마켓 펀드에 투자하는 등 최초 설정된 적립금 설정 및 운용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았음.
-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은 근로자들이 최적의 저축 결정(Optimal Saving Decision)을 미루는 행위(Procrastination)를 방지하고, 401(k) 플랜에 가입하는 데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주는 장점이 존재함.
  - 또한 자동 가입으로 인해 가입에 따른 득실을 용이하게 인식하고(Endowment effect), 비참여(Nonparticipation)가 아닌 참여(Participation)를 기본으로 인식하게 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가 나타남.

11) B.C. Madrian and D.F. Shea(2001),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6, pp. 1149~1187.

12) 401(k) 플랜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지 가능함.

〈그림 1〉 재직기간(Tenure)에 따른 401(k) 플랜 가입률 비교



주: 과도기 고용자는 제도 변경 1년 전부터 제도 변경 시점까지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재직자는 제도 변경 1년 전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신규 고용자는 제도 변경 후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Madrian and Shea(2001).

- 또한 자동 가입 프로그램은 국가의 세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개인퇴직계좌 적립액을 크게 증가시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기여함.
  - Harris and Johnson(2012)은 자동가입 프로그램이 전국에 도입될 경우 조세수입이 38~658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중간수준의 추정치인 282억 달러는 연방정부세수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sup>13)</sup>
  - 반면에 자동 가입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납세자는 IRA 기여금을 매년 1,280달러에서 1,623달러를 더 납입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도 매년 약 1,000달러를 더 납입할 것으로 추정함.
  
- 개인퇴직계좌의 자동가입은 근로자들에게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효과를 주어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통한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함.

13) B.H. Harris and R.M. Johnson(2012), "Economic Effects of Automatic Enrollment i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 5. 정책적 시사점



- 이번 조치를 통해 퇴직연금의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미국에서도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많은 주 정부들이 개인퇴직계좌 가입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영세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가입을 주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임.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이 허용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보장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이후 기존 근로기간에 적용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자동 가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기 전 중간 정산된 퇴직금의 주 사용처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많이 활용되었음.<sup>14)</sup>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근로기간에 적용한 퇴직금에 대해 IRP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14) 류건식·이상우(2010),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CEO Report, 보험연구원.



#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요약

- 급격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노후 난민'이 향후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후 난민은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노인 빈곤 문제와 차별화됨.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함.
  -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함.
  -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 배경



- 평균수명 증가로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호모 헉드레드(Homo-Hundred) 사회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199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없었으나 2000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6개국(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 이후에는 25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sup>1)</sup>
  - 우리나라도 0세 기준 기대여명이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3세로 증가하는 등 지난 43년 동안 연간 약 0.45세씩 늘어나 급격한 장수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100세를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화를 단순히 재무적 척도인 ‘노후 빈곤’에 그치지 않고 ‘노후 난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노후 난민화의 정의와 일본에서 제기되는 노후 난민의 발생 원인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노후 난민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노후 난민화 개념 및 발생 원인



- 노후 난민화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醫·食·住)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일상생활에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총칭함.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 =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서도 노후 난민이 발생할

1) OECD Factbook 2014.

수 있음.

- 2010년 일본에서 노인들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상당히 증가하여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 및 장수화가 상대적으로 늦음에 비해 복지수준이 강화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일본은 단카이(團塊) 세대 퇴직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증가, 무연사회(無縁社會)의 도래,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 및 효(孝)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1947~1949년 사이 출생한(806만 명) 단카이 세대(2012년 기준 566만 명)는 2012~2014년 사이에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일본 단카이 세대의 규모 및 비중

구분	출생	규모(비중)
내용	1947~1949년생(3년간 출생자)	806만 명 출생, 2012년 10월 566만 명 (총인구의 4.4%)

자료: 厚生労働省(2013), 人口動態通計(<http://www.e-stat.go.jp>).

- 또한 기존 고령자의 장수화로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재무적 차원의 노후 빈곤 문제를 넘어 새로운 고령사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05년에 일본은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55년에는 40.5%가 될 것임.
  - 후기고령자로 일컬어지는 75세 이상 만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됨.

〈표 2〉 일본의 65세 및 7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고령화율

(단위: 천 명, %)

연도	총인구	65~74세	75세 이상	고령화율1)
2005	127,768	14,122(11.1)	11,639( 9.1)	20.2
2020	122,735	17,162(14.0)	18,737(15.3)	29.3
2030	115,224	14,011(12.2)	22,659(19.7)	31.9
2045	110,443	15,937(15.9)	22,471(22.4)	38.3
2055	89,930	12,597(15.9)	23,866(22.4)	40.5

주: 1)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 100 2) ( )안은 총인구 대비 비율.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フィデリティ退職・投資教育研究所.

-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각부(2010)<sup>2)</sup>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주일에 거의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이 31.6%, 자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18.1%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sup>3)</sup>
  -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하루 중 85%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

〈표 3〉 일본의 고령자 독신세대 구성비율

(단위: %)

연도	1989	1995	2001	2007	2013
독신세대	14.8	17.3	19.4	22.5	25.6

주: 세대 구조별로 본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세대수의 구성 비율의 연차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平成25年 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2013)을 재구성함.

- 결국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증가 등은 노인 빈곤율(2011년 일본 21%) 및 독신세대의 증가로 이어져 일본은 노후 난민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는 2020년 이후부터 노후 난민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판단됨.

### 3. 노후 난민 시대 도래 가능성 검토<sup>4)</sup>



- 노후 난민화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재무적 요인), 사회적 단절에 따른 노인 생활 문제 (비재무적 요인)와의 결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점을 감안해 노후 난민 시대 가능성을 검토함.
  - 따라서 재무적 관점에서는 ‘노인 빈곤’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 고령화, 빈곤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재무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단절’의 대표적 형태인 부모부양 의식 약화, 독거노인 수 증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일본 내각부(2010), 平成22年度 第7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結果.  
 3) 일본 내각부(2010)에서는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5개국에 대해 교류관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국 중에서 일본이 이웃 및 자녀와의 접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4) 노후 난민은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가. 재무적 관점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베이비부머 14.1%)로 고령화사회에 있으나, 2017년에 고령사회(14.3%)가 된 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임.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기간이 9년 정도로 일본 12년, 독일 40년, 영국 45년 등에 비해 매우 짧음.
- 특히 2014년 현재 65~79세는 10.1%, 80세 이상은 2.6%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4.5%p, 1.8%p 상승하고, 2034년에는 각각 11.1%p, 3.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표 4〉참조).

〈표 4〉 베이비부머 및 고령자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1994		2004		2014		2024		2034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베이비부머 <sup>1)</sup>	7,430	16.6	7,257	15.1	7,112	14.1	6,881	13.3	6,206	11.9
고령자	2,542	5.7	4,166	8.7	6,386	12.7	9,834	19.0	14,325	27.6
65~79세	2,178	4.9	3,530	7.3	5,070	10.1	7,570	14.6	11,022	21.2
80세 이상	365	0.8	636	1.3	1,316	2.6	2,264	4.4	3,303	6.4

주: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임.  
 자료: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 이런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임.
- 반면에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07년 15.1%, 2010년 12.8%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sup>5)</sup>

5)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표 5〉 고령세대의 상대적 빈곤율<sup>1)</sup>

(단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령인구(65세 이상)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주: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문제는 노인가구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sup>6)</sup>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음.
  - 실제 가구주 연령이 50~65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2011년 노후소득보장 패널 조사), 고소득층에서 2.4%, 중산층에서 25.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노인의료비 증가 등에 기인함.
  - 2012년 기준으로 평균 정년규정이 57.6세이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주된 일자리 퇴직은 이보다 3~4세가 빠른 53세에 이루어짐.<sup>7)</sup>
    -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0.7% 수준(55~59세에 비해서는 76.5% 수준)에 불과함.
  - 국민연금제도(1988년 도입)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2014년 현재 61세 이상)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4년 말 기준 월 33만 원(특례노령연금 제외)에 불과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최고 20만 원이며, 노인의 70%만 대상이어서 공적소득 보장기능이 매우 낮음.
  - 또한 장수화 과정에서 유병기간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그나마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노후가 더욱 궁핍해 질 우려가 있음.
    - 장수화 과정(60→80세)에서 기대여명 대비 유병기간인 유병율은 증가하고(〈표 6〉 참조)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sup>8)</sup>는 매우 높음.

6) '김미곤(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이슈엔 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동하거나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비중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0.6%는 고소득층에서, 13.1%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36.2%는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강성호 외(2013),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KiRi Weekly.

- 한편, 의료문제뿐 아니라 자녀결혼 등<sup>9)</sup>으로 인해 퇴직 직전인 50대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자산보유액은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1> 참조).

〈표 6〉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2) (단위: 년, %)					〈그림 1〉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연령	기대여명1) (A)	건강 기대여명2)	유병기간 (B)	유병율 (B/A×100)		
60세	24.3	13.0	11.3	46.5		
70세	16.0	7.5	8.5	53.1		
80세	9.2	4.3	4.9	53.3		

주: 1) 기대여명: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	
2) 건강기대여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자료: 통계청(2012), 생명표.	

연령대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기타실물자산	총액 (만원)
30세 미만						8,788
30~39세						23,115
40~49세						33,072
50~59세						43,025
60세 이상						33,660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 나. 비재무적 관점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은 심화되는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매우 약해서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실정임.

● 노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책임이 자녀에서 정부·사회나 자신에게 전가되는 등 부양의식이 약해지는 추세임.

- 통계청 사회조사결과(2002년~2014년)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70.7%(2002)→40.7%(2008)→33.2%(2012)→31.7%(2014)로 급속히 감소함.
- 반면 ‘정부·사회의 책임’은 1.3%(2002)→3.8%(2008)→4.2%(2012)→4.4%(2014)로, ‘부모 스스로 해결’은 9.6%(2002)→11.9%(2008)→13.9%(2012)→16.6%(2014)로 증가함.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연평균 개인지출 의료비가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91만 원으로 65세 미만의 약 39만 원에 비해 약 2.3배임.

9) ‘금재호·송영남·전영준·김병덕·이윤경(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전체가구에 비해 베이비부머 부채증가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자녀 결혼자금(13.1%), 의료비(12.2%)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과 유사하게 독거노인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소외로 인한 노인 자살률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5년 사이에 1.9%p 상승하여 연간 0.4%p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이에 비례하여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34.29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10년 동안 2.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노인 수 (A)	5,016	5,193	5,452	5,656	5,890	6,138
65세 이상 1인가구(B)	931	976	1,056	1,124	1,187	1,25
비율(B/A)	18.5	18.8	19.3	19.8	20.2	20.4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 인구·가구자료」.

〈표 8〉 노인 자살률 변화 추이

(단위: 인구 십만 명당 명)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노인 자살률	34.29	40.61	53.63	69.55	76.55	77.89	69.82	73.61	71.72	78.8	81.9

주: 노인 자살률=노인인구 십만 명 당 자살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다. 종합적 관점

■ 재무적 및 비재무적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후 난민 시대의 도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표 9〉 참조).

-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낮은 공적연금<sup>10)</sup> 비중과 조기퇴직<sup>11)</sup>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노인 빈곤율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비재무적 측면에서도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10)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연금소득증대가 기대 되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8년까지 40%로 감소) 연금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10년 미만 가입에 따른 미수급자(연금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11)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노동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된다는 점에서 정년과 국민연금수급개시 간에 5년의 격차가 발생함.

■ 게다가 일본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인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노후 난민 도래 속도도 빠르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할 것으로 평가됨.

- 즉,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다소 높으나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의무 정년연령은 5세정도 낮으며, 노인 빈곤율은 이미 일본의 2배 이상임.
- 또한, 비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4%로 일본에 비해 양호하나,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 수준이어서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 일본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단카이 세대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다가올 노후 난민의 도래 속도와 강도는 일본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 단지 고령화율이 현재 일본보다 낮고 아직 30%(65세 이상 기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후 난민의 진입 조건을 거의 갖춘 상태임.

〈표 9〉 한·일의 노후 난민 발생 요인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재무	중위소득 기준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sup>12)</sup>	43.9%(2012) ※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률 35.8%(2010) <sup>13)</sup>	37.5%(2012) ※ 개인단위로 기초연금을 의무가입하므로 단카이 세대의 미가입률은 낮을 것임(현재 모두 수급연령임)
	조기퇴직 및 정년	현실적으로 53세부터, 2016년 이후 60세 정년의무	1994년 60세 정년의무화, 2013년 4월부터 65세로 연장
	노후 빈곤율	44.6%(2007), 47.0%(2009), 48.6%(2011)	21%(2011)
비재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20.4%(2013)	25.6%(2013)
	인구 10만 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	81.8명(2010) <sup>14)</sup>	17.9명(2010)
기타	고령화율	12.7%(2014), 32.3%(2040)	23.1%(2010), 38.3%(2045)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기간	8년(2018년→2026)	12년(1994년→2006)
	베이비부머 수	베이비부머 713만 명 (총 인구의 14.6%)	단카이 세대 약 566만 명(총인구의 4.4%)

주: 음영은 한·일간 노후 난민화를 촉진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12)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은 각 국가별 공적연금 체계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약 40년으로 하여 미래의 소득 대체율을 산출함. 현 근로세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있음.

13)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90%EC%82%B4](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90%EC%82%B4)

## 4. 정책과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와 같이 ‘노후 난민’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고령화가 심화되기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노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 노후 난민의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대처가 중요함.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교류와 기회와 건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안심 협력원(あんしん 協力員)”, “지역의 다방(地域の茶の間)” 등 서클 운영을 통해 노인들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적보장 시스템은 고령화와 저성장의 틀에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령화 위험에 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는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됨. [KiRI](#)



##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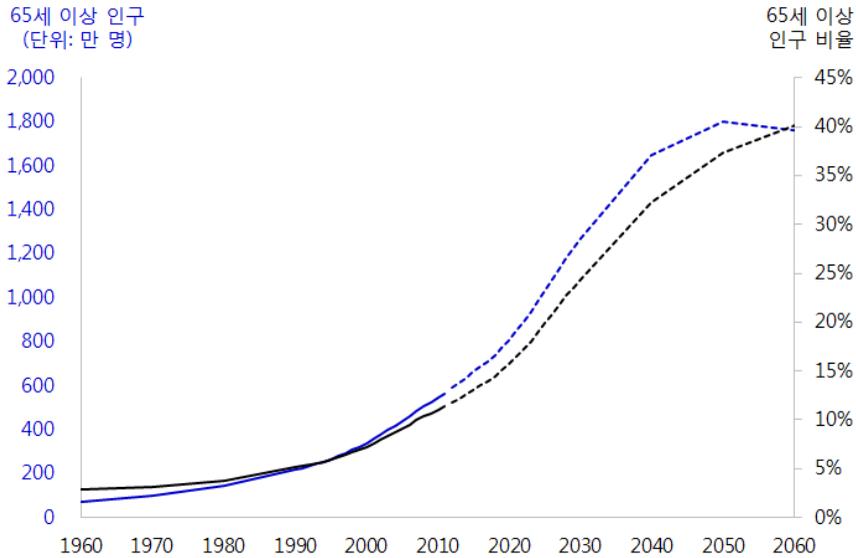
### 요약

- 최근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수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고령자 수는 연평균 4.3% 증가, 고령운전자 수는 연평균 13.2% 증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연평균 14.3% 증가
  - 동기 비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0.9% 감소
  - 동기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0.056명으로 비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인 0.025명의 2.2배 수준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확률이 높음.
- 고령화는 운전자의 시력(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조절 능력, 시야),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을 감퇴시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킴.
- 외국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을 고려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 실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실시, 고령운전자를 위한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 각주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용,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 소견서와 도로주행 시험 요구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함.
  - 일본은 미국과 같이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고령운전자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예비(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했음.
  -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2년으로 하고 2단계 갱신과정(1단계 의사 진단, 2단계 도로주행 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관리함.
-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 배경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변화 추계



주: 가로축(연도), 청색(65세 이상 인구 추계), 흑색(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1년 이후(점선)는 추정치.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빠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운전자<sup>1)</sup>에 의한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고령자 수는 연평균 4.3% 증가했음(〈그림 1〉 참조).
  - 2011년 현재 11.36%(556만 명)인 고령자 비율은 2026년에는 20%(1,084만 명), 2040년에는 32%(1,650만 명), 2060년에는 40%(1,7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 수 증가에 비해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sup>2)</sup>
  - 고령운전자 수는 2004년 61만 명, 2013년 187만 명으로 연평균 13.2%씩 늘어남.
- 동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8% 증가했음.<sup>3)</sup>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4년 5,184건, 2013년 17,950건이었음.
  - 동기 비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4년 215,571건에서 2013년 197,404건으로 연평균

1)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구분함. 본고는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구분함.  
 2) 도로교통공단(2014), 『2014년판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 2013년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참조.  
 3) 박혜원(201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교육논문. 도로교통공단.

---

0.9% 감소했음.

■ ■ 고령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비고령자에 비해 높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미 도로교통안전국 조사<sup>4)</sup>에 따르면 운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확률은 감소하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짐.
- 한국의 경우 고령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비고령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당 사망자 수의 2.2배 수준임.<sup>5)</sup>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비고령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0.025명이고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0.056명임.
  - 고령자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당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① 급작스런 사고 발생 시 고령운전자의 조작 실수<sup>6)</sup>, ② 고령운전자의 높은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확률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손해율도 손해율이 낮은 41~45세 손해율에 비해 높음.<sup>7)</sup>

■ ■ 빠른 인구 고령화와 실제로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고령운전자 사고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7%에서 14%, 14%에서 2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9년과 8년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sup>8)</sup>
- 최근에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율이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운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9)</sup>
  - 2008년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60%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평균 운전 중단 예상 연령은 77.7세로 응답자 대부분이 75세가 넘어서도 운전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4) <http://www.iihs.org/>, <http://www.sj-ri.co.jp/issue/git/data/27.pdf> 참조.

5) 도로교통공단(2014), 『2014년판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 2013년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참조.

6)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2005), 『고령자 운전행동 및 사고 특성 분석』, 제3장, 제4장 참조.

7) 보험개발원(2012), 『자동차보험 참조준보험요율 신고서』 참조.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

8)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5), 『인구통계자료집』, <http://www.ipss.go.jp/> 참조.

9) 도로교통공단(2008), 『고령자 안전운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 pp. 57.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기능 감퇴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이 저하됨.<sup>10)</sup>

-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수준임.
  - 대부분 국가의 운전자 시력 최소치는 0.5인데 비해 65세 이상인 자의 평균 정지시력은 0.29 정도임.
- 고령자 시각의 원근 조절 능력은 청소년의 1/10 수준임.
- 일반적으로 동체시력<sup>11)</sup>은 정지시력에 비해 30% 정도 낮게 측정됨.
  - 고령화로 안구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동체시력이 급격히 감소함.
- 75세 운전자는 야간에 운전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25세 운전자 보다 32배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은 야간의 낮은 조도(照度, illumination)하에서 물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15세부터 65세까지 섬광(밝은 빛)으로부터 시력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5배까지 증가함.
  - 고령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이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에 노출될 경우 순간 시력 상실 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최근 고령 택시 운전자들의 야간 운전 기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에 낮은 조도 하에서 물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섬광에 노출된 이후 시력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sup>12)</sup>
  - 고령 택시운전자들이 야간에 운행을 꺼려 심야에 운행을 해야 할 개인택시 35,079대 중 실제로 16,931대(35,079대의 48.3%)만이 야간에 운행을 하고 있어 그쳐 야간에 택시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특히 최근 노인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보건복지부 2012년 조사<sup>13)</sup>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9.18%가 치매를 가지고 있음.
  - 동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치매환자 수는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치매환자 수는 2030년 127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치매환자 수가 약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운전자들은 집중력 저하, 사물 인식 능력 저하, 시야 감소, 청력 감퇴, 반사신경 저하, 근력 저하 등으로 운전능력이 비고령자에 비해 현격히 저하됨.

10)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2005), 『고령자 운전행동 및 사고 특성 분석』, 제2장 참조.

11)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파악하는 시력을 말함.

12) 현재 서울시내 택시 7만 2천여 대 중 68%를 차지하는 49,323대를 운전하는 개인택시 운전자 중 30.8%가 6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7/201505070419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7/2015050704192.html) 참조.

13) 보건복지부(2013. 3. 5), “2012년 치매 유병률 9.18%, 치매환자 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참조.

■ ■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는 운전 습관에 영향을 미쳐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sup>14)</sup>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2005)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들은 느린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해 주행 속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판단시간 지연 및 조작 실수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음.
  - 고령운전자들은 앞지르기 시와 교차로 통행 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음.
  - 고령운전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반응 속도가 느리고 핸들을 과다하게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함.

■ ■ 최근 국내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극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5년, 비고령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교부하고 있음.<sup>15)</sup>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함.<sup>16)</sup>
  - 현재 9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본 교육을 이수한 고령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줌.
- 2014년 8월 정희수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고령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음.<sup>17)</sup>

## 2.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 현황



■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재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sup>18)</sup>

-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고령자들을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계획을 운영함.
  - 1단계: 고령운전자, 고령 피해자 및 관련 교통사고 관련 정보 수집
  - 2단계: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고령화가 운전능력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

14)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2005), 『고령자 운전행동 및 사고 특성 분석』, 제3장, 제4장 참조.

15) “광주북구, ‘고령운전자 인식 스티커’ 캠페인”, <http://www.nocutnews.co.kr/news/4389256> 참조.

16) [http://www.koroad.or.kr/kp\\_web/eduRsv\\_1.do?voc1=99&classCd=O](http://www.koroad.or.kr/kp_web/eduRsv_1.do?voc1=99&classCd=O) 참조.

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13017016> 참조.

18) NHTSA(2013), “Traffic Safety for Older People - 5-Year Plan”.

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령자를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는 방안 수립

- 3단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민간에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 도출

-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은 상세한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자동차 안전장치·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상황·날씨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함.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고령운전자 보호 지침을 정하고 각 주가 이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sup>19)</sup>

- 본 지침은 고령자 교통안전 담당 기관 설립,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자료 수집, 고령 피해자 지원 의료기관 역할 등을 정하고 있음.
- 또한 본 지침은 각 주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 또는 적성검사 주기를 각 주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함.

〈표 1〉 미국 각 주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

구분	일반 갱신 주기	고령자 갱신		적성검사		의사 소견 필요 여부
		개시 연령	주기	개시	검사 내용	
앨라배마	4					
알래스카	5					
애리조나	65세 이전 없음	65	5	70	시력	
알칸서	4					
캘리포니아	5			70	직접방문	√
콜로라도	10	61	5			
코네티컷	4 또는 6	65	5		직접방문	
델라웨어	8					√
워싱턴 DC	5			70	시력, 의학검진	
				75	필기, 주행	
플로리다	8	80	6	80	시력	
조지아	5 또는 10	60	5	64	시력	√
하와이	8	72	2			
아이다호	4 또는 8	63	4			
일리노이	4	80~86	2	75	주행시험	
		87	1			
인디애나	6	75	3			

19) <http://www.nhtsa.gov/Senior-Drivers> 참조.

구분	일반 갱신 주기	고령자 갱신		적성검사		의사 소견 필요 여부
		개시 연령	주기	개시	검사 내용	
		85	2			
아이오와	5	70	2			
캔자스	6	65	4			
켄터키	4					
루이지애나	4			70	직접방문, 시력	
메인	6	65	4	40세, 62세		
매릴랜드	5			70	건강증명 필요	
매사추세츠	5					
미시간	4					
미네소타	4					
미시시피	4 또는 8					
미주리	6	70	3			
몬태나	8	75	4			
네브래스카	5					
네바다	4			70	의학검진	√
뉴햄프셔	5			75	주행시험	
뉴저지	4					√
뉴멕시코	4 또는 8	67	4	75	건강증명 필요	
뉴욕	8					
노스캐롤라이나	8	54	5			
노스다코타	6	78	4			
오하이오	4					
오클라호마	4					
오리건	8			50	시력(8년 마다)	√
펜실베이니아	4			65	2년내 갱신 시 수수료 감면	√
로드아일랜드	5	75	2			
사우스캐롤라이나	10	65	5	65	시력	
사우스다코타	5					
테네시	5					
텍사스	6	85	2	79	시력	
유타	5			65	시력	√
버монт	4					
버지니아	8			80	시력	

구분	일반 갱신 주기	고령자 갱신		적성검사		의사 소견 필요 여부
		개시 연령	주기	개시	검사 내용	
워싱턴	5					
웨스트버지니아	5					√
위스콘신	8					
와이오밍	4					

자료: The Insurance Factbook 2014, III, pp. 90~91 참조.

■ 미국 각 주는 도로교통안전국 지침에 따라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sup>20)</sup>
-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자들에게 짧은 적성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음(〈표 1〉 참조).
  - 하와이는 72세 이상인 운전자에게 매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일리노이는 81세 이상인 운전자에게 매 2년마다, 87세 이상인 운전자는 매년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인디애나는 75세 이상인 운전자에게 매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뉴멕시코는 67세 이상인 운전자에게 매 4년마다, 75세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매년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미국은 낮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른 차등적 운전면허를 교부함.<sup>21)</sup>
- 워싱턴 DC, 일리노이, 뉴햄프셔 등은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 도로 주행시험을 워싱턴, 매릴랜드, 뉴멕시코 등은 건강증명서를 요구함.

■ 미국 보험회사들은 주정부나 자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줌.<sup>22)</sup>

-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들은 고령운전자 개선 과정<sup>23)</sup>을 이수한 5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3년간 보험료를 할인해 줌.
-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등도 고령운전자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함.

20) 보통 55세를 기준으로 함. <http://www.iii.org/issue-update/older-drivers> 참조.

21)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he Insurance Factbook 2014", pp. 90~91 참조.

22) 일본손해보험협회(2014. 8. 15), 『Global Topics: 米国の高齢運転者の現状と安全対策』 참조.

23) Mature Driver Improvement Course(<https://www.dmv.ca.gov>) 참조.

---

■ 일본은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차등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시행,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 환경 정비, 치매 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70세 미만 5년, 70세 4년, 71세 이상 3년으로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했음.<sup>24)</sup>
- 70~74세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함.<sup>25)</sup>
-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sup>26)</sup>
  - 1998년 4월 시행 후 1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6,14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음.<sup>27)</sup>
  - 고령운전자는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 경력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이차요금 10% 할인, 정기요금 추가 금리 적용, 호텔할인, 전자화폐 증정, 쿠폰 지급, 볼링 요금 할인, 노래방 요금 할인, 관광 패키지 할인, 생일 반값 입장료, 온천 할인, 물리치료 서비스 할인 등 각종 할인 및 우대 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은 고령운전자들을 위해 야간에 잘 보이는 대형 교통표지판을 도입하고 있음.<sup>28)</sup>
- 일본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치매를 가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sup>29)</sup>
  - 일본은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예비(인지기능)검사 통과를 의무화했고 본 검사에서 치매 판정을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됨.<sup>30)</sup>

■ 뉴질랜드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된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2단계 갱신 과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음.<sup>31)</sup>

- 뉴질랜드에서 75세 이상인 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75세가 되는 해와 80세가 되는 해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80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함.
  - 운전면허 갱신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1단계 의사 진단과 2단계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함.
- 당뇨병, 정신질환, 고혈압, 시각장애, 머리 또는 척추 손상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

24) <http://www.takaragaike.co.jp/ihan/kousin.html>

25)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usin/kousin05.htm>

26)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hennou/hennou.htm>

27) 정연식·오세창·채찬들(2011), pp. 36 참조.

28) <https://www.npa.go.jp/hakusyo/h17/hakusho/h17/html/G1030000.html>

29) <http://www.jama.or.jp/lib/jamagazine/200804/07.html>

30) [https://www.npa.go.jp/annai/license\\_renewal/ninti](https://www.npa.go.jp/annai/license_renewal/ninti)

31) 정연식·오세창·채찬들(2011), pp. 33~36 참조.

신청인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함.

-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갱신 신청자를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가능, 조건부가능, 도로주행 시험 필요, 전문가 진단 필요, 부적합 등으로 구분함.
  - 운전가능: 운전면허 갱신 가능
  - 조건부가능: 교정렌즈 착용 후 운전, 자동기어 차량만 운행, 주간 운행만 가능, 장거리 운전 금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운전 가능
  - 도로주행 시험 필요: 안전운전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주행 시험을 요구함.
  - 전문가 진단 필요: 노인학자나 검안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건부 면허 발급
  - 부적합: 면허 갱신이 불가능함. 단, 추가 검사 신청이 가능함.
- 2단계 주행시험은 아래와 같이 운전자의 주행 능력을 시험함.
  - 기본 주행 능력: 도로 진입, 교차로 우회전, 출발지점 도착 등
  - 위험 상황 포함 기본 주행 능력: 3, 4지 교차로와 로터리 운전, 무신호 교차점 좌회전 등.
  - 위험 상황 포함 고난이도 주행 능력: 제한 속도 50~80km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상 주행 및 좌회전

### 3. 시사점



- **효과적인 고령운전자 증가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교통사고 자료 수집과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운전자 고령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대응 방안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법제화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성공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국민이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 선행연구는 65세 이상 운전자 전체를 고령운전자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여 이들을 통해 연령대 별로 고령화가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에서 상세한 교통사고 자료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음.<sup>32)</sup>
  -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① 연령별 운전자의 의학적 특징

32) NHTSA(2013), "Traffic Safety for Older People - 5-Year Plan".

---

과 ② 연령별 특징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실증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 참조요율<sup>33)</sup>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연령대별 손해율을 제공해 보험회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통당국은 국내 교통사고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차등적 운전면허 갱신 주기 도입: 초고령자의 운전 능력이 단기간에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 고령자운전자의 신체 변화를 고려한 적성검사 강화: 동체시력·야간 시력·원근 조절능력·시야 등을 포함해 실제 운전과 관련된 시력 검사 강화, 초고령자 치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지능력 시험 의무화,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시험 요구
  - 고령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 도입
  - 운전면허 반납 제도 도입 및 반납자 지원 방안 마련
  -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sup>34)</sup> **kiqi**

---

33) 참조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손해율 정보를 이용해 산출하는 요율임. 보험회사들은 참조요율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

34)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을 통해 ① 사업용 운전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②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 교육 S/W 및 인터페이스 개발, ③ 고령운전자 운전능력평가기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고위험운전자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aia.re.kr/>) 참조.



## 건강생활관리를 위한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

### 요약

-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업의 약 70% 정도가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호주, 일본 등 공적 의료보험이 강한 나라들에서도 공·사 건강보험자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기준, 시점,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참여기반인 경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증진 효과는 약한 반면, 특정한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효과는 크지만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쉬움.
  - 인센티브의 제공 시점이 빠를수록, 보험료 할인보다는 현금 형태로 제공될수록 건강증진 효과가 클 수 있음.
- 향후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금전적 인센티브가 도입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건강기준과 연계된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시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기간 동안 제공할 경우 보험료 경감은 의료보험의 재정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조금 역시 또 다른 비용의 창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 가능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1. 검토배경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질환의 초기 진단 및 사전적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서면서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나타남.<sup>1)</sup>
  - 미국의 HERO(Health Enhancement Research Organiza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비만으로 인하여 의료비의 25%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됨.<sup>2)</sup>
  -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매우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공·사 건강보험자(공적 의료보험과 민영 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건강생활관리서비스란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함.
  -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뿐만 아니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함.
  - 금전적 인센티브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건강생활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지는 주체들인 공·사 의료보험자들이 제공하고 있음.
-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근대화법(the Statutory Health Insurance Modernization Act)을 통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건강 예방 활동에 금전적 보너스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함.
  - 호주는 2007년 민영건강보험법안(Private Health Insurance Act)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행위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1) WHO(2012).

2) 1990~1995년 기간 동안 46,000명의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임. 여러 습관 가운데 신체활동 부족과 흡연이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으로 나타남.

- 최근 보건복지부도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연 성공자들에게 5~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함.

- 본고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식과 건강증진 효과들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시행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

## 2. 건강생활관리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 사람들은 현재편향적 선호(present-biased preference)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소비가 미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하거나 건강을 위한 투자를 나중에 미루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만성질환 발병에 관련되는 흡연, 음주, 식단, 운동 등에 관련된 생활습관은 개인들 스스로 통제하기 쉽지 않음.
-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 치러야하는 비용을 훨씬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하기 싫은 행위를 최대한 미루려 하는 성향(procrastination)이 생김.
- 공·사 건강보험자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동기부여가 필요함.

- 인센티브는 주로 현금, 보험료 할인, 비용분담금 면제 등과 같은 금전적 형태 혹은 포인트나 기프트 카드와 같은 형태로 제공됨.

-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는 보상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과 페널티를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보상의 형태로 제공되며 페널티를 부여하는 예로는 보험료 할증, 담배세나 비만세와 같은 죄악세(sin tax)가 있음.

- 동기부여를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모니터링과 피드백 제공, 동료효과(peer effect)<sup>3)</sup> 등이 활용되고 있음.<sup>4)</sup>

- 개인들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행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동료효과란 동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말함.

4) 조용운 외(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보험연구원.

- 사람들의 행동은 직장 동료 간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3. 미국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사례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의료보험과 함께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습관을 진작시키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가입되고 있음.
  - 2013년 NBGH(National Business Group on Health)의 고용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고용인 1인당 \$521만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평균인 \$260의 두 배에 달함.
    -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증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wellness program)을 제공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2013년 근로자 연평균 의료보험비가 \$4,565였음을 고려해 볼 때 기업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1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sup>5)</sup>
- RAND Employer Survey<sup>6)</sup>에 따르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69%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표 1〉 참조).
  -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 수행이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31%(전체 기업들 중 16%)가 건강위험평가 수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5) Kaiser Family Foundation/Health Research & Education Trust(HRET), "2013 National Benchmark Employer Survey".

6)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1〉 건강증진 행위별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

(단위: %)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건강증진 행위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중 비중	전체 기업들 중 비중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 <sup>7)</sup>	31	16
건강검진(clinical screening)	20	10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	30	15
질병관리 프로그램	4	2
최소한 한 가지 이상	69	35

자료: RAND Employer Survey(2012).

■ 기업뿐만 아니라 주 정부 역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표 2〉에 예시되어 있음.
-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사례로 매사추세츠의 Healthy Incentive Pilot<sup>8)</sup>과 미네아폴리스의 Healthy Corner Store Program<sup>9)</sup>이 있음.
  - 두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공적 의료보험자인 Medicare 역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 액수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낮은 편임.
  - 미국 보건복지부(CMS)는 Medicare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액수에 대해서 건강증진 행위 당 \$15, 연간 총 \$5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해왔으나 2014년 그 상한선을 폐지하였음.

7) 건강위험평가는 보통 일련의 건강관련 질문들을 포함하는 설문조사임.

8) 미국 USDA가 개발한 Healthy Incentive Pilot(HIP)는 매사추세츠주의 Hampden county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됨. 이 프로젝트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소비자의 건강식품구매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식단에 보다 많은 과일과 야채가 포함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부임. HIP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지정된 과일과 야채(Targeted Fruits and Vegetables, TFVs) 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그 즉시 소요되는 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푸드스탬프 제도) 달러당 30센트의 보조금이 SNAP계좌로 입금됨. SNAP 대상 가구들은 각자 SNAP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계좌에 지원된 credit으로 물품을 구매함.

9) 미네아폴리스시는 저소득층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소규모 가게에서 다양하고 값싼 신선식품을 공급하도록 2008년 corner store들이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신선식품을 갖춰야 한다는 법령을 통과시킴. 2009년부터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게들은 최소 7개 이상의 다양한 신선식품을 갖춰야 함. 가게들이 이 법령을 따르도록 지원하기 위한 Healthy Corner Store Program을 시작함.

〈표 2〉 금전적 인센티브 유형별 사례

분류	사례	연간 보상금 수준	장점	단점
참여 기반	Caterpillar Inc. : 건강검진 받으면 보험료를 매달 \$75 삭감, 해당자의 90% 참여	- 건강위험평가 \$120 지원 - biometric screening \$130	- 간단한 행위 - 참여율 높음	- 위험에 대한 검사만으로 실제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되지는 않음
행위 기반	휴스턴시 공무원 :세 가지 과제 수행 시 월 \$25 surcharge를 감면 :HRA, biometric screening, Weight Watchers에 등록하거나 헬스코치와 상담	- 활동의 결과를 평가한 뒤 \$200-300 지급	-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됨	-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속되기가 힘들
성과 기반	Johnson & Johnson : 맞춤형 목표를 세우기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므로 health profile 제출 시 보험료 \$500 삭감 : 건강상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을 때 보상	- 개인별로 적합한 목표를 세워 달성 시 보상 \$100-250	- 목적 달성에 효과적 - 가장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별적이며 health care access를 줄임 - 심한 개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 미국은 건강기준(health-related standard)과 연계되어 조건부로 제공되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공 범위와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조건부 인센티브는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집단(특정 행위 또는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만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 전체 금전적 인센티브의 10% 정도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조건부로 제공되고 있음.
- 오바마케어법에서는 조건부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로 인해 그 기준 혹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성취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조건부로 제공되는 금전적 인센티브 액수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비용의 30%를 초과해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sup>10)</sup>
  - 이러한 상한선 규제는 2014년부터 인센티브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에 20%였던 데서 상향 조정된 것임.

10) 금연에 한해서는 50%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4. 금전적 인센티브 유형 및 장단점



- 금전적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참여기반 보상(participatory reward)과 조건부 보상(health-contingent reward)이 있는데, 조건부 보상은 다시 행위기반(activity-only) 보상과 성과기반 (outcome-based) 보상으로 분류됨.<sup>11)</sup>
  - 참여기반 보상 방식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비 혹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주로 휘트니스센터 회원권 구매, 금연프로그램 참여, 건강검진 등의 행위에 보상을 제공함.
    - 프로그램 참여 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보상을 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어떠한 조건도 없음.
  - 행위기반 보상 방식은 지정된 행위를 수행 혹은 해당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때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과기반 보상방식은 특정한 목표치나 건강상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임.
    -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로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체질량지수(BMI), 금연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참여기반 보상의 경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혜택 대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강위험을 발견하기위한 검사만으로 실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반해, 성과기반 보상의 경우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보상 형태 중 가장 심한 개입이 이루어지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행위기반 보상의 경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시점에 따라 즉시보조금과 사후보조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건강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11) 구체적인 사례는 <표 1>을 참조 바람.

- 즉시보조금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혹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순간에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후보조금은 건강관련 행위의 수행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함.
  - 행위기반 혹은 성과기반 보상은 사후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 건강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에서는 즉시보조금이 사후보조금보다 효과가 클 수 있음.<sup>12)</sup>

- 즉시보조금과 사후보조금의 심리적 동기유발 효과를 이론적으로 비교해 보면, 쌍곡형 할인(hyperbolic discounting)<sup>13)</sup>으로 인해 현재의 보조금이 미래의 보조금보다 훨씬 크게 평가될 수 있음.
- 동일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즉시보조금에 비해 훨씬 커야 하며,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자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는 체감효과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현금보상의 경우는 받는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시금이라 상대적으로 액수가 커서 체감효과가 큰 반면, 보험료 할인의 경우는 매달 일정하게 작은 액수로 나뉘기므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sup>14)</sup>
- 반면, 현금보상은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건강증진 효과 분석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15)</sup>

-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분석하고 있는 RAND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을 초과하는 인센티브는 건강위험진단(health risk assessments)을 받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음.
  - 보조금 \$10 증가 시 건강위험진단 수검률이 1.6%p 올라감.

12) Kamila Danilowicz and Robert Schwager, "Subsidizing Health-Conscious Behavior Now or Later", Annual Conference 2013(Duesseldorf): Competi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a Global Economic Order from German Economic Association.

13) 쌍곡형 할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평가대상의 가치가 감소하는 지수형 할인(exponential discounting)과 달리, 평가 대상의 가치가 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드는 할인 방식임.

14) 현금음 즉시보조금의 일종이고 보험료 할인은 사후보조금의 일종으로 이러한 체감효과의 차이는 인센티브 제공 시점의 차이와 비슷함.

15) RAND Corporation(2013), "Workplace Wellness Programs Study", Final Report.

## 5. 시사점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업이 주요한 의료보험 제공자이므로 기업의 건강생활관리프로그램(wellness program)이 발달함.
  - 독일, 호주, 일본 등 공적 의료보험이 강한 나라들에서도 공·사 건강보험자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공·사 의료보험자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 제공 방식(기준, 시점, 형태 등)을 정하는데 미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건강에 이로운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건강검진과 같이 일회적인 행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는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현금 보상이나 즉시보조금 형태를 택하는 것이 좋음.
  - 금연과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성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기반 보상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건강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준과 연계된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시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기간 동안 제공할 경우 보험료 경감은 의료보험의 재정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조금 역시 또 다른 비용의 창출이기 때문에 재원마련 가능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적 동기부여는 제공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 동기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kiri](#)**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김동겸 선임연구원

## 요약

-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축소하되,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써 적극 활용함.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전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 동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요구됨.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사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중요함.
- 또한 퇴직연금 미가입한 자(예: 전업주부 등)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인구가령화,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매우 중요함.
  - 인구가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절실히 요구됨.
  - 그럼에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2013년 기준으로 21.2%에 그치고 있어 사적연금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시행함.
  - 이는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 국가)<sup>1)</sup>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임.
  - 다만,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느냐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와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띠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이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어떻게 제고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2. OECD국가의 연금체계 유형 및 특징



-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및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연금제도(Pension Regime)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Esping and Anderson(1990)<sup>2)</sup>은 각국의 연금체계를 탈상품화와<sup>3)</sup>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1) 우리나라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하나, 기초연금 도입이 일천하고 전통적으로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비스마르크형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

(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모형으로 분류함.

- Myles and Quadagno(1997), Bonoli(2003) 등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제도 내용을 기준으로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Bismarck Model)와 베버리지형 연금체계(Beveridge Model)로 분류함.<sup>4)</sup>

- 비스마르크형은 정책목표를 빈곤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베버리지형은 노년기에도 은퇴 이전의 소득 유지를 목표로 함.

- Bonoli and Shinkawa(2005)<sup>5)</sup>은 공적연금 분류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사회보험연금체계, 다층연금체계, 약한 비스마르크연금체계(Bismarckian Lite Pension Systems)로 분류함.

- 사회보험연금체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소득비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다층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액형태의 최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임.

- 약한 비스마르크연금체계는 소득비례연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연금체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함.

■ 각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 체계 중에서 비교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해 비스마르크형·베버리지형·혼합형(노르딕형) 기준이 가장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

■ 베버리지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빈곤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이상의 소득 보장(퇴직 전 소득지위 보장)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연금체계임.

- 공적연금은 대개 기초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퇴직 전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해 일찍이 중요한 노후보장 수단의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됨.
  -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국가임.

---

2) Esping and Anderso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3)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이용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평균임금근로자의 최저연금급여, 연금수령을 위한 납입기간, 연금수급가능연령 이상의 인구 비중 등을 활용함.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전체연금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의료비지출 중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 등이 있음.

4) 비스마르크·베버리지 분류모형은 국가 간 공적연금제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소득비례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분류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됨. 또한 공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류함으로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혼합체계로 구성된 다층연금체계를 분류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5) Bonoli and Shinkawa(2005), "Ag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Edward Elgar.

〈표 1〉 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구분	비스마르크형 (Bismarck pension model)	베버리지형 (Beveridge pension model)	노르딕형 (Nordic pension model)
목적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상대적 생활수준)	빈곤 완화 및 최저소득 보장 (절대적 생활수준)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정책이념	보수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운영형태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조세	조세 및 보험료
세대내 재분배	높음	낮음	-
공적연금 역할	높음	낮음	중간
사적연금 기능	제한적(공적연금 보완)	확대(공적연금 대체)	-
사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한국 (실질적)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주: 1) 비스마르크형은 188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함. 베버리지형은 1908년 영국에서 도입하였으며, 노르딕형은 1891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2)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개혁을 통해 비스마르크형에서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를 전환하였으며, 노르딕형에서 출발한 덴마크는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제도가 전환됨.

■ 반면,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만을 통해 충분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연금체계임.

- 공적연금은 대개 퇴직직전 소득을 거의 대체할 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비례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및 우리나라 등이 대표적인 국가임.<sup>6)</sup>
  -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는 대개 공·사연금의 균형적 발전이 베버리지형 국가에 비해 미진한 점이 특징임.

■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체계는 베버리지형이 가지고 있는 낮은 공적연금 수준 문제와 비스마르크형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편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에 비례연금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연금체계임.<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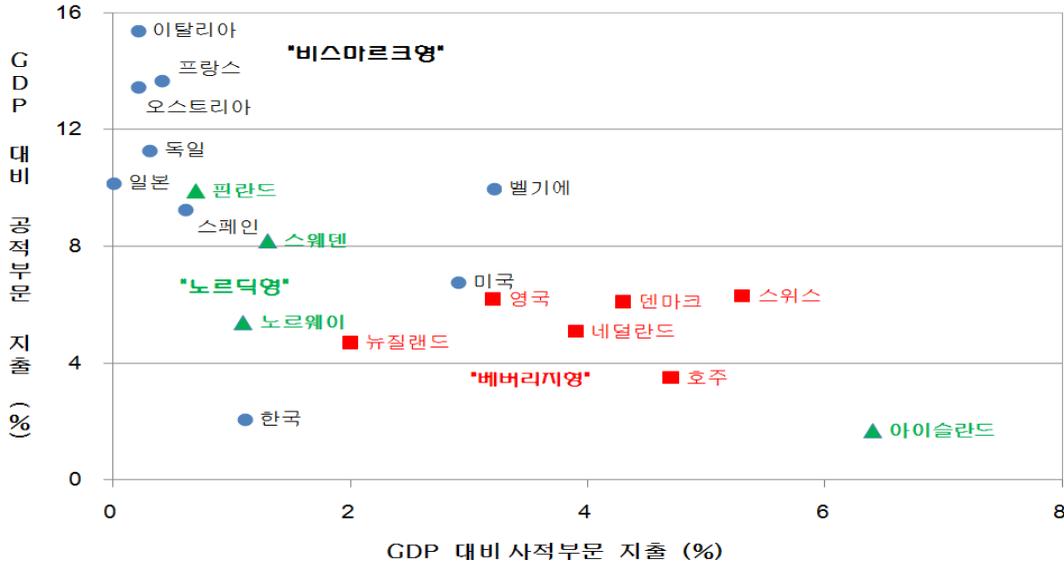
- 동 연금체계는 보편성과 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잘 조화시킨 연금체계라 할 수 있는데, 보장 수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비스마르크형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공적연금

6) 공적연금(OASDI) 수준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을 발달시켜온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임.

7) 이용하·임병인(2013), 『국민연금보완제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p. 91 참조.

의 보장 수준이 높았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사적연금 발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sup>8)</sup>

(그림 1) 연금체계 유형별 공·사연금의 지출 비중(GDP 대비 비중, 2009년 기준)



자료: OECD(2014), “OECD Factbook 2014 –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 on pensions: As a percentage of GDP”.

### 3.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보장 제고 동향<sup>9)</sup>



#### 1)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활성화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대체를 인하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특징을 보임.

● 즉, 부과방식 형태의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적립식 개인연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8)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노르딕형 연금체계는 상대적으로 기초연금보다 소득비례연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로 간주하기도 함. 따라서 연금체계는 크게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9) 3장 이하에서는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 국가를 공적연금보완형 국가로, 베버리지형 연금체계 국가를 공적연금대체형 국가로 표현하고자 함.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형태를 띠고 있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와 대비하여 트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들 수 있음.

〈표 2〉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 비교

구분	독일(Riester)	오스트리아(PZV)	프랑스(PERP)
적립금 보증	있음	있음	없음
수급방법	- 늦어도 85세까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가능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환 및 과세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정부지원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선택안 중 유리한 쪽 적용)	보조금	소득공제

주: PZV: Prämienbegünstigte Zusatzversicherung, PERP: 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자료: 보험학회 한·일 특별세미나(2014).

■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부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전하고자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뤼롭연금(Rürup Rente) 등을 도입하여 가입 시 세제혜택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함.

-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함.
  -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계해 판매하는 사적연금에 가입자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보조금은 가입자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액을 정액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2,100유로를 상한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
  - 2014년 말 기준 총 1,629만 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률은 35.0% 수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15.7%)의 약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뤼롭연금은 리스터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특히 고소득층 및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표 3〉 리스터 연금의 보조금 및 소득공제한도

구분	2007년	2008년 이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기여금 비율	연소득의 3%	연소득의 4%
기본보조금(개인)	114유로	154유로 <sup>1)</sup>
자녀보조금(자녀 1인당)	138유로	185유로 → 300유로(2008년 이후)
소득공제한도	1,575유로	2,100유로

주: 부부의 경우 보조금은 308유로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 2)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

- 미국, 캐나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는 국가는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자동 가입제도(auto-enrollment scheme)<sup>10)</sup>를 운영하되, 가입 후 해지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특징을 보임.
- 이에 반해, 영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국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 또한 매우 엄격함.

〈표 4〉 주요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비교

국가	제도	가입대상	주요 특징
캐나다	PRPP(2012)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가입</li> <li>• 가입 후 60일 이내 탈퇴 가능</li> </ul>
이탈리아	TFR(2007)	민간기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의 6.91% 납입</li> <li>•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퇴 가능</li> </ul>
미국	401(k)(2009)	연금 미가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후 90일 이내 탈퇴 가능</li> </ul>

주: 1) 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TFR: Trattamento di fine rapport.  
 자료: OECD(2014), OECD Pensions Outlook 2014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 미국은 2000년부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동가입제도 도입사업장의 근로자 차별 점검을 면제하는 등 2006년 이후 Pension Protection Act 시행에 따라 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
- 캐나다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또한 가능함.
  - 이탈리아의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월 급여의 6.91%를 자동가입제도에 납입하되, 최초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탈퇴가 가능함.
- 이처럼 자동가입제도는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비중 확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국민연금 보완형 연금체계 국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저축가입을 미루는 성향이 있는 반면, 일단 한번 가입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 관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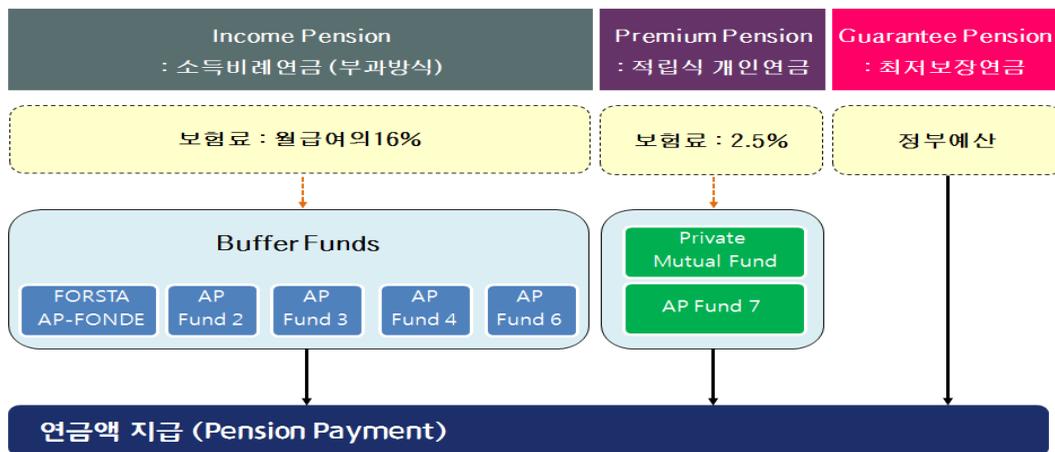
10) 자동가입제도란 근로자가 취업 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탈퇴(opt-out)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임.

### 3) 공적연금 일부 개인연금 전환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을 지닌 국가는 공적연금의 전부를 사적연금으로 대체(예: 민영화한 칠레)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사적연금으로 대체(예: 국민연금 적용 제외국가인 영국)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의 노후보장적 역할을 제고함.

- 칠레는 1981년 기존 공적연금 대신 독립된 개인저축계좌(PSA: Personal Saving Accounts)에 연금을 적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공적연금을 민영화함.
- 영국은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특정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공적연금인 국가 제2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 납입의무가 면제됨.
  - 또한 공적연금 대체형 국가는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강제화)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스웨덴의 연금제도



자료: FORSTA AP-FONDEN(2015), "ANNUAL REPORT 2014".

■ 반면, 스웨덴 등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공적연금 내에서 적립식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도모함.

- 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부과식 DB형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이를 명목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비례연금(IP: Income Pension)과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인 프리미엄연금(PP: Premium Pension)으로 전환하는 것임.
  - 보험요율 18.5% 중 16%는 NDC로 나머지 2.5%는 소득비례연금의 재원으로 배분되며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금융시장의 운용수익률과 평균수명에 결정됨.

- 기업이 원천징수형태로 18.5%의 통합보험료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다시 16%는 국민연금 계정(NDC)계정에 그리고 나머지 2.5% 보험료는 개인연금저축계정(PP)으로 입금함.

■ 즉 공적연금에서 분리된 개인연금계정으로 입금된 자금은 개인이 선택한 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므로 국가 관리형 중앙집중식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

- 연금관리청이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펀드를 승인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국가 관리형 개인연금의 성격이 지님.

#### 4) 세제혜택 등 재무적 지원 강화

■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보험료 납입단계, 운영단계, 인출단계에서의 과세여부를 기준으로 EET, TEE, TET, ETT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EET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5) OECD 국가의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과세체계	해당국가
E-E-T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T-E-E	체코, 멕시코
T-E-T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E-T-T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T-T-E	호주, 뉴질랜드, 터키
E-E-E	슬로바키아
T-T-T	헝가리

주: 각국의 과세체계는 보험료납입,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인출단계에 대한 과세여부(T: 과세, E: 면제)를 기준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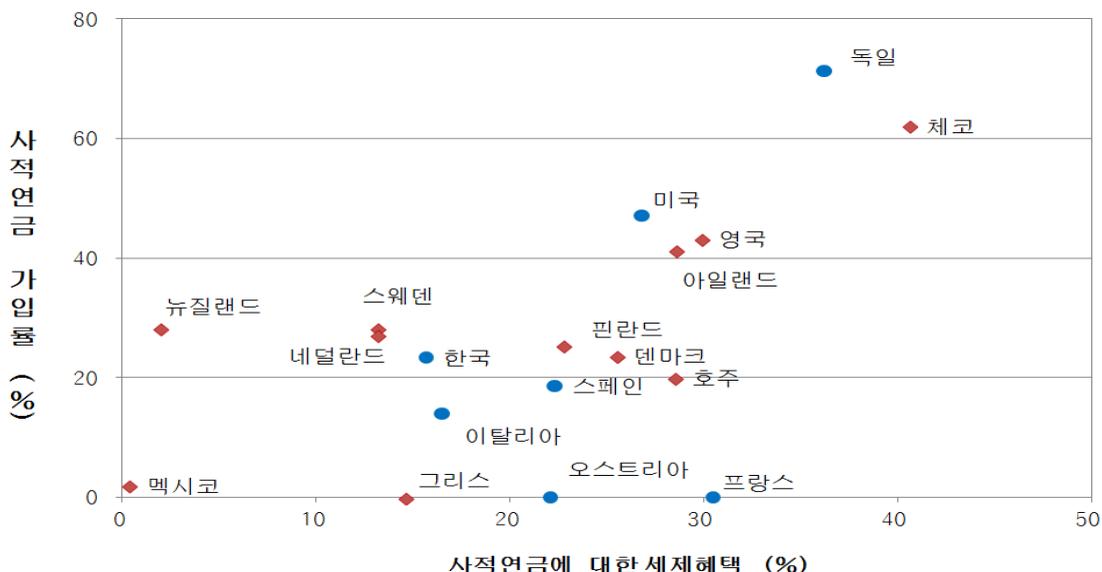
- EET(Exempt Exempt Tax)형은 연금보험료 납부단계에서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 운용단계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sup>11)</sup>
  -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은퇴이후 소득세 부과 시,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조세이연효과로 인한 이득을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대다수 국가에서 EET 방식을 채택함.

11) EET 방식의 경우에도 사적연금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완전한 형태의 EET 방식은 존재하기 어려움.

■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3〉 사적연금 세제혜택과 연금가입률

(단위: %)



주: 1) 세제혜택은 납입보험료 대비 세제인센티브 비중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한 공제액, 운용수익 비과세부분 등을 포함함.  
 2) 사적연금 가입률은 2011년 기준임.

자료: OECD(2013); Yoo and De Serres(2004).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민연금 보완형 국가와 비교 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예를 들어, 미국의 401(k)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해 18,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나,<sup>12)</sup> 우리나라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세제혜택 수준이 낮음.<sup>13)</sup>

12) <http://www.irs.gov>.

13) 각국의 경제(GDP)규모를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는 낮은 수준임.

## 4. 시사점



-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수준을 축소하면서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이 추진됨.
  - 제도 개선은 대체로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공적연금 일부분의 사적연금 전환,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짐.
  
-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사적연금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세제혜택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입구세제)혜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금소득세(출구세제)부담으로 연금가입의 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로 사적연금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시급이 요구됨.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정부가 인증한 개인연금에 가입 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공·사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셋째, 퇴직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되, 가입 후 탈퇴 등은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율형 자동가입제도의 도입검토가 필요함.
  - 사적연금에 일단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스웨덴 등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를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공·사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kiri](#)



##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강성호 연구위원

### 요약

-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에 25~30%의 소득대체율 보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퇴직·개인연금의 역할 또한 미진하여 노후소득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도입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이나 필요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년의무화로 이들의 합산소득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은 단기(2016년 54~59세)적으로 3.51%p, 중·장기적(2030년 54~59세)으로 6.70%p 상승하여 각각 28.19%, 37.06%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하게 되면 앞서 산출된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효과를 다소 감소시키게 되는 것으로 추정됨.
  - 즉,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의무화 전에 비해 단기적으로 2.10%p, 장기적으로 5.35%p 상승에 그쳐 각각 26.78%, 35.71%가 될 것임.
-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나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 검토배경



-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sup>1)</sup>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sup>2)</sup>이 25~30%의 소득대체율 보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sup>2)</sup> 퇴직·개인연금의 역할<sup>3)</sup> 또한 미진하여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sup>4)</sup>
  
- 공·사적 연금의 역할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까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
  - 즉, 2009년 45.1%, 2010년 47.2%, 2012년 48.5%, 2014년 49.6%<sup>5)</sup>로 상승하는 추세임.
  
- 이에 대응하여 최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한 것은(이하 정년의무화) 노후소득 개선과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예정임.
  -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sup>6)</sup>
    - 영국은 2011년 이후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65세에서 67세로, 프랑스는 60세에서 62세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1) 은퇴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소득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음. 연금학자들의 경우 근로 시기의 평균소득 대비 은퇴시기의 연금소득으로 정의되는 소득대체율 개념을 활용하여, 그 비율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2) 한정림·박주완(2014),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연구보고서 2014-15, 국민연금연구원.

3) 류건식(2013),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퇴직 및 개인연금의 합산 실질소득대체율은 21.2%(가입기간 35년 가정)로 산출됨.

4) 강성호(2015),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5) OECD 평균은 12.6%임(<http://news.donga.com/rel/3/all/20150523/71426333/1>).

6) 윤상하·이지선(2011),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시대, 정년의 은퇴가 시급하다」, LGERI.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퇴직 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로 수혜를 얻게 되는 근로자 수, 국민·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개선 효과, 정년의무화 이후에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등을 검토함.
  - ※ 임의가입 성격의 개인연금은 정년의무화 후에도 가입증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제외함.

## 2. 정년제 도입 현황과 대상자 규모

-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38.2%를 차지하며, 이중 단일정년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84.4%로 가장 높음.<sup>8)</sup>
  - 정년제 도입 비율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6%, 30~299인 사업장은 74.1%,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가 정년제를 도입하여 전체적으로는 38.2%임.
  - 이 중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84.4%)의 정년연령은 대체로 54~61세까지 분포하며, 특히 55세, 58세,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사업장이 많음.

〈표 1〉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단위: %)

사업장 규모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이상	전체
30인 미만	0.9	33.9	6.4	8.7	24.8	2.2	17.9	5.2	100.0
30~299인	0.7	30.9	3.1	5.5	25.4	2.0	23.1	9.3	100.0
300인 이상	0.5	34.3	4.3	9.7	21.8	3.0	20.6	5.8	100.0

자료: 전용일·임병인·박소은(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용편입분석연구원.

- 여기서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은 정년의무화가 없었다면 퇴직하였을 근로자가 2016년 이후에도 근로할 수 있게 되는 60세 미만의 근로자임.

7) 정년의무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에 대한 분석은 ‘강성호(2014),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8) 전용일·임병인·박소은(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용편입분석연구원, p. 10 참조.

- 따라서, 과거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하였거나 정년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번 정년의무화의 수혜 대상자가 됨.

■ **연령, 퇴직의 자발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자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4만 8천 명 임(보험연구원 내부자료, 2015년).<sup>9)</sup>**

- (1단계: 연령·인구 기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4세부터 본격적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4~59세 인구(4백 88만 7천 명)가 대상이 됨.
- (2단계: 근로자 기준) 54~59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sup>10)</sup> 수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수(1백 23만 7천 명)가 추정됨.

<표 2> 정년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정('16년 추정치)

(단위: 천 명)

연령	인구 수1)	근로자 수2)(A)	비자발적 퇴직비율3)(B)	정년연장 대상자 수 (A×B)
54세	868	298	9.4%	28
55세	865	202	12.8%	26
56세	843	197		25
57세	807	188		24
58세	771	180		23
59세	734	171		22
전체	4,887	1,237	10.8%	148

주: 1) 통계청에서는 5세 구간 인구 수(2016년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각 세별 인구 비중을 적용하여 2016년의 각 세별 인구 수를 산출함.

2) 각 세별 인구비중에 5세 단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곱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함.

3) 고용보험통계연보상(2013년 기준)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는 '질병·부상·노령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변동',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이며, 이는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는 60세 이전에 강제적으로 퇴직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전체 인구);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2013 고용보험통계연보.

- (3단계: 비자발적 퇴직 고려) 54~59세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가 최종 대상자가 될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직비율(10.8%)을 적용하여 정년연장 대상자 규모(14만 8천 명)를 추정함.
  - 한편, 통계청(2015)<sup>11)</sup>조사(55~64세 대상)에 의하면, 비자발적 퇴직('정년퇴직', '권고사직·명

9) 보험연구원(2015년, 내부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54~59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크게 3단계(연령·인구기준, 근로자기준, 퇴직의 자발성 여부)로 접근하여 정년연장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1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자영업자 제외).

11) 통계청 (2015),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으로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외'로 구분하

예퇴직·정리해고) 비율은 18.6%로 조사되고 있음.<sup>12)</sup>

###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효과



■ 그 동안 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은 개선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제도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인 분석은 없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후소득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 분석에 활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음.

- (대상자)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가 대상자임.
  - 정년무화는 60세까지이므로 제도 도입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령은 59세임(〈표 2〉 참조).
- (적용 임금 등) 과거 및 미래의 임금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됨.
  - 임금피크는 55세 이후 발생하여 59세까지 적용하되 1세 증가 시 전년 소득기준으로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됨.
- (수급시점 및 기간)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급은 모두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61세(2013년 이후)에서 65세(2033년 이후)에 시작되어 84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됨.
  - 국민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퇴직 후 85세에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84세까지 수급하는 것으로 함.
- (보험료율, 급여수준) 국민연금은 1998년~현재까지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퇴직연금은 8.3%를 적용(현행 제도)하되 수지상등 기준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함.
  - 최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제1차 개혁시점인 1998년,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시점<sup>13)</sup>을

여 문의하고 있음.

12) 여기에 54~59세 근로자만을 고려하게 되면 본 연구의 추정치(10.8%)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3) 실질적인 도입시점은 2015년 12월부터이나, 분석자료가 연 단위이므로 편의상 2006년부터로 함.

고려하여 2006년으로 함.

-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9%, 급여수준은 추정된 소득 및 가입기간을 현행 급여산식<sup>14)</sup>에 적용하여 산출되고, 퇴직연금의 경우 납부금액의 현가만큼 수급<sup>15)</sup>되는 것으로 함.

●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하여 분석하되, 추가적인 가정은 <표 3>을 참조하기 바람.

<표 3> 분석가정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활용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분석대상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 54~59세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 비율 적용	
임금수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 적용하여 과거 및 미래의 연간 임금 소득 산출	
임금피크	55세~59세까지 1세 증가마다 임금소득 10% 감소	
가입기간	국민연금: 59세까지 가입, 퇴직연금: 60세까지 가입 ※ 최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제1차 개혁시점인 1998년 이후,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06년으로 함.	
수급연령	국민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61세(2013년 이후)~65세(2033년 이후)로 적용	
수급기간(사망연령)	수급시작시점~84세까지 수급(85세 사망) ※ 수급시작시점은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2017년 61세, 2018년~2022년 62세, 2023년~2027년 63세, 2028년~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보험료율	9%	8.3%
연금급여수준 (소득대체율)	현행법 체계 고려 (2015년 46.5% ~ 2028년 이후 40% 적용)	'수익비=1'(수지상등)이 되는 연금급여수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하여 분석</li> <li>-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 모두 3%적용</li> <li>※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수익률로 가정</li> <li>- 다른 제도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 의한 구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li> </ul>	

■ 분석방법으로는 정년연장,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은 각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승, 하락시킬 수 있으며

14) 국민연금 연간 기본연금액(BPA)은  $BPA_i = \alpha \cdot (A + B_i) \cdot 0.05 n_i$ 에 의해 산출됨.

단,  $\alpha$ : 소득대체율을 1998년~2007년 60%, 2008년 50%,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계수

A: 연금수급전년도(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_i$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_i$ : 가입년수

15) 연간 퇴직연금액(RP)은  $RP_i = c \times B_i \times n_i / t$ 에 의해 산출됨.

단, c: 보험료율,  $B_i$ : 자신의 소득수준,  $n_i$ : 가입기간, t: 퇴직(혹은 65세) 후 사망까지 기간

로 두 요소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에 이미 54세~59세인 경우 수혜 기간이 1~6년이나 2022년 이후에는 모두 6년의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즉, 단기는 2016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하였으며, 중·장기는 2030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2016년 40세~45세)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함.
  - 중·장기를 2030년에 맞춘 이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의 충분성이 확보<sup>16)</sup>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급여수준 변화 효과

■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3.92%, 중·장기적으로 23.49%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단기) 정년연장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2016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6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21.42%에서 23.92%(2.50%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증가된 평균 가입기간의 경우 54세 근로자는 3.94년, 58세 근로자는 0.84년이나, 59세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59세까지이므로 증가되지 않음.
- (중·장기) 2030년에 54세~59세(2016년 40세~45세)가 될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4.76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49%에서 27.97%(4.48%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4.33%, 장기적으로 9.21%가 될 것으로 추정됨.<sup>17)</sup>

- (단기) 2016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77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3.29%에서 4.33%(1.03%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증가된 평균 가입기간은 54세 근로자는 4.64년, 58세 근로자는 1.56년, 59세 근로자는 0.72년으로 추정됨.<sup>18)</sup>

16)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성숙기를 제도도입 후 약 40년(20세 가입, 59세 퇴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1998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것임.

17) 홍원구(2013), 정년 연장이 퇴직연금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정년연장 효과가 3년이고 투자수익율 연 5%, 수급기간을 25년으로 할 경우 퇴직전 급여의 1.75%만큼 퇴직연금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

18)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은 국민연금보다 약 1년 정도 김.

- (중·장기) 2030년에 54세~59세(2016년 40세~45세)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5.45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6.95%에서 9.21%(2.26%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19%, 장기적으로 37.06%로 예상되나, 필요 노후소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단기) 2016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의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연장을 전후하여 24.68%에서 28.19%로 상승(3.51%p)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산소득대체율도 정년연장을 전후하여 30.36%에서 37.06%로 상승(6.70%p)할 것으로 추정되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자의 필요노후소득(소득대체율 70%)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6.78%, 중·장기적으로 35.71%로 추정됨.

- (단기) 2016년에 54세~59세인 근로자는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연장 전에 비해 2.10%p (26.78%-24.6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 2030년에 54세~59세(2016년 40세~45세)인 근로자는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연장 전에 비해 5.35%p (35.71%-30.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4〉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전후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개선효과<sup>1)</sup>

(단위: %, 년)

구분	2016년 연령	국민연금			퇴직연금			전체		
		연장전 (A)	연장후		연장전 (A)	연장후		연장전 (A)	연장후	
			피크전 (B)	피크후 (C)		피크전 (B)	피크후 (C)		피크전 (B)	피크후 (C)
단기 <sup>2)</sup>	54세	21.35	26.01 (3.94)	25.11	3.38	5.13 (4.64)	4.46	24.70	31.07	29.57
	55세	21.04	25.03 (3.15)	24.29	3.43	4.87 (3.83)	4.21	24.43	29.83	28.50
	56세	20.41	23.26 (2.45)	22.44	3.31	4.52 (3.18)	3.83	23.68	27.71	26.26
	57세	22.35	24.34 (1.57)	23.53	3.19	4.02 (2.28)	3.39	25.50	28.29	26.93
	58세	21.67	22.70 (0.84)	21.87	3.20	3.77 (1.56)	3.16	24.84	26.41	25.03
	59세	21.90	21.90	21.09	3.23	3.49	2.84	25.09	25.34	23.93



---

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선진국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년연장으로 사업주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나,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 경우<sup>19)</sup>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지나친 임금피크 적용은 오히려 조기 퇴직을 부추겨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는 업종 및 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년연장으로도 여전히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함.

- 정년의무화로 증가될 근로소득이 개인연금 등과 같은 노후자산으로 전환·축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증형 개인연금(가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예, 독일의 리스터연금).
  - 즉,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증형 개인연금 도입을 통해 미래의 노후빈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 [kiri](#)

---

19) 정진호(2011)에 의하면, 55세 이후에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 하수폐기, 건설'(47.9%)을 들고 있음.

## 4. 보험경영

- |                                |             |
|--------------------------------|-------------|
| 1.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가능 확보 방안 비교      | 이태열 전용식     |
| 2.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 최창희 김혜란     |
| 3.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 임준 황인창 이성은  |
| 4.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 전용식 조재린     |
| 5.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 박선영 정봉은 이선주 |
| 6.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     | 이기형         |





#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 요약

- 최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자금이체 기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업법 상에 겸영업무, 자금이체용 자금, 자금이체용 자금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타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임.
-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 상 차이가 존재할 것임.
  -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음.
-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은 고객의 주 거래계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에 따라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고객 계좌를 유치하더라도 주 거래계좌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 이체수수료조차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금융결제원 가입비는 자산이나 자본의 규모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기존 고객 활용 면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매물비용과 사업의 확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산업자본 소유 보험회사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출자 및 의결권 비율 제한과 관련한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1. 검토배경



- 최근 금융산업 혁신 논의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이하 참여 방식)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하 설립 방식) 등 자금이체 기능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보험산업의 참여 방식 및 설립 방식에 따라 각각 ① 법 개정 부담, ② 시스템 구성, ③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고 회사 특성별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법 개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교하고자 함.
  - 시스템 구성과 관련해서는 ① 금융결제원 가입, ②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③ 중앙은행과의 정산 관련 시스템 구성 등에서 존재하는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함.
  - 상기 논의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에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회사의 형태별 비즈니스 모델 선택 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 참여 방식은 2009년 금융투자업의 유형으로, 설립 방식은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금융투자업은 ① 서민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고, ②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 위탁하며, ③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는 간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보험산업은 은행이 아니며, 예금수취기관도 아니고, 서민금융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은행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고 중앙은행과도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부여될 설립 요건이나 업무 범위 등에 있어서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음.

## 2. 법 개정 부담



-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참여 방식은 기본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체 기능뿐 아니라 자금이체용 유동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
  -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에 계약자를 위하여 어떠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할지에 대해 규정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에 대해서 별도로 예탁할 것을 자통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을 보험산업 내의 유관기관이 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자통법 제323조의 21~제335조의 증권금융회사 관련 규정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설립 방식은 타 관련법에서 규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와 관련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규정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 현재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함.
    - 미국의 경우 통화감독청(Office of Currency Comptroller)이 2001년 1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련 감독방향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0년 8월 확정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은산분리 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는 일부 증권회사와 증권지주회사,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은산분리와 무관할 수 있음.
- 보험업법 개정 부담을 통해서 본 비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법

개정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보험회사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3. 자금이체 시스템 유형



-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전술한 개념 및 법적 차이 때문에 ① 결제정보 송·수신 및 청산(금융결제원 가입), ② 지급결제용 유동성 관리(예탁기관 유무), ③ 결제자금 차액 정산(중앙은행과의 정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

#### 가. 금융결제원 가입

- 참여 방식과 설립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가입해야 하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급결제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함.

#### 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임.
  -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 유관기관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 신규 설립해야 할 수도 있음.<sup>1)</sup>
    - 보험산업의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산업 외부의 금융기관(ex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탁할 경우에는 별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임.
    - 보험회사 중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해당 은행이 유동성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설립 방식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고유자산으로 관리하며, 따라서 별도의 유동성 관리 기관이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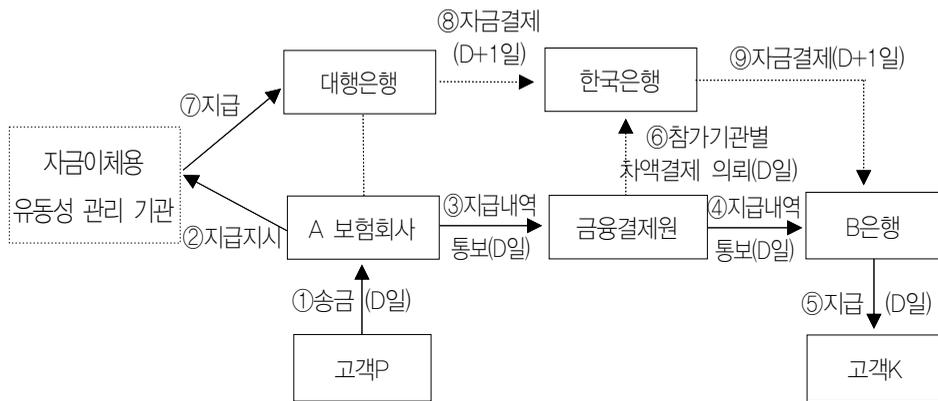
1) 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된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유동성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함.

## 다. 중앙은행과의 정산

■ 중앙은행과의 결제자금 정산은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방식의 경우에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과 정산을 하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직접 정산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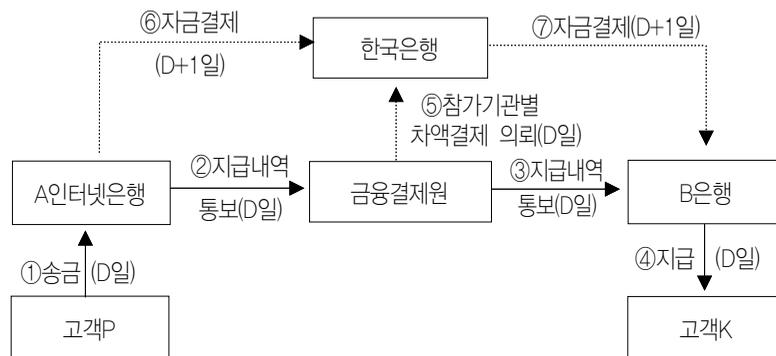
- 금융투자업의 증권금융회사와 같은 유동성 관리기관도 중앙은행과의 직접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대행은행을 경유하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의 직접 정산 여부는 설립 요건 등과 함께 유동적인 측면이 있음.

〈그림 1〉 참여 방식의 소액결제 흐름도(금융투자업 유형일 경우)



주: 대행은행이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하는 체제인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합한 형태로 흐름도를 수정해야 함.

〈그림 2〉 설립 방식의 소액결제 흐름도(은행의 유형일 경우)



## 4. 비즈니스 모델 선택



- 자금이체 기능에 따른 수익은 고객의 주거래 계좌 유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 즉 참여 방식인지 설립 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가. 기대 수익

- 지급결제나 자금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기대 수익은 ①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 절감, ② 수수료 수입, ③ 고객 니즈 확대(다양한 고객 유치 수익)에 따른 수익원 다양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는 유치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될 경우에만 사실상 절감될 것임.
    - 고객의 계좌를 유치했다고 하여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간 수수료, 고객 수수료, 중개수수료 중에서 고객수수료만 절감될 수 있어 거의 효과가 미미함.<sup>2)</sup>

〈표 1〉 이체 수수료 부담 변화

구분	현행	자금이체 기능 확보 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유치된 계좌로부터 입금
은행간 수수료	○	○	
고객 수수료	○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	○	○	

- 수수료 수입은 유치된 계좌에서 타금융권(신용카드 대금 등) 또는 기업(신문, 정수기 등) 등으로 이체 서비스가 발생하면 은행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임.
- 유치된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다른 보험상품이나 신탁 등의 서비스로 재유치할 수 있으며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임.
-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 창출은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고객의 주거래 계좌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계좌 유

2) 보험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체수수료는 연간 대략 1,600~1,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절감은 유치된 계좌로부터 보험료 이체까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임.

치를 위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계좌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고객이 주거래 계좌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임.
- 고통화에 따라 연금 지급계좌가 현재의 급여이체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설립 방식의 경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은행으로서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산업자본에 대한 출자 비율과 의결권 비율 제한이 관련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금융 전업 보험회사의 경우 출자비율과 의결권 비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경영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부터 계좌이동제(Account Switching)<sup>3)</sup>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은행들의 계좌 유지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틈새시장 공략 여지가 있을 것임.
  - 가계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 나. 예상 비용

- ■ 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크게 ① 금융결제원 가입비와 ② IT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참여 방식과 설립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금융결제원 가입비 산출 방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자산이나 자본 규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몰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sup>4)</sup>
  - IT 시스템 구축 비용은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 방식의 경우 자본 요건과 규제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가 500억 원(지방은행 수준)에서 1,000억 원(시중은행

3)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한 B은행에 자동이체 연결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A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해지 건 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제도로 EU와 영국, 호주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과 소액결제 통합을 위해 도입한 바 있음.

4) 공식 통계는 없으나 개별 가입한 금융투자업이 총 4,000억 원 가량의 가입비를, 서민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들이 각각 200억 원 가량의 가입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상관 없이 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을 받아야 함.

- 또한, 계좌유치 비용인 경쟁력 있는 예금금리와 수수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유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다.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 선택

■ 참여 방식이나 설립 방식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주거래 계좌 확보 능력에 따라 자금이체 기능 방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경우 계열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논의의 대상이 아님.
- 금융전업 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터넷 전문은행은 매몰비용과 사업 확장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여건만 극복된다면 우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참여 방식의 경우 기존 고객을 바탕으로 주거래 계좌를 단시간에 충분히 유치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사업성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음.
- 산업자본 소유 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비용과 의결권 비율 제한 등이 경영활동의 제약요인이 될 경우 참여 방식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 경우 금융결제원에의 가입비, 유동성 관리 기관의 선택 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직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사업 모델 간의 유·불리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임. [kiri](#)



#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 요약

- 최근 금융위원회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동 보험시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단기수출보험 시장 민간 개방은 OECD 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최근 중국과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였음.
- 시장 민간 개방에 따라 중소기업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독점과 보수적인 효율 체계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 대형 보험회사에 잠식당했다는 비판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함.
- 단기수출보험은 시장 진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동 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본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은 2005년 무역보험 시장 개방 이후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무역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무역보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험회사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함.
-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효율적인 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보험 이외의 보험 리스크 전가 방법을 인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1. 단기수출보험 소개



- 금융위원회는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sup>1)</sup>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sup>2)</sup>
  - 상기 발표는 20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60% 이내로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방침을 밝혀 동 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sup>3)</sup>
  - 이에 따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르면 금년 내 금융위에 관련 상품 인가를 신청할 계획을 피력하였음.<sup>4)</sup>
  
-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sup>5)</sup>
  -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리스크<sup>6)</sup>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리스크<sup>7)</sup>에 의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 수출보험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개입이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 진흥 수단임.
    - 동 보험은 수출자가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여 국내 수출자가 신시장을 개척하고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수출보험의 보험회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수출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1) 이하 ‘무보’라 함.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8. 27),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3)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2774&firstsec=1&secondsec=11](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2774&firstsec=1&secondsec=11)

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111325451207&outlink=1>

5) 단기는 2년 이하의 기간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해설 3」 참조.

6) 신용위험(Commercial Risk)은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임.

7) 비상위험(Political Risk)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임.

■ 단기수출보험은 무보의 주요 보험상품임(그림 1) 참조.

- 무보의 보험 상품에는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보험, 수입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기타보험 등이 있고 이들 중 단기수출보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임.
-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sup>8)</sup>은 1992년 1조 6천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현재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 무보가 판매하는 단기수출보험에는 선적후·선적전·수출채권유동화·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Plus+보험 등이 있음.
  - 단기수출보험의 대표 상품인 선적후 보험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한 뒤, 수입자(L/C거래의 경우는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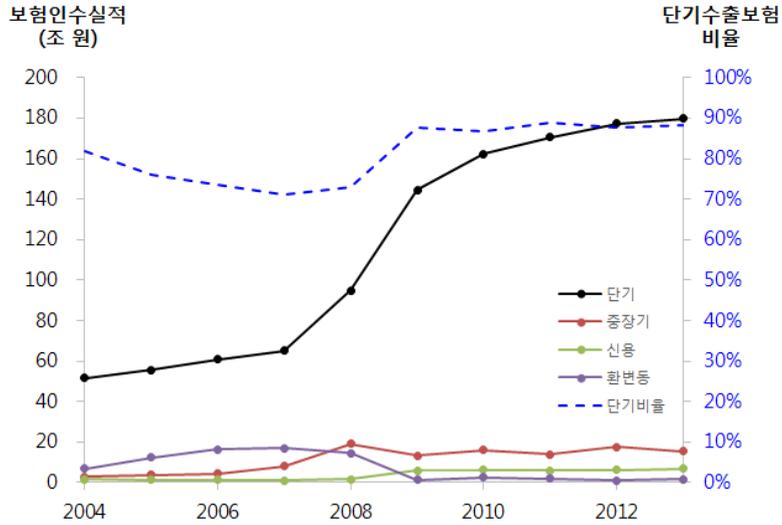
〈표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주요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sup>1)</sup>	수출대금
부보율 <sup>2)</sup>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95%이내 * 상기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sup>3)</sup>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sup>4)</sup>	보험금액 × 보험요율

주: 1)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2) 부보율: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비율.  
 3) 보험금액: 보험회사(무보)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금액.  
 4)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실무에서는 보험료를 보증수수료라 함.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trade/insurance/sei\\_shipment02.jsp](https://www.ksure.or.kr/trade/insurance/sei_shipment02.jsp)) 참조.

8) 보험가액

〈그림 1〉 무보 보험 종목별 실적



주: 인수실적은 보험가액, 비중(오른쪽 축, 푸른색 점선)은 단기수출보험이 총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실선은 종목별 실적.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jsp/business/pop\\_disclosure\\_03\\_11.jsp](https://www.ksure.or.kr/jsp/business/pop_disclosure_03_11.jsp)).

■ 무보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은 큰 차이를 보임. (〈표 2〉 참조)

-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10년간 무보의 단기무역보험 보험료 총액은 중소기업(1,676억 원), 대기업(1조 원)으로 대기업 보험료가 전체에서 86%를 차지함.
- 동 기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손해율<sup>9)</sup>은 각각 95%와 67%로 무보는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게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2〉 보험료 수입과 손해율(수출기업 유형별)

(단위: 억 원, %)

구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표준 편차
보험료	대	475	386	410	408	584	1,109	1,428	1,824	1,626	1,749	1,000	610
	중소	87	81	68	74	110	158	197	205	342	354	168	107
손해율	대	49	22	65	87	41	184	92	32	41	58	67	47
	중소	125	132	125	87	58	233	93	62	66	76	106	53

자료: 주효찬·주승효·이항석(2015), 「단기수출보험 상품포트폴리오의 리스크관리」, 2015 동계 보험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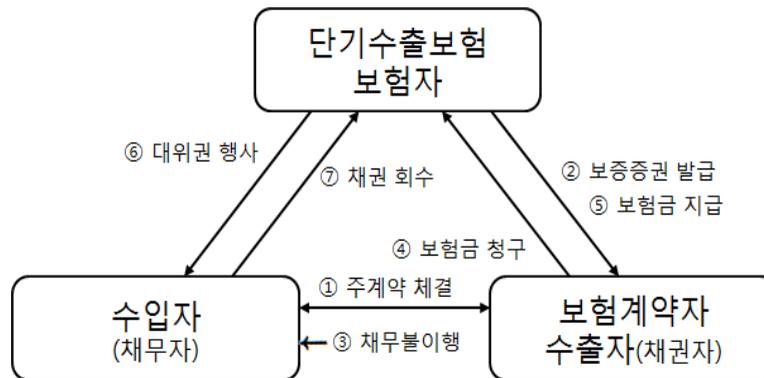
9) 10년간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현가는 고려하지 않았음.

## 2. 단기수출보험의 특징



- 단기수출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수입자의 잠재 채무를 담보하므로 요율산출, 리스크 관리, 사업수행방법 등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sup>10)</sup>과 다름(〈그림 2〉 참조).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 리스크는 잠재 채무자(수입자)의 신용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 정보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관리하고 수입국의 정세 변화에 따른 수입자 신용 리스크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는 단기수출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수출자에 대한 채권추심 방법을 확보해야 함.
    -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가지고 채무자인 수입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채권회수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하여야 함.

〈그림 2〉 단기수출보험 계약 당사사간의 법적 관계



자료: 나동민·김관영·오창수·조강필(2000),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증보험의 중장기 개발전략』,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pp. 38 참조.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 리스크는 수입국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신용 리스크는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동 보험의 손해율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sup>11)</sup>

10) '일반 손해보험'이라고도 함.

- 무보는 2008년~2010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 높은 손해율을 보였음(〈표 4〉 참조).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급되므로 손해율은 경기 변화를 후행함.
  - “경기악화 ⇒ 보험금 청구 건수 증가 ⇒ 손해사정 ⇒ (소송 또는 조정) ⇒ 보험금 지급”

〈표 4〉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표준편차
보험료	563	467	478	482	693	1,267	1,625	2,029	1,968	2,103	1,167	707
보험금	343	190	353	420	302	2,409	1,501	711	898	1,289	842	707
손해율	61	41	74	87	44	190	92	35	45	61	73	46

주: 표의 수치는 〈표 3〉을 이용하여 구했음. 손해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험료를 가중치로 하여 구함.  
 자료: 주효찬 외(2015).

- 외국 보험회사들은 경기와 손해율을 고려하여 요율과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무보는 경직된 요율을 사용하여 만성적으로 저조한 보험영업 수익 문제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sup>12)</sup>
-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sup>13)</sup>은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sup>14)</sup>
  - 유럽과 미국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up>15)</sup>와 RBC<sup>16)</sup>는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를 이용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RBC는 재보험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만을 인정함.<sup>17)</sup>

11) Xiaoling Pu and Xinlei Zhao(2010), “Correlation in Credit Risk”,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12) 박진근·신동천(2000), 『수출보험의 적정기금규모와 손해율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학회지, 1, pp. 63-92.  
 13) 세계 신용보증보험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아투라디우스(네덜란드), 코파스(프랑스), 율러 헤르메스(독일)를 일컬어 신용3사라 함. 머니투데이(2015. 1. 12) 참조.  
 14) <http://www.eulerhermes.nl/en/credit-insurance/our-solutions/multinationals/Pages/Securitization.aspx>,  
[http://www.academia.edu/4673043/The\\_use\\_of\\_derivatives\\_by\\_US\\_insurers\\_Empirical\\_evidence\\_and\\_regulatory\\_issues](http://www.academia.edu/4673043/The_use_of_derivatives_by_US_insurers_Empirical_evidence_and_regulatory_issues)  
 15) Castries and Claveranne(2010), “Derivatives: an insurer’s perspective”, Financial Stability Review, Banque de France, 14.  
 16) 최창희(2013),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과 도입 필요성』,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참조.  
 17)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40186854180&url=/fss/kr/1240186854180>

### 3.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



- 현재 한국과 유사한 수출액과 보험료 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 공기업인 일본무역보험<sup>18)</sup>이 일본 무역보험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음.
  -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30년 수출보상법을 시행하여 정부가 수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분 보전해 주었음.<sup>19)</sup>
  - 2005년 이전에는 일본무역보험이 무역보증보험 사업을 독점하고 일본정부가 일본무역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무역보증보험 시장을 운영하였음.<sup>20)</sup>
  - 2013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은 각각 615조 원과 655조 원이고,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2,380억 원과 2,690억 원임.<sup>21)</sup>
    -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각국 수출액의 0.0342%와 0.0452%임.
- 2005년 일본은 공기업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음.<sup>22)</sup>
  - 2005년 이후 일본 무역보험시장 개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일본정부는 일본무역보험의 보험 리스크를 재보험으로 보증<sup>23)</sup>하고 일본무역보험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며 재보험 업무를 수행함.<sup>24)</sup>
    - 민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에 신청 후 일본무역보험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진입하였음.
    - 2005년 당시 7개 사가 시장 진출 신청, 6개 사가 시장 진출 계획 밝혔고 2008년 현재 11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sup>25)</sup>

18)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保險 (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19) 하영태(2013), 『일본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 특징과 최근동향』, 무역보험연구, 14(4), pp. 51 참조.

20) 안유신·장은희(2013),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료를 통한 개선점 연구』, 무역보험연구, 14(4) 참조.

21) 일본의 수출액과 일본무역보험 보험료는 일본무역보험 연차 보고서, 무보 보험료는 주효찬 외(2015), 한국의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3년 수출 평가 및 과제 참조. 엔/원=9.25, 달러/원=1,099로 환산. 무보의 수입보험료는 단기수출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88%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임.

22) 「簡素で効率的な政府&を実現するための行政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참조.

23) 하영태(2013), pp. 56 참조.

24) <http://nexi.go.jp/webmagazine/feature/004248.html>

25)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

■ **일본무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진입장벽이 높은 무역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 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음.**<sup>26)</sup>

- 일본무역보험과 일본 금융당국은 청문회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무역보험 시장에서 일본무역보험과 민간 보험회사들이 협력해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일본무역보험은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청구제도<sup>27)</sup>와 다양한 지원 창구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음.
  - 설명회·연구회 등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상품 및 심사 관련 노하우 제공
  - 민간 보험회사들의 개별적 협조 요청에 대응하는 창구 마련
  - 재보험 서비스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리스크 관리 지원
  - 민간 보험회사에 업무 위탁(물건 공동 인수·관리)
  - 수입국의 정치·경제 정세 모니터링 정보 및 수입자 관련 정보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sup>28)</sup>

〈표 5〉 일본의 민간 무역보험 사용 현황 조사

(단위: 건수, (비율))

응답내용	연도		
	2009	2010	2011
무응답	1	0	1
민간보험회사 이용실적 있음	28(19%)	25(16%)	27(16%)
실적 없음	검토한적 있음	62(41%)	61(40%)
	검토한적 없음	59(39%)	66(43%)
조사 건수	150	152	161

주: 위 결과는 무역보험 계약자들에게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것임.

자료: 2013년 일본 무역보험 청문회 자료(『評価に当たって参考とする関係者の意見等』).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620/pdf/040\\_01\\_03.pdf](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620/pdf/040_01_03.pdf) 참조.

■ **일본금융당국과 일본무역보험이 민간 보험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음에도 2011년 현재 민간 보험 회사 실적은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함.**

- 일본 무역보험 민간 개방 이후 민간 보험회사의 실적은 2005년 5억 엔, 2006년 19억 엔, 2007년

26) 일본 무역보험 관련 청문회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70607b04j.pdf>, [g60605a06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605a06j.pdf), [g80513c07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80513c07j.pdf), [g60605a07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605a07j.pdf), [g80513c08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80513c08j.pdf)

27) <http://www.nexi.go.jp/corporate/info/disclosure/>

28) [http://nexi.go.jp/product/booklet/pdf/pr09\\_01.pdf](http://nexi.go.jp/product/booklet/pdf/pr09_01.pdf)

28억 엔, 2008년 31억 엔 수준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sup>29)</sup>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무역 보험 이용자 중 16% 만이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5〉 참조).

- 이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무역보험의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임.<sup>30)</sup>

- 유럽의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확대가 일본 수출보험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역보험은 재판매<sup>31)</sup>가 가능하기 때문임.

## 4. 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들은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음.<sup>32)</sup>

- 무보는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를 대기업 단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정부출연금<sup>33)</sup>으로 충당하고 있어 시장 개방 후 민간 보험회사들이 대기업 위주로 보험을 인수할 시 무보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무보의 효율이 인상될 소지가 있음.

- 시장 개방 시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에 진입해 국내 시장이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sup>34)</sup>

- 이에 대해 보험 실무자들은 무보의 독점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우량 물건이 이미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 무보는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판매의 손해 상쇄를 위해 대기업 물건에 높은 효율을 적용

29) 2010년 일본 무역 보험 관련 분야의 민간 보험 회사의 참가 상황에 대한 공청회 자료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

30) 2010년 일본 무역 보험 관련 분야의 민간 보험 회사의 참가 상황에 대한 공청회 자료 참조.

31)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본회사는 유럽의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된 전자제품을 다시 일본으로 수입해서 이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수출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32) 머니투데이(2015. 1. 12), “46년 만에 빗장 푼 수출보험, 중소기업엔 보험료 폭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1114573861437&type=1> 참조.

33) 무보가 정부로부터 최근 지원받은 출연금은 연도별로 2011년(1천억 원), 2012년(300억 원), 2013년(2천 5백 억 원), 2014년 예산(천 4백억 원)이었음.

3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114573861437&outlink=1>

- 국내 민간 보험회사는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하지 못함.
- 대기업들은 리스크가 작은 수출 건의 보험을 무보보다 유리한 요율을 제시하는 해외 메이저 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음.

■ 주효찬 외(2015)는 무보의 담보 한계, 대기업 위주의 보험 판매, 인수 거절 시 대안책 부재 등의 이슈를 제기하였음.

- 한국의 수출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615조 원 규모인데 이는 무보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sup>35)</sup>
- 무보는 대기업 위주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하여 실적의 90% 정도가 대기업 건<sup>36)</sup>이고 수출 1달러당 보험금 지급액이 세계 평균의 16%<sup>37)</sup>에 밖에 되지 않아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무보가 특정 보험 인수를 거절할 시 국내에서 타 보험사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기업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수출보험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어 더 이상 무역보험공사가 이 시장을 독점하도록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sup>38)</sup>

-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OECD는 『공적 수출 신용 지원 협정』<sup>39)</sup>을 통하여 회원국가의 수출보험을 규제하고 있음.
  - 본 협정은 수출무역보험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함.<sup>40)</sup>
- 일본과 중국<sup>41)</sup>은 무역보험 시장을 각각 2005년과 2013년에 민간에 개방하였음.

■ 보험 실무자들은 수출보증보험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손해율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관련 상품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정보 취득·관리 시스템, 채권추심을 위한 네트워크, 리스크 관리체계

35) 2013년 현재 무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3조 3천억 원, 2조 2천억 원 수준이고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막대한 정부출연금 투입되고 있음. 주석 10) 참조. 주효찬 외(2015)가 제시한 수치를 최근 값으로 대체하였음.

36) 주효찬 외(2015).

37) 박진근·신동천(2000) 참조.

38) 동아경제(2013. 10. 2), “단기수출보험 개방에 中企 우려 표명”.

39)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doclanguage=en&cote=tad/pg\(2015\)1](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doclanguage=en&cote=tad/pg(2015)1)

40) Chapter III, section 33, “General Principal” states “Export credit policies should be based on open competition and the free play of market forces”.

41) 왕차오·장동한(2015), 『중국 단기수출신용보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15 동계 보험학회.

등을 필요로 하여 이들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민간 보험회사들은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과의 제휴로 용이하게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모델은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의 시장 잠식을 부추기고 국내 보험회사의 역량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출보증보험은 손해율과 변동성이 높고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국내 우량 물건들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sup>42)</sup>

## 5. 시장 민간 개방 대응 방안



-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의 민간 보험회사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동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이 최근 10년간 민간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였음에도 민간보험회사가 수출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당국은 올해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17년까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하로 감소는 계획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당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과 동 시장에서의 국내 손해 보험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의 무역보험 개방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이나 증권화를 이용해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하여야 함.
  - 유럽의 솔벤시와 미국의 RBC는 재보험 이외에 보험증권화와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 리스크 전가

42) 수출보증보험 최근 10년(2004~2013년) 평균 손해율은 73%임. 동기 타 손해보험 종목별 평균 손해율은 화재(44.34%), 해상(67.63.7%), 자동차(81.91%), 보증(37.93%), 특종(61.28%), 장기 등임. <http://fisis.fss.or.kr/> 참조.

---

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의 지급여력제도인 RBC는 재보험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만을 인정하고 있음.

-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단기수출보험과 같은 종목에서 파생상품과 증권화를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지급여력제도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리스크가 과대평가되어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 등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하여야 함.

■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기수출 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기와 지급여력을 고려한 국가별·수입물품별·수출자별 요율 조정 및 한도관리
  - 외국 보험회사들은 상황에 따라 요율과 한도를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sup>43)</sup>
  - 보증보험은 경기에 따라 높은 손해율을 보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수출보험 리스크를 수출업종·수입자·수출자 등에 따라 경기 선행지표와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보증한도와 요율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이 수입국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보험, 파생상품, 보험증권화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보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해외 수입자 정보 수집 및 해외 채권추심 네트워크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무보 또는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은 심사노하우 축적을 통해 각 물건의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고 경쟁력 있는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수입자 신용도 및 재무 현황, 수입자 수입 실적, 수출자 수출 실적, 수입국의 정치적 안정도, 수입자·수출자 기존 보험 가입 규모 등 수집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kiri](#)

---

43) 박진근·신동천(2000) 참조.



#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준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 요약

-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 및 분석체계 현황을 ①데이터 통합, ②데이터 종류별 활용, ③조직 및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범주별로 해외 선진보험회사의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함.
  -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선진보험회사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보험산업과 규제당국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대다수 보험회사에 있어서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데이터 종류별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음성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종류의 비정형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데이터 분석 조직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험회사가 개별 부서별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데이터와 외부인력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임.
- 반면, 해외 선진보험회사의 경우,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함.
  -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략도 다양함.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비용절감을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실행 가능하게 함.
- 빅데이터 시대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선진보험회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경영전략 관련 연구과제로 ①가격차별화 vs. 상품차별화의 선택, ②사물인터넷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그리고 규제 및 정책 관련 연구과제로는 ③보다 자유로운 가격책정 환경 조성과 ④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시

## 1. 검토배경



-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sup>1)</sup>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sup>2)</sup>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빅데이터가 시장의 성장과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 발생
  - 보험회사간 경쟁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이 저위험군 고객을 끌어가기 위해 보험회사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해외 선진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 및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상품이 도입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조직이나 인력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혁신 사례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규제당국,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관심과 함께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자료도 일부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이지 국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 자료는 거의 없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현황을 ①데이터 통합, ②데이터 종류별 활용, ③조직 및 전략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소개
  - 그리고 각 범주별로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혁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이 혁신의 프로티어로부터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1) 핀테크(Fintech)는 일반적으로 IC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ICT 기술 중 현재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부각받는 것이 빅데이터임.

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Company.

## 2. 국내현황<sup>3)</sup>



### 가. 데이터 통합

-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생산·활용 주체별로 산재해 있는 경우, 부서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활용은 가능하나 전사적 관점에서의 목표 달성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에게 데이터 전사통합은 중요함.
  - 데이터 통합은 조직의 서비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들을 끌어 모아 가치 있는 정보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sup>4)</sup>
    - 빅데이터 시대는 전사 데이터 통합 위에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속도와 고급분석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sup>5)</sup>
  
- 데이터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는데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신규판매·고객유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행해야 할 프로젝트 중 하나임.
  -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은 산재해 있는 고객의 기본정보, 상품 구매현황, 과거이력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객데이터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고객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통합되지 못하고 산재해 있는 경우 데이터 접근 및 활용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객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또한 통합된 고객 데이터를 상품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예측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에 판매 및 이탈방지 업무 매뉴얼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 중 상당수가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으며,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데이터 전사통합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데이터 전사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데이터 전사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 중 일부 외국계 및 온라인전업사는 전사통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또한 아직 구축하지 못했거나, 구축되었더라도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3)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생명·손해보험회사 10개사를 선정,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함.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는 ①대형사, ②중소형사, ③외국계, ④온라인전업사로 구분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그룹별로 1~2개사를 선정.

4) 제이 크랩스(2015), 『로그를 사랑해』, 한빛미디어.

5) 김옥기(2014), 『데이터 과학: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 이지스퍼블리싱.

---

상태로 일부 대형사 및 외국계 보험회사만이 향후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 나. 데이터 종류별 활용

- IT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SNS의 등장 및 확산으로 기존에 기업 내·외부에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영역이 과거보다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과거 기업들은 생산·판매·회계 등을 포함하는 경영데이터, 고객의 기본정보·구매이력·반응이력 등을 포함하는 고객데이터 등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왔음.
  -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기존의 정형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데이터<sup>6)</sup>까지 활용한 기업전략 수립이 가능해짐.
- 보험산업 또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sup>7)</sup>으로 ① 신용평가정보 및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② 실시간 데이터, ③ 음성데이터, ④ 텍스트데이터, 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이 있음.
  - 보험산업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분석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절감, 신규 고객 확보, 영업전략 강화, 위기 시 선제 대응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표 1〉 참조).
-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5가지 유형의 데이터 가운데 음성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다른 유형의 데이터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보험회사가 콜센터를 통한 고객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있으며, 외국계 및 TM이 판매채널의 주를 이루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화를 완료하고 TM 영업전략 강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 일부 손보사에서 UBI(Usage-based insurance)<sup>8)</sup>상품 개발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일부 대형사 및 온라인전업사에서만 상품개발, 평판관리 등을 위하여 테스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

6) 규격이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문서기록, 음성정보, 영상정보,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이 있음.

7) 국내외에 보고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구성함.

8)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대한 정보를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표 2〉 데이터 유형 및 기대효과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예)	기대 효과
신용평가정보 라이프스타일	• 신용평가보고서 • 취미, 방문웹사이트, TV시청시간	• 언더라이팅 • 비용 절감
실시간 데이터	• 운전자 주행 행태 • 생활 습관(운동량 등)	• 상품개발 •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 • 인센티브 제공
음성데이터	• 고객-상담원 대화	• 마케팅 • 채널전략 강화 • 고객 만족도 제고
텍스트데이터	• 의료 영수증, 처방전 • 지급심사 관련 문서	• 보험금 지급, 조사 • 보험사기 적발
소셜 미디어 데이터	• SNS 상 상품관련 내용 등	• 평판관리 • 상품 개발 및 반응 테스트 • 위기관리 등에 적용 가능

#### 다. 조직 및 전략

■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산재한 데이터를 연결해야 하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분석조직과 인력에도 변화가 필요함.

- 기존의 분석조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데이터 통합만 구축할 경우, 데이터 소유와 활용에 대한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조직도 전사적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또한 빅데이터 분석 시 기업 특성에 따른 목표 설정 능력, 다양한 데이터의 이해·분석·해석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sup>9)</sup>의 발굴 및 영입이 중요함.

■ 그러나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의 다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조직 개편 및 관련 인력 영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형사 및 외국계 보험회사만이 새로운 형태를 시도함.

- 데이터 분석조직 형태는 주로 개별 현업부서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분산형인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로 나타남.
- 일부 대형사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빅데이터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sup>10)</sup>

9) 데이터 분석능력과 함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의미함.

10) Capgemini & EMC(2015), "Big & Fast Data: The Rise of Insight-Driven Business".

-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전략으로는 ① 빅데이터 관련 벤처기업의 투자, ② 소셜 미디어 업체 및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 ③ 빅데이터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④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⑤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데이터 활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sup>11)</sup>

■ 그러나 인터뷰 대상 보험회사의 다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전략에 도전하기보다 내부데이터와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수준에서의 전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공 확신이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새로운 전략 보다는 현 시스템을 유지 및 활용하는 형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대형사, 외국계 보험회사, 온라인전업사 등의 경우 외부전문가 영입이나 소셜 미디어 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하고 있음.

### 3. 해외사례



#### 가. 데이터 통합

■ 해외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해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물리적 통합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ICT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임.

-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거나, 새로 유입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집적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음(〈표 2〉 참조).
- 이러한 데이터 통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모바일 인터넷 등 최신 ICT 트렌드를 사업에 접합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

본 조사는 전 세계 10개국 약 1,000명의 기업 고위 의사결정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64%가 빅데이터가 기업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응답하였고, 56%가 향후 3년간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 응답하였음.  
11) 국내외에 보고된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구성함.

〈표 2〉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최근 데이터 센터 통합 및 구축 현황

회사명	내용
Allianz	2013년 140개의 데이터 센터를 6개로 통합하는 작업 시작
China Life	2014년 상하이에 데이터 센터 구축
State Farm	2014년 텍사스주 리치드슨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발표
Travelers	2015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데이터 센터 구축
UnitedHealth Group	2012년 미네소타주 차스카에 데이터 센터 구축

자료: 각 회사 보도자료.

- 미국 생명보험회사 Metlife의 경우,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인 ‘The Wall’을 구축하고, 이를 상품판매 및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활용함.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약 70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나뉘어 있던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
  - 이를 통해 콜센터의 고객관리 담당자는 고객문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맞춤형 고객 관리 지침을 제공받아 교차판매(cross selling)<sup>12)</sup>·상향판매(up selling)<sup>13)</sup> 기회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음.

## 나. 데이터 종류별 활용

- 해외 보험회사들은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종류의 데이터(비정형데이터, 외부데이터 등)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함.
  - 고객-마케팅 데이터(consumer-marketing data), 생명보험 관련 이력, 처방전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업무 효율 제고
  - 운전습관·생활습관과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가격차별화를 하거나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 Aviva는 고객-마케팅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함.
  - 고혈압, 당뇨,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예측을 기존 언더라이팅 방식에서 이용하는 의료 진단 정보(혈액 및 소변 샘플 분석 등)를 활용하는 대신 신용평가 보고서와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로 대체함.

12) 기존 고객에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하는 전략을 뜻함.

13) 기존 고객에게 보다 고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을 뜻함.

- 동 건강위험 예측모형은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기존 언더라이팅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이 소요됨(건당 \$130 → \$5).

■ 유럽계 생명보험회사 SCOR Global Life는 대규모 외부데이터를 내부데이터와 통합한 ‘Velogica’라는 자동 실시간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가시장(middle market)에서의 경쟁력을 높임.

-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받은 데이터를 태블릿 PC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짐.
  - 전체 계약심사 중 90%가 1분 안에 끝나고, 시스템이 아닌 심사자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경우는 5% 이하로, 상품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총 15분 이하로 절약
- 심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 관련 이력(Medical Information Bureau Report), 운전 기록(Motor Vehicle Report), 처방전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함.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언더라이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보험료가 비교적 낮은 증가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손해보험회사<sup>14)</sup>들은 자동차 주행정보,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동차 UBI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 차별화를 시도함.

- 사물인터넷의 일종인 텔레매틱스(telematics)<sup>15)</sup>의 발달로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
- 기존의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한 Pay-As-You-Drive 상품에서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등 운전습관을 추가로 활용하는 Pay-How-You-Drive 상품으로 발전
- 현재 주된 비즈니스 모형은 보험료 할인 모형으로 기존에 고위험군(저연령, 신규)으로 분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전행태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의 가격차별화 전략으로 활용
- 이러한 보험료 할인 모형은 뚜렷한 한계<sup>16)</sup>가 있기 때문에, 텔레매틱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sup>17)</sup> 제공을 통해 상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변화 중임.

■ 미국 건강보험회사<sup>18)</sup>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험회사 Discovery Life는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고,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14) Aviva, Generali, Progressive, Travelers 등.

15)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말함.

16) 보험료 할인 모형은 가격차별화가 어려운 시장(고위험군 운전자와 그 외 운전자간의 보험료 차이가 적은 시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고, 고객확장 측면에서 큰 약점(기존 고위험군 운전자만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이 있음.

17) 예, 운전습관 피드백 서비스, 원격 자동차 진단 및 감시 서비스, 자동 사고 신고 서비스, 도난 추적 서비스 등.

18) Cigna, Highmark, Humana, Oscar, UnitedHealth Group 등.

- 다양한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가 보급되면서 고객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짐.
  - 미국 스타트업 건강보험회사 Oscar는 하루에 목표로 한 보행수를 달성하면 하루 1달러, 1년에 최대 240달러를 돌려주는 상품을 출시함.
    -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보행수 측정이 가능해졌고, 측정 결과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운동량 체크 및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Discovery Life는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및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Vitality’를 도입하여 클레임 관리에 활용함.
    -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계약해지율과 사망률이 각각 52%, 34% 감소
- 네덜란드 선도보험회사 Aegon은 Facebook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 플랫폼인 ‘Kroodle’을 출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등에 활용함.
- Kroodle은 100% 모바일 기기 플랫폼을 사용하는 디지털 보험회사(digital insurer)로 서류작업이 일체 필요 없는 보험 플랫폼임.
  - Facebook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보험 구매가 가능함.
    - Aegon이 Facebook을 기본 플랫폼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2013년 네덜란드 Facebook 접속자는 약 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유럽 및 북미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함.
  - Aegon은 세계 최초 소셜미디어 기반 보험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음.
  - 고객 참여도가 높은 소셜미디어를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College Kroodle(학생 대상 보험), Travel Kroodle(여행자 보험, pay-as-you-go option 장착) 등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음.
  - 또한, 소셜미디어 상의 공개된 데이터와 고객 참여를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등 언더라이팅에 활용함.

#### 다. 조직 및 전략

- 해외 보험회사는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내부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외부인력을 영입하고 외부조직에 투자하거나 제휴를 맺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보험회사의 전략

데이터 종류	사례
벤처기업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A- 싱가포르 최대 ICT 연구기관(I²R)와 파트너십</li> <li>• Aviva -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혁신연구소(innovation lab) 운영</li> <li>• AXA - 벤처캐피털 펀드 조성(2억 유로 규모), 혁신연구소(innovation lab) 운영</li> <li>• Generali - 6개 벤처 기업에 투자 예정</li> <li>• Transamerica - Aegon과 Transamer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벤처 투자(OxData, CipherCloud, PolicyGenius 등)</li> <li>• USAA - 15개 이상의 벤처에 투자(TrueCar, Snapsheet, Saffron 등)</li> </ul>
전략적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XA - 소셜 미디어 업체와 전략적 제휴(Facebook, LinkedIn)</li> <li>• Discovery, John Hancock 등 - 웨어러블 기기 업체(Fitbit)와 전략적 제휴</li> <li>• State Farm - 가정보안업체(ADT)와 전략적 제휴</li> </ul>
외부 전문가 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XA, Lloyd, Aviva, Nationwide Mutual 등 - CDO(Chief Data Officer) 또는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새로 임명하거나 CIO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임명</li> </ul>
디지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표 2〉 참조)</li> </ul>
공동연구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일부 대형 건강보험회사 - 비영리법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를 공유</li> </ul>

자료: 각 회사 보도자료.

## 4.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분석체계 현황을 ①데이터 통합, ②활용 데이터의 범위, ③조직 및 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그림 1〉 참조).<sup>19)</sup>

- 형식을 갖춘 BI(Business Intelligence)<sup>20)</sup>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며, 외부데이터의 활용 또한 미흡한 상태임.

19) 그림에서 각론에 해당하는 ①데이터 통합 정도, ②활용 데이터의 범위, ③데이터 분석조직 형태의 경우 각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통합 정도가 높아지고, 외부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며, 분석조직의 형태가 전사형에 가까워진다는 방향성 정도만 보여주는 것임.

20) 기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의미하는데, CRM, ERP 등이 대표적인 예임.

〈그림 1〉 기업의 데이터 분석 경쟁력 발전단계



자료: 김옥기(2014), 『데이터 과학: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에서 인용, 내용 재구성.

■ 반면, 해외 선진보험회사의 경우,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함(〈그림 1〉에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 중에 있음).

-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략도 다양함.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비용절감을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실행 가능하게 함.

■ 빅데이터 시대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선진보험회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경영전략 관련 과제로 ①가격차별화 vs. 상품차별화의 선택, ②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제시
- 그리고 규제 및 정책 관련 연구과제로는 ③보다 자유로운 가격책정 환경 조성과 ④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시

### 가. 경영전략 관련 과제

■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임.

- 가격차별화가 뚜렷한 시장일수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 증가가 큼.
- 만약 가격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라면, 보험회사가 사업성이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한편, 빅데이터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전략 가운데 하나는 소셜 미디어 기업, 웨어러블 기기업체 등과 같은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임.

- 보험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데이터의 생성과 관련된 주체가 주로 보험회사와 고객뿐이었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 두 주체 이외에 소셜 미디어 기업,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관련 업체들도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
- 이를 Morgan Stanley(2015)<sup>21)</sup>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빅데이터 생태계 하에서 보험회사들이 다른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가져가야 하는지가 주요 경영전략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나. 규제 및 정책 관련 과제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통한 위험률 측정이나 가격책정 등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만약 위험률 측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기반을 둔 가격책정이 자유롭지 못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을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소비자의 동의(Consent)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보호체계에서 데이터 이용자의 책임(Accountability)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보호체계로의 전환<sup>22)</sup> 관한 연구 필요

-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행 고지 및 동의 체계 하에서는 수집 당시의 1차적 용도 이외의 다양한 2차적 용도를 통한 데이터의 옵션 가치 실현이 어렵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A라는 1차적 용도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B라는 2차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현 체계 하에서는 일일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움.<sup>23)</sup> [kiri](#)

---

21) Morgan Stanley(2015), “Insurance and Technology—Insight: The Emerging Role of Ecosystems in Insurance”,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2)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케네스 쿠키어(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책임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의 기본방향은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의 위험 평가와 안전장치를 제대로 준수하게 되면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2차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규제당국의 역할은 데이터 이용의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과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시킬 안전장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임.

2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금융위원회, 2015. 6. 3.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비식별화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여러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비식별화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 요약

- 2011년 이후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차역마진 손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이익으로 보험부채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니폰 생명과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경우 2011년부터, 그리고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운용자산 이익률이 보험부채 적립이율보다 높아졌음.
- 그러나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는 경영성과 관리(Earnings Management)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은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임.
  -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이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이자부담은 변하지 않음.
  - 단지 미래의 이차역마진 손실을 현재에 실현시켜 경영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킨 것임.
  - 따라서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자본 감소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보험영업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도 확충하고 있음.
- 한편 대만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익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과 부동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순이익은 환율변화와 해외 국채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투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이차역마진 손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성과 관리가 필요함.
  -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차역마진 손실 관리를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함.
  - 대만의 예와 같이 운용자산 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음.

## 1. 검토 배경



- 저금리 지속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일본의 이차역마진 손실 규모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4.5%로 보험부채(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 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3년에 이어 이차역마진(보험부채 적립이율이 운용자산 이익률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sup>1)</sup>
    - 2014년 이차역마진은 0.5%p로 2013년 이차역마진 0.7%p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부문 손익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평가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2015년 3월 운용자산이익률 2.74%, 보험부채 적립이율 2.48%를 기록하며 이차이익을 기록함.<sup>2)</sup>
    - 메이지 야스다, 니폰 생명은 2011년 3월 이후 이차역마진이 해소되었음.
    - 스미토모 생명의 경우 2014년 3월 157억 엔의 이차역마진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차역마진 손실은 2011년 3월 906억 엔에서 749억 엔으로 감소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차역마진 손실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준비금 추가 적립을 통한 보험부채 적립이율 하락임.<sup>3)</sup>
  - 이차역마진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하락하든지 운용자산 이익률이 상승해야 하는데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하락한 원인은 조달비용이 높은 보험부채의 만기 도래 및 해약, 조달비용이 낮은 보험부채의 증가, 준비금 추가 적립을 통해 보험부채 적립이율을 낮추었기 때문임.
- 한편 대만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차역마진은 200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수익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해외증권투자 비중은 2014년 50.25%로 2000년 4.6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이차역마진은 2005년 수준과 유사한 약 100bp 수준임.
  -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순이익은 해외증권투자 비중의 확대로 환율변화와 해외 국채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1) 금융감독원(2015. 4. 24).

2)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3) 실질 보험부채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를 인하는 것이 아닌 장래 이차역마진 손실 총액의 현재가치만큼을 조기에 적립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이율을 인하는 것임.

- 본고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저금리 장기화로 이차역마진 손실이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대응이 필요함.
  - 이차역마진 대응을 위한 일본의 자산운용 전략과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 사례 및 대만의 자산운용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일본의 준비금 추가 적립과 보험부채 적립이율 하락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2007년 3월부터 1996년 이전에 판매한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보험부채 적립이율을 낮춤.<sup>4)</sup>
  - 일본 보험업법 시행령 69조 5항은 계리적 현금흐름 예측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규모를 판단해야 하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sup>
    - 2007년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국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기 시작함.
  - 니폰 생명과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2007년 3월부터 5년간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음.
    - 니폰 생명은 2007년 3월 2,891억 엔을 세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함.
  - 다이이치 생명은 2007년 3월부터 1996년 이전에 판매한 종신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보험부채 적립이율을 하락시킴.
    -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율은 2007년 3월 3.18%에서 2015년 3월 2.48%로 하락하였고 운용자산 이익률은 해외 주식 및 외화표시 채권투자 확대에 상승함.
    - 이차역마진 금액은 2006년 3월의 1,220억 엔에서 2015년 3월 692억 엔으로 감소함.<sup>6)</sup>

4) 일본의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5) Kunio Ogihara(2008), "Financial Overview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 Fiscal 2007", NLI Research, 2008, 9, 26.

6) 이차역마진 금액은 이차역마진을 책임준비금에 곱한 금액으로 정의됨.

〈표 1〉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이차역마진과 추가 준비금 적립 추이

(단위: %, 십억 엔)

구분	2007.3	2008.3	2009.3	2010.3	2011.3	2012.3	2013.3	2014.3	2015.3
운용자산 이익률	3.01	3.14	2.70	2.56	2.46	2.38	2.35	2.67	2.74
준비금 추가 적립	-	186	104	96	113	106	151	127	123
보험부채 적립이율	3.18	3.13	2.96	2.89	2.81	2.73	2.66	2.57	2.48
이차역마진 <sup>1)</sup>	42.6	-1.1	64.8	82.8	90.3	91.4	61.1	-28.0	-69.2
ROE	-	-	5.86	8.04	7.29	2.28	2.39	2.47	4.34
ROA	-	-	0.40	0.27	0.18	0.05	0.06	0.09	0.21

주: 1) 이차역마진 규모는 추정치임.  
 자료: 다이이치 생명; Bloomberg.

■ 보험부채 적립이율 하락으로 이자율차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영업이익이 증가함.

- 일본의 14개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월 3조 1,920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85억 엔 증가하였음.
- 일본 금융청은 14개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의 주된 원인을 이차역마진 부담 완화에 따른 이자율차익 증가로 분석함.

〈표 2〉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이익 추이<sup>1)</sup>

(단위: 억 엔)

구분	2011.3	2012.3	2013.3	2014.3	2015.3
수입보험료	228,677	252,260	254,914	229,383	239,526
영업이익	19,938	23,503	24,318	27,835	31,920
증감	-	3,565	815	3,517	4,085
총자산	1,896,077	2,011,458	2,183,307	2,255,031	2,412,998

주: 1) 주요 생명보험회사는 니폰, 다이이치, 스미토모, 메이지 야스다, 타이요, 다이도, 아사이, 후쿠쿠, 미쓰이, 소니, Gibraltar, AXA, Alfac, MetLife 등임.  
 자료: 일본 금융청.

■ 그러나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이율이 인화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변하지 않음.

-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더라도 보험부채 만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 이차역마진을 발생시키는 보험부채는 유지되고 있음.

■ 일본의 준비금 추가 적립을 통한 이차역마진 손실 부담 완화는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 방안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 관리(Earnings Management)에 불과함.

- 자본확충 없이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것은 미래의 손실을 미리 인식함으로써 향후 당기손익을 개선시키는 것에 불과함.

### 3. 일본의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



#### ■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은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한 자본 확충임.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영업이익은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 등 삼이원의 합계인데 위험률차익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자율차익은 이차역마진으로 적자를 지속함.<sup>7)</sup>
-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위험률차익이며 위험률차익이 흑자를 지속한 원인은 건강보험 등 제 3보험 규제 완화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임.<sup>8)</sup>

〈표 3〉 일본 7대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별 영업이익 추이<sup>1)</sup>

(단위: 조 엔)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위험률차익	2.05	2.06	2.07	1.82	1.76	1.82	1.60	1.75	1.73
사업비차익	0.82	0.72	0.57	0.46	0.33	0.24	0.22	0.22	0.23
이자율차익	-0.92	-0.70	-0.43	-0.26	-0.53	-0.45	-0.28	-0.25	-0.17
영업이익	1.95	2.08	2.21	2.02	1.56	1.61	1.54	1.72	1.79

주: 1) 7대 생명보험회사는 니폰, 다이이치, 스미토모, 메이지 아사다, 아사이, 후코쿠, 미쓰이 등이며 사업비차익은 신계약비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다이와 증권(2014).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해외증권투자 비중은 2003년 16.4%에서 2013년 22.9%로 확대되었고 운용자산 이익률은 2010년 1.87%, 2012년 2.65%, 2013년 2.68%로 상승함.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2013년 총자산 대비 운용자산 비중은 국채 36.9%, 국내 주식 6.8%, 해외증권 22.9%, 대출 10.3%임.
  -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외채권 투자비중을 약 17%로 유지

7) 이자율차익은 운용자산에 대한 이익률로 이차역마진이 책임준비금에 대해 정의되는 것과 상이함.

8)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영업이익을 이자율차익, 위험률차익, 사업비차익의 합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사업비차익에는 신계약비가 포함되지 않음. 김석영 외(2014), 『보험산업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하고 있고 해외 주식투자 비중을 4.9%에서 6.8%,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8.5%에서 10.5%로 확대함.

- 또한 해외채권 투자 대상국을 2010년 19개 국가 8개 통화에서 2014년 3월에는 31개 국가 20개 통화로 확대함.

● 니폰, 메이지 야스다,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자산운용 다변화와 운용수익률 제고를 은행이 주관하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함.

-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경우 일본 정부의 국책사업에 투자함.

-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미국 농산물 트레이딩 회사인 Bunge社에 대한 8년 만기 대출이며 생명보험회사 3사의 대출 규모는 2억 9천만 달러임.

■ 아울러 자산부채 듀레이션 축소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이차역마진을 초래하는 보험부채는 남아 있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산부채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장기 국채비중을 늘리고 있음.

- 무디스는 일본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2.5년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96년 이전 판매된 보험부채가 11.1조 엔으로 전체 보험부채의 21.3조 엔의 52%임.

- 대형 4사의 경우 잔존 만기 10년 미만 국채비중이 2000년 88.3%에서 2012년 22.3%로 줄었고 잔존만기 10년 이상 국채비중은 11.7%에서 77.7%로 증가함.

● 니폰 생명보험의 경우 ORSA 내부모형을 운용하고 있음.

-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엔화와 일본 국채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음.

#### 4.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 전략



■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예정이율 6% 이상의 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나 2000년부터 금리가 하락하여 이차역마진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 대만의 평균 보험부채 적립이율은 4~5%, 장기 국채의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1.7%,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은 5~8년 사이로 추정됨.

●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은 1%p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sup>9)</sup>

〈표 4〉 한국, 대만, 일본의 생명보험산업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2013년 수입보험료 규모	910억 달러	4,230억 달러	750억 달러
전세계 점유율 비중	3%	16%	3%
평균 보험부채 적립이율	5~6%	2~3%	4~5%
장기 국채 10년 평균 수익률	4.5%	1.3%	1.7%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0~2년	2~3년	5~8년

주: 2004년부터 2014년간 국고채 10년물 평균 이자율임.  
 자료: Moody's(2015. 3), "Low Interest Rates are Credit Negative for Insurers Globally, but Risks vary by Country".

■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해 이차역마진에 대응하고 있는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증권투자 및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sup>10)</sup>

- 1992년 총자산의 최대 5%가 해외투자로 허용되었으나 2003년 35%, 2007년 45%로 확대됨.
  - 대만의 경우 장기 국채 공급 물량이 적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왔음.
  - 2000년 16%이었던 생명보험산업의 해외증권투자 비중은 2014년 50.25%로 상승했음.
  - 2014년에는 일부 해외투자 자산을 해외투자 허용 한도에서 제외하여 해외투자 허용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함.<sup>11)</sup>
-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08년 4.02%에서 2014년 5.90%로 상승함.
  - 투자가 허용된 해외 회사채의 신용등급 및 투자금액 제한, 중국 본토를 비롯한 해외 부동산 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표 5〉 주요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2013년 주요 운용 상품 비중

구분	은행예금(%)	국내증권(%)	해외증권(%)	대출(%)	부동산(%)	총자산 (조 대만달러)
2000	15.24	34.40	4.62	34.16	0	2.5
2008	6.64	43.09	30.31	15.64	4.02	9.2
2014	2.30	31.27	50.25	9.01	5.90	18.6

자료: 대만 금융위원회.

9) Moody's(2013. 7).  
 10) Moody's(2015. 3), "Low Interest Rates are Credit Negative for Insurers Globally, but Risks vary by Country".  
 11) 대만 생명보험회사가 금융당국의 승인하에 투자한 국내 채권이나 주식 가운데 외국에 등록되거나 상장된 채권이나 주식 투자, 대만 생명보험회사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투자한 보험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가치 등을 해외 투자 허용한도에서 제외함.

■ 해외증권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대만 생명보험산업 수익성 변동성에 미치는 외국 국채 수익률과 환율변동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

- 해외증권투자 비중이 높은 대만의 경우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진 2008-2011년 간 평균 순이익은 손실을 기록하였고 순이익의 분산은 2002년부터 2007년 기간에 비해 확대됨.

〈표 6〉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기간별 평균 순이익과 대만 달러 환율

(단위: 백만 대만달러, 십억 엔)

구분	2002~2007		2008~2011		2012~2013	
	대만	일본	대만	일본	대만	일본
평균 순이익(A)	31,374	1,414	-35,664	1,322	57,396	2,833
순이익 변동성(B)	20,978	469	61,572	1,586	30,963	380
비율(A/B)	1,495	3,015	0,579	0,839	1,854	7,455
평균 미국 국채금리	4.4%		3.2%		2.1%	
미국 국채금리 분산	0.3%		0.4%		0.4%	

- 대만 생명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강화되고 있음.
  - 대만의 보험감독당국은 2001년부터 미국식 RBC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ERM, ORSA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5. 결론 및 시사점



■ 대만과 일본의 사례는 보험영업이익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와 이를 통한 자본확충이 이차역마진 손실 누적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함.

- 이차역마진 손실이 위험률차익 등으로 보전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90년대 후반 파산한 일본 보험회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이차역마진임.
- 이차역마진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낮은 보험상품 비중을 늘리고 위험률 차익 비중을 증가시켜야 함.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장기간 지속된 이차역마진으로 투자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보장성 보험

에서 창출되는 위험률차익으로 이차역마진 손실을 관리하였고 해외사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를 위한 준비금 추가 적립 재원은 영업이익임.
- 2001년 건강보험 관련 규제 완화, 2002년 일본 공적의료보험 본인부담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며 건강보험 시장이 확대되었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가능하였음.

■ 보험산업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이차역마진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차역마진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자본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성과 관리가 필요함.
- 감독당국은 보험산업 고유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경영성과의 시점간 배분을 통해 이차역마진 손실이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kiri**

**<별첨>**

■ 보험부채 준비금 추가 적립의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예를 들어 적립이율(예정이율) 5%의 5년 만기 보험부채 1억 원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2.5%로 가정하면 준비금 적립 1년 후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손실규모는 250만 원임.
- 현재 보험부채 1억 원에 대해 보험회사는 매년 책임준비금 500만 원을 예정이율 5%로 적립하여 5년 후 보험부채는 1억 2,760만 원이 되어야 함.
  - 1년 후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500만 원을, 2년 후에는 530만 원, 3년 후 550만 원, 4년 후 580만 원, 5년 후에는 610만 원을 적립해야 함.
- 보험부채 1억 원의 운용수익은 1년 후 250만 원이나 보험부채 적립금액은 500만원이므로 이차역마진 손실 규모는 1년 후 250만 원(2.5%×1억 원), 2년 후 260만 원, 3년 후 260만 원, 4년 후 270만 원, 5년 후 280만 원임.

〈첨부 표 1〉 준비금 추가 적립의 부채비용 감소 효과 시뮬레이션

(단위: 억 원)

구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준비금(적립이율 5.0%, A)	1.000	1.050	1.103	1.158	1.216	1.276
준비금 적립 금액	0.000	0.050	0.053	0.055	0.058	0.061
운용수익(2.5%, B)	0.000	0.025	0.026	0.026	0.027	0.028
이차역마진(B-A)	0.000	0.025	0.027	0.029	0.031	0.033
준비금 추가 적립	-	0.106	-	-	-	-
준비금(적립이율 2.5%)	1.000	1.156	1.185	1.215	1.245	1.276
준비금 적립 금액(C)	0.000	0.156	0.029	0.030	0.030	0.031
운용수익(2.5%, D)	0.000	0.025	0.029	0.030	0.030	0.031
이차역마진(D-C)	0.000	0.025	0.000	0.000	0.000	0.000
당기손실	-	0.131	0.000	0.000	0.000	0.000

주: 1년 후부터 5년 후까지는 1억 원×(1+부담이율 및 운용수익률)<sup>N</sup> 으로 계산되었고 N은 기간임.

- 1년 후 이차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년 후 준비금 적립 금액 500만 원 이외에 1,060만 원의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함.
  - 1년 후 보험부채 적립이율 5%에 해당하는 500만 원에 장래 발생할 이차역마진 손실 금액의 현재가치인 1,060만 원을 추가하여 책임준비금 1,560만 원을 적립함.
  - 1,056만 원을 적립하고 나면 1억 1,560만 원이 2.5%로 운용되어 2년 후부터 준비금 적립 금액과 운용수익은 동일하게 됨.
  - 추가 적립한 1,060만 원과 1년차 이차역마진 250만 원은 당기손실로 인식됨.



#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정봉은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 요약

-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밝혔음.
  - 단기적으로는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판매 관행을 시정하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함.
  -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직접 물리기 위한 제도정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임.
- 이번 개편안 가운데 단기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하게 고지해 전속 또는 비전속 채널별 상이한 의무와 권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중장기 제도 개선안에 관해서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법적인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판매자 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문제점은 계약 단계의 판매자 설명의무가 추상적이고 명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불완전 판매 관련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우리나라 판매자 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있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상품 상담시 비교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설명단계에서부터 판매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세분화하고 판매프로세스상 설명 및 조인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의향파악의무와 공정조언 원칙 등을 판매단계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의 실질적 배상자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빈발하는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판매자의 고객 의향파악의무와 비교추천 이유에 대한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 검토 배경



- 금용당국이 최근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밝혔음.
  - 이 같은 제도 개편안은 판매채널간 경쟁 가속화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양산되면서 이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리점 위주의 판매채널을 중개형태로 전환해 공정한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직접 부과하고 모집질서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임.
  
-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법적 대리관계를 중개형태로 전환하는 제도 준비에 앞서 판매자 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은 없는지 해외사례를 통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모집질서 건전화와 판매자 책임 강화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구조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변경에 앞서 판매자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및 제도정비가 필요함.
  
- 현행 판매자 책임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보험계약 단계부터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상품 상담시 비교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성도 있음.
  - 일본에서는 보험상품 조언 및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향 파악의무와 비교추천시 추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해 분쟁 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고객의향 파악의무와 공정조언 원칙 등을 판매단계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배상자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본고는 국내외 보험산업 판매책임 강화 관련 제도의 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변화의 함의를 도출한 뒤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국내 판매책임 강화 동향

- 감독당국은 판매채널 대형화에 따른 불건전한 모집질서를 바로잡고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3단계 보험 판매채널 제도정비 계획을 밝혔음.
  - 1단계는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불공정 판매관행을 시정하고, 이같은 자정노력이 미흡할 경우 2단계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3단계 중장기 방안으로 판매채널 제도를 대리인 제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보험중개인(브로커) 제도로 점차 유도함.
    - 1단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추가수당, 판촉비, 임차료 지급 등을 제한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과도한 정착금 지원, 선급수당 지급 등을 금지하기로 함.
    - 2단계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설계사가 소속 판매채널(대리점명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3단계에서는 판매자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대리관계를 중개관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표 1〉 보험 판매채널 정비 계획안

구분	방향	내용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규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li> <li>• 법인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모집수수료 이상 초과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li> <li>•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li> </ul>
3단계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 보험업법 개정(2016년~)	보험대리점 등을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시키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8. 27),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재정리.

- 국내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자의 설명의무 대상은 보험 계약의 기본사항 정도로만 열거되어 있고 판매자 신분에 대한 고지 의무나 기록의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매자 책임 규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sup>1)</sup>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인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나 계약의 유·무효와 관련된 계약 체결단계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보험회사의 의무대상일 뿐 정작 모집인의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1) 이태열 외(2015),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표 2〉 설명의무의 주체에 따른 보험업법

설명 의무 주체	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보험회사
보험업법 및 시행령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3항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li> <li>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li> <li>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li> <li>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li> <li>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li> <li>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 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li> <li>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li> <li>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li> <li>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li> <li>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계약 체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li> <li>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li> <li>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li> </ul> </li> <li>2. 보험금 청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li> <li>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li> </ul> </li> <li>3. 보험금 지급 단계 :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li> </ol>

자료: 이태열 외(2015),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p. 57.

-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판매책임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설계사의 신분고지를 명확히 하고 비교추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완할 사항이 남아 있음.
  - 단기적으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 법적으로 상이한 판매채널별 의무와 권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개편안을 추진함에 있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법적 대리관계를 중개관계로 전환하는 제도 정비에 앞서 판매자 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과 제도 마련 방안은 없는지 해외사례를 통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판매자가 설명단계에서부터 지켜야 할 의무를 세분화하고 판매프로세스상 설명 및 조인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향후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음.

### 3.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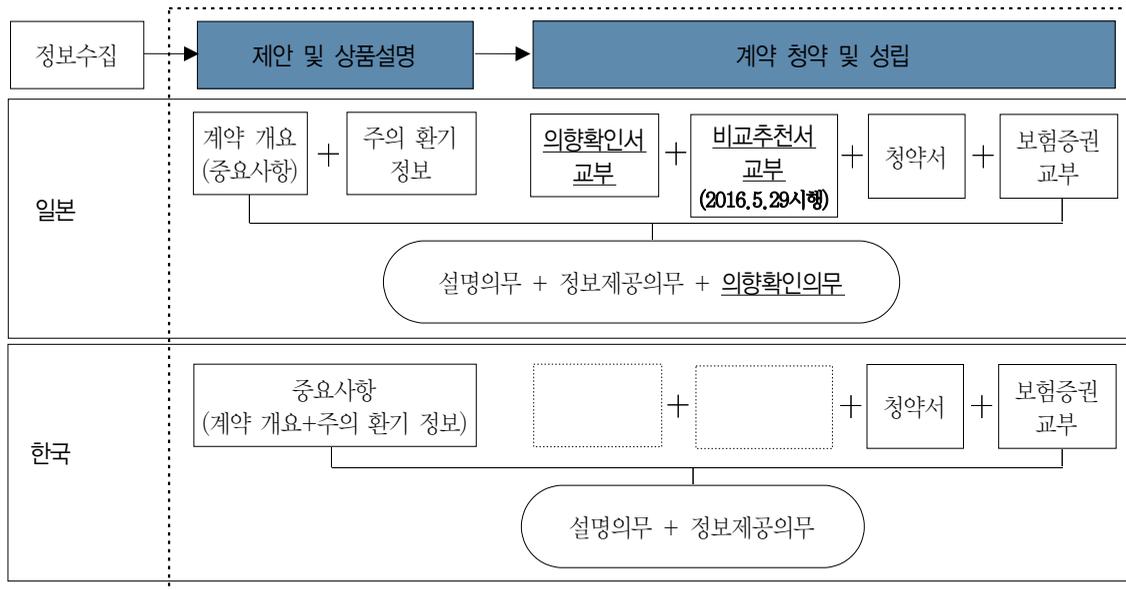


- 주요국에서는 판매프로세스상 발생하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계약단계에서부터 판매자들이 엄수해야할 각종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시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

#### 1) 일본

- 일본에서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의향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상품 비교추천시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참조>).
- 일본에서는 사전에 파악한 고객의 의향과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설계 및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향파악·확인 의무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비교추천을 하는 독립대리점의 경우에는 비교추천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타 보험상품에 대한 의향파악의무는 부과되고 있지 않음.

<그림 1> 보험 판매 프로세스 비교



■ 일본은 의향확인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2014년 3월 개정 법안(2016. 5. 29부터 시행)에 따라 복수보험사의 상품 중에서 비교추천하여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는 비교추천 상품 가운데 특정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였음.

- 강화된 법안에 따르면 비교추천이 가능한 독립대리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파악한 의향과 특정상품을 권유하는 이유, 제시하는 보험계약의 고객의향과의 합치여부 등을 고객에게 서면 및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함.
  - 의향확인서 작성교부의 대상상품은 모든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품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포함됨.
  -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의향확인서와 별도로 적합성 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해야함.
-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모집대리점의 경우, 고객에게 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대리’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고 ‘공평, 중립’ 등의 용어사용은 사실상 자제하도록 조치함.<sup>2)</sup>

〈표 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의향확인서 사례

1. 보험 가입 시 고객 의향(니즈) [취급자 기입란]			
고객으로부터 들은 의향(니즈)이 이하의 O를 표시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복수선택가능)			
① 사망 시 보장	② 질병/부상 시 보장	③ 암/3대 질병 보장	④ 저축 (교육자금 / 노후생활자금준비 등)
⑤ 사업보장	⑥ 종업원의 복리후생	⑦ 퇴직금 대비	
[기타 특기사항란]	상기 또는 상기 이외에 고객이 특히 요망하는 의향(니즈) 등 고객의 의향(니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 등		
2. 신청에 있어서 고객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고객 기입란]			
구분	항목	평가	
(질문 1)	보험상품(주보험/특약)의 내용은 제안한 내용으로 괜찮은지?	①예 / ②아니오	
(질문 2)	보험금액/급부금액은 제안한 내용으로 괜찮은지?	①예 / ②아니오	
(질문 3)	보험기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으로 괜찮은지?	①예 / ②아니오	
(질문 4)	보험료납입기간/납입방법/보험료, 무배당보험의 경우 배당금이 없는 것에 대해 제안한 내용으로 괜찮은지?	①예 / ②아니오	
(질문 5)	제안한 보험상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향(니즈)에 따른 내용인지? * 질문 5가 [아니오]의 경우 다시 플래시를 제안함.	①예 / ②아니오	

2) 금융심의회(2013. 6), “新しい保険商品・サービス及び募集ルールのあり方について”, p. 18.

-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판매자의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판매자의 의향파악 또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보험법규 위반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됨.
  - 복수회사 상품의 비교판매시 명확한 정보제공과 특정회사 추천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발생시 이같은 서면을 근거로 보험업법 위반을 입증하여 보험 회사의 판매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용이해질 수 있음.

## 2) 영국

- 영국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판매자 신분 공시강화, 보험상품 가입시 고객의향파악의무 부과,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정비작업이 일찍 이루어진 편임.
- 영국 감독규정에 따르면 판매자는 고객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고객의 의향과 니즈를 파악·확인한 후 의향확인서(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를 교부하여야 함.<sup>3)</sup>
  - 투자형·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보험에서의 의향파악의무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의향파악과 적합성보고서(suitability report) 교부의 의무가 부과됨.
    - 고객의향, 투자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most suitable)의 상품을 추천권유하여야 한다는 최적의 조언의무(best advice)가 부여되어 있음.<sup>4)</sup>
    - 보험상품 의향확인서에는 고객의 니즈, 어드바이스(추천권유)의 유무, 어드바이스를 한 경우에는 해당상품에 대한 추천이유(권장이유특정의무)가 포함되어야 함(ICOB4.4.1R).
    - 적합성보고서에는 고객의 니즈,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거하여 추천권유한 상품이 고객에게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아울러 고객들이 전속 또는 독립 판매채널의 신분별 차이<sup>5)</sup>에 따른 공정조건 여부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 신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정분석 조건의 원칙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판매자의 신분 공시 대상으로는 보험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는 물론 특정보험사와의 지분 보유관계 등도 밝혀야 하며, 특히 공정분석에 의거하여 조건을 행하는 자인지(비전속채널), 회사 또는 복수사와의 전속적인 관계에서 판매를 하는 자인지도 밝혀야 함(ICOBS 7.2.1R 및 ICOBS 7.2.3R).

3)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업무행위규칙에서 투자형·저축형보험은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가,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ICOBS(Insurance: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가 적용됨.

4)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모든 니즈에 적합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차선의 상품을 추천권유할 수 있음.

5) EU보험중개지침에서 보험중개자(insurance intermediary)에는 독립중개자 이외에 전속중개자도 있으므로, 모집개시 전에 자신의 신분(대리인 또는 중립인)을 밝혀야 함. 이는 미국 뉴욕의 경우에도 모집개시전에 자신의 신분이 보험사의 대리인(agent)인지 고객의 대리인(broker)인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NYISCS § 3209(h)).

- 공정분석 조언을 하는 신분을 밝혔을 경우에는 비교추천의 근거 및 공정분석 조언의 원칙에 따라야 함(ICOBS 4.1.6R, ICOBS 5.2.2R 및 ICOBS 5.3.1R).<sup>6)</sup>

■ 영국에서는 또한 COBS 및 ICOBS규칙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영국의 금융감독법(FSM법) 제 150조)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보험중개자(insurance intermediary)의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 배상책임보험계약은 모집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방어비용 및 옴부즈만 부과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MIPRU 3.2.1 및 3.2.4).<sup>7)</sup>
  - 영국 감독규정상 보험중개회사의 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단일 청구당 112만 유로이며 연수익의 10%가 168만 유로를 상회할 경우에는 최소가입요구 금액은 30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됨.(MIPRU 3.2.7)<sup>8)</sup>
  - 배상책임 설정한도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정 검토함(MIPRU 3.2.7A).

## 4. 문제점 및 시사점



■ 해외사례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문제점은 판매자의 계약 단계의 설명의무가 추상적이고 명시적으로만 제시됨에 따라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책임 규정이 불명확하다는데 있음.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상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명확한 의무조항은 설명의무(제 95조 2항), 적합성의 원칙(제95조 3항) 정도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임.
  - 현행 보험업법이나 시행령 상에서는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계약상의 중요 사항만을 설명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의향과 불일치되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렇다 할 책임을

6) EU보험중개지침(12조)을 준용한 것으로서, 중개자가 시장의 충분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분석한 후에 조언(공정분석 조언) 할지, 특정회사의 전속적 입장에서 중개를 할지, 전속은 아니지만 공정분석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객에게 조언하기 전에 표명해 두어야 함.

7) Prudential sourcebook for Mortgage and Home Finance Firms and Insurance Intermediaries.

8) 김현수 외(2014),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p. 153.

물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시 의향파악의무와 보험계약 비교추천시 해당 상품 추천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해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보험중개인(브로커)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데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외사례를 참조해 법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sup>9)</sup>

■ 보험 전상품에 대한 의향확인 의무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복가입이나 위험보장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이와 같은 고객의향 확인과 비교추천의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민원의 4분의 1 이상이 보험모집단계에서 발생(2013년 상반기 기준 보험모집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전체 보험민원의 25.7%)하고 있음.

– 모집단계에서 의향파악의무와 비교추천 이유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할 경우 향후 소비자 민원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sup>10)</sup> **kiqi**

9) 현재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록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대리상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10) 박선영·권오경(2015),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험연구원.



##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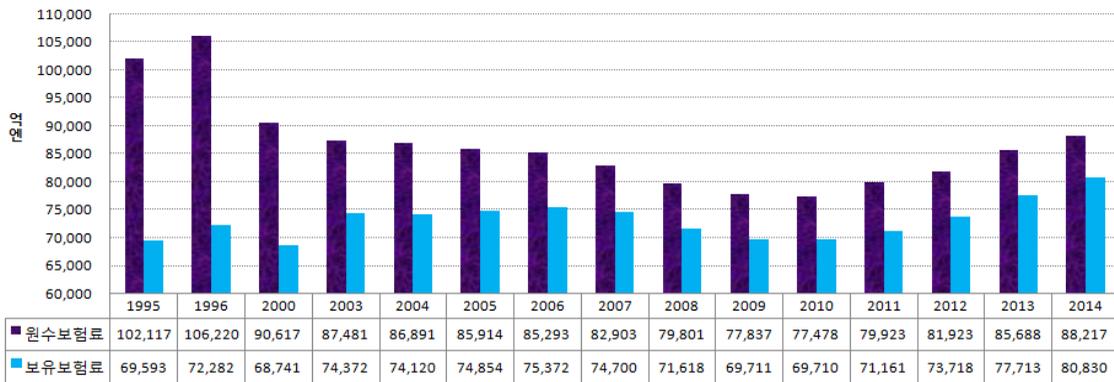
- 일본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 후반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 상호 진입 허용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보험회사 구조조정으로 동경해상, MS&AD(삼성주우해상), 손보재팬 3대 보험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들 그룹은 손보 전체보험료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또한 동 그룹들은 손보시장이 1996년에 최고 규모에 도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외 보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였음.
- 3대 손보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출하여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동경해상은 2015년 3월 현재 해외 보험사업의 보험료와 순이익이 그룹전체의 각각 41.6%, 58.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성과를 이루고 있음.
  - MS&AD와 손보재팬은 동경해상 성과의 50% 미만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상위 6개사가 90년대 이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순이익 기여도는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내 손보사들은 2014년 6월 말 현재 8개국 23개 점포에서 거수한 해외시장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1% 미만이며 순이익도 1~3% 이내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 보험사업 진출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사들은 영업중심 사업모형에서 수익성에 기반한 보유사업 모형으로 재편을 준비하고, 전통적 손해보험종목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가격결정, 담보조건 설계, 재보험 결정 등의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에 차별적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1996년에 원수보험료가 사상 최고액인 10조 6,220억 엔에 도달한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 하락과 저축성보험의 감소로 점차 성장이 줄어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상품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음.
  - 특히 1990년대에 자회사 방식의 손·생보 상호진입 허용으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사업에 진출하여 종합보험회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부실보험회사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된 동경해상HD, 삼성주우해상(MS&AD HD), 손보재팬(SOMPO HD)그룹으로 재편되었음.
  - 이들 그룹은 국내 원수보험시장의 저성장 보완대책으로 해외 원보험과 재보험사업 전략을 신흥시장과 선진국시장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추이



- 일본의 3대 손보그룹은 전체 손보시장 보유보험료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험성과의 상당부분을 해외시장에서 창출하여 지속 성장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3대 그룹의 해외시장 보험료와 순이익은 그룹전체에서 각각 12~40%, 1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음.
- 본고는 국내 손보사보다 먼저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 상황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보험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전략과 성과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2. 일본 3대 손보 그룹의 해외진출 전략



### 가. 동경해상 그룹

- 동경해상 그룹은 그룹의 주력기업인 동경해상이 1996년 생명보험 자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2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 이후 현재와 같은 그룹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3월 말 현재 자회사 179개사, 관련회사 26개사로 구성된 지주회사로 국내 손·생보 사업과 해외보험사업, 금융일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동 그룹은 구미 선진국,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국 시장 34개 국가 469개 도시에서 지속적인 이익 확대와 리스크분산 관점에서 해외 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3월 말 현재 해외사업은 동 그룹의 전체 보유보험료의 41.6%,<sup>1)</sup>당기순이익의 58.8%를 차지하고 있음.
  
- 동경해상의 해외사업은 창업초기부터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계 기업이 아닌 현지고객에 대한 보험사업을 위해 성장성이 있는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동경해상은 현지시장에서 영업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언더라이팅 대리점(U/W Agency)을 통한 인수전략을 실행하였음.
    - 그러나 동 전략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해외의 현지 보험사를 인수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시장상황의 돌변에 따라 실패<sup>2)</sup>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해외 보험사업의 실패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영업확장에만 관심을 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1987년에 해외 보험사업 기본전략을 만들어 수익성 중심 인수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쟁력 확보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현지법인 설립 등 신규 진출방식보다는 큰 자본을 투입해 현지 경쟁력 있는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동경해상 그룹은 2000년에 들어 새로운 해외 보험사업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현지 고객에 대한 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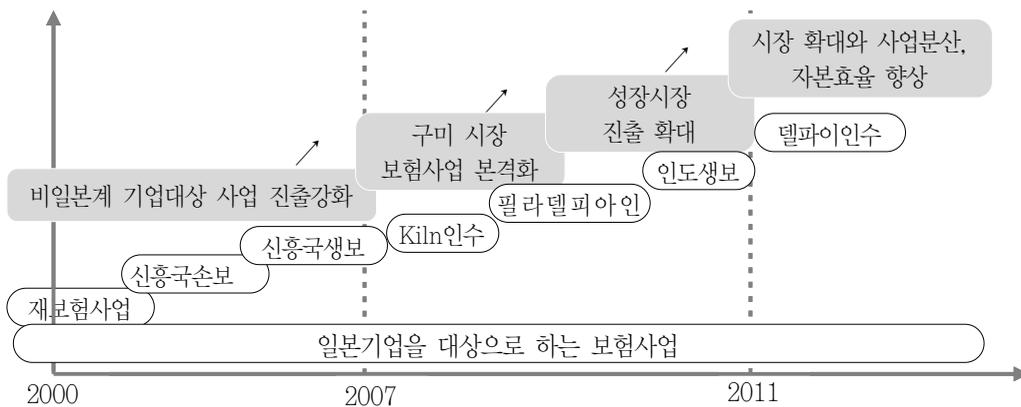
1) 2015년 3월 말 현재 해외사업보험료 1조 3,026억 엔에서 아시아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19%, 유럽 12%, 미주 49%, 재보험 12%, 아시아 생보 9.1%를 차지하고 있음(부록 참조).

2) 1980년 미국 Houston General을 5,500만 달러에 인수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급등으로 해외사업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1998년에 매각하였음. 鈴木智弘(2015), わが國損生保會社の國際化:新たな成長とリスク管理の觀點から, 保険學雜誌 第629号, p. 123.

2007년까지 진출과 병행하여 재보험사업의 확대도 추진하였음.

- 2007년 이후 유럽과 미국 등 현지 고객에 대한 원보험 사업과 재보험 사업 확대를 위해 특화된 경쟁력있는 회사들(2008년 영국 로이드시장 Kiln Underwriting Limited<sup>3)</sup>와 미국 손보사 Philadelphia Consolidated Holding Corp<sup>4)</sup>)를 인수하는 한편 인도생명보험시장에도 진출하였음.
- 2011년에는 종업원후생복지사업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Delphi Financial Group<sup>5)</sup>를 인수하여 선진국 시장에서 수익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림 2〉 동경해상 그룹의 해외사업 전개 현황



자료: 동경해상 홈페이지(2015. 10. 14,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rashisa/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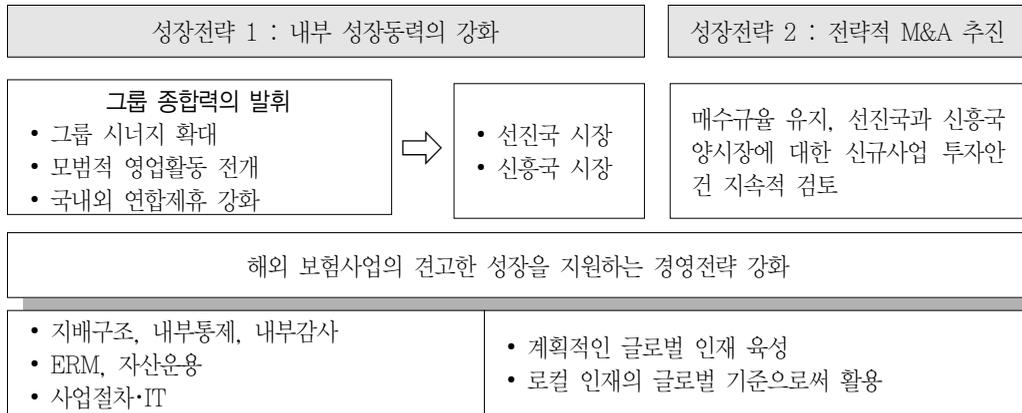
- 향후 동경해상 그룹은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에 대해 그룹 시너지 확대 등을 이용한 그룹종합력을 발휘하여 내부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해외 보험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외사업을 위한 조직도 각 사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그룹 내에 해외사업기획부를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해외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보험사업에 필요한 글로벌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현지 인재를 발굴하여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한 보험사업 확대를 추진함.

3) 유럽 보험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2015년 3월 말 현재 보험료 1,495억 엔, 순이익 96억 엔을 기록함.

4) 2014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 8,946만 달러, 종업원 1,693명임.

5) 2014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 14,289만 달러, 종업원 2,235명임.

〈그림 3〉 동경해상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 전략



자료: 동경해상 홈페이지(2015. 10. 14,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

## 나. MS&AD그룹

■ 동 그룹은 2001년 삼성해상과 주우해상이 합병하여 설립된 삼성주우해상이 주축 기업으로 2008년 중소형 생·손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삼성주우해상 그룹 지주회사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 사명을 MS&AD인 슈런스그룹지주로 변경하였음.

● 동 그룹은 삼성주우해상, 아이오이넷세이동화손보, 삼성다이렉트손보, 삼성주우해상아이오이생명, 삼성주우해상프라이머리생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손자회사를 통해 해외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sup>6)</sup>은 해외지역사업, 해외재보험사업, 아시아 생보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말 그룹 전체 보유보험료의 14%, 당기순이익의 24.5%를 차지하고 있음.

■ 동 그룹의 중심인 삼성해상의 경우 해외 보험사업은 1970년대에 대만, 홍콩 등에서 사업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주로 인수하였으나 1990년 이후 아세안 10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그룹으로 전환된 이후 2015년 현재 42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아시아시장 점유비가 50%를 넘고 있음(부록 참조).

● 동 그룹은 2004년 영국 AVIVA의 아시아 사업을 인수하여 현지의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험사

6) 2011년 3월 말 현재 지역별 보험료 비중을 보면 아시아 52%, 유럽 25%, 미주 16%, 재보험 7%임. 野村秀明(2011), 損害保険会社の海外事業展開, 平成23年度日本保険学会大会シンポジウム,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保険会社の海外進出」, p. 3.

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본고객 계약중심의 해외사업이 현지 고객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동 그룹은 아시아 생보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 그룹산하 생보사의 노하우 활용가능성, 손보 현지법인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가능성에 기초하여 아시아 생보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방식은 경영권확보를 위해 100% 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생보사인 경우에는 현지국가의 자본규제에 따라 소수의 지분출자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 보험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2006년 싱가포르에 중간지주회사 MSIG(Asia)를 설립하여 신속한 현지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신흥시장의 보험사를 매수 또는 출자하여 보험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향후 동 그룹의 해외보험사업 전략은 기존사업에서는 각 지역별 시장에서 수익의 안정적 확보전략을 추구하며, 신규영역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동 그룹과 보완적 강점을 지닌 글로벌 보험회사와 제휴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외 재보험사업은 지역적 리스크분산을 위한 자연재해리스크와 수익성이 큰 일반보험의 수재를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수익향상을 도모하며, 아시아 생보시장 사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표 1〉 2015년 MS&AD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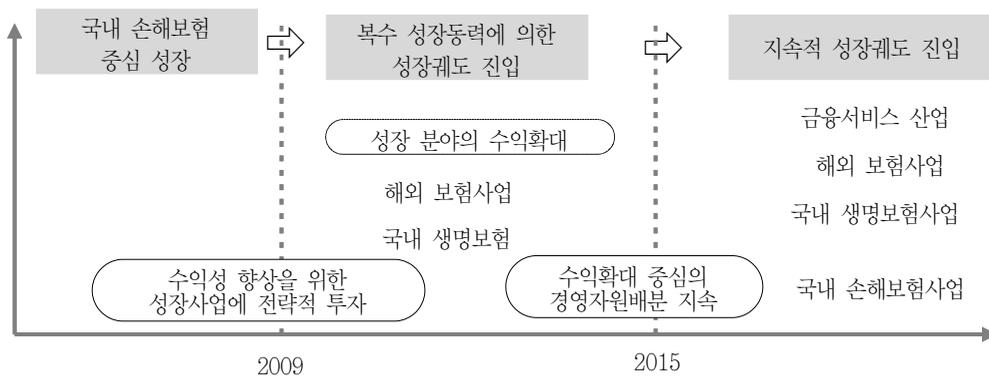
구분	부문별 사업전략		
해외 지역 사업	기존 사업	아시아	아세안시장
			거대시장(인도, 중국)
			신규진출시장
		유럽시장	로이드, 영국, 유럽대륙시장 수익 확대, 아프리카 일본기업대상 사업 체제 구축
		북미시장	일본기업대상사업 및 미국시장의 수익 안정적 확보
		중남미시장	Mapfre사와 제휴 등을 통한 서비스체제 강화, 브라질의 보험수익 안정적 확보
	신규 영역	도요타소매 사업	사업규모 확대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안정화, 자동차소매사업 전개국가 사업 확대
M&A 전략		성장지역 및 분야에 신규사업투자 지속	
	글로벌제휴 전략	본 그룹과 보완적 강점을 보유한 글로벌 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한 전략적 활용	
해외재보험 사업	수익향상을 위한 수재 포트폴리오 구축(지역적 리스크분산을 감안한 자연재해리스크 수재, 일반보험 수익중심 수재, 고객기반 확대)		
아시아 생보사업	- 수익성, 성장성 제고를 위한 전략 추진(출자처에 대한 경영관리 및 리스크관리 강화, 판매채널 강화) - 신규사업 투자 정보 수집, 분석, 검토의 지속		

자료: MS&AD Holdings, 2015 MS&AD Integrated Report, p. 55.

## 다. 손보재팬일본흥아 그룹

- 동 그룹은 손보재팬과 일본흥아손보, 생보사를 자회사로 하여 2010년 4월에 설립된 NKSJ지주사가 전신이 되며, 2014년 9월에 손보재팬일본흥아지주로 변경되었음.
  - 2015년 3월 현재 동 지주사는 손보 5개사, 생보 1개사, 해외 16개 자회사, 증권 등 3개 자회사 등 총 121개 자회사와 관련회사 14개사로 구성
  - 2015년 3월 말 현재 해외 보험사업은 32개국 210개 도시에서 그룹전체 보험료의 11.6%에 해당하는 2,915억 엔의 보험료를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186억 엔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해외사업 지역별 보험료를 보면 유럽 31.4%, 중동 7.8%,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2.7%, 남미 42.0%, 북미 6.1%로 유럽과 남미에서 73%의 높은 비중이 특징임.
- 동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2009년부터 그룹성장을 국내시장 중심으로부터 다변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있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확대되는 분야에 경영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동 그룹은 재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4년 5월 영국 Canopus Group Limited를 인수하여 로이드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프랑스 최대 재보험사인 SCOR에 1,100억 엔을 출자하였음.
  - 다른 그룹과 달리 브라질, 멕시코, 버뮤다 등 중남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어 해외시장 보험료의 50%를 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그림 4〉 SOMPO그룹의 해외 보험사업 계획



자료: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の現状 2015, p. 15.

### 3. 일본 3대 손해보험 그룹의 해외진출 성과

- 일본의 3대 손보그룹은 국내 보험시장 보험료가 1996년에 최고에 도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보험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들어 보험료와 순이익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룹별 해외 보험사업 성과는 추진기간과 전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룹별 성과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사업이 그룹 사업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룹별 해외 보험시장 보험료는 국내 손보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5년 3월 말에 각 그룹 보유보험료의 10%를 넘어서고 있음.
  - 가장 일찍 해외 보험사업을 추진해 온 동경해상그룹은 2015년 3월 현재 그룹전체 보유보험료의 41.6%를 해외시장에서 인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15.8% 증가하고 있음.
  - 손보재팬그룹은 해외 보험시장 보험료의 연평균 성장률이 48.3%로 3대그룹 중 가장 크지만 그룹 전체 보험료의 비중은 11.6%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 낮은 상태임.
  - MS&AD그룹은 해외 보험시장의 보험료 성장이 다른 그룹에 더딘 상황이지만 2015년 3월 말 현재 해외 시장 보유보험료는 그룹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3그룹의 공통적인 것은 재보험사업을 최근 들어 리스크분산 측면에서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순이익의 비중이 해외사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2〉 3대 그룹 해외 보험시장의 보유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전체시장 보유보험료	동경해상	22,721	23,245	25,580	28,707	31,276	8.3
	MS&AD	25,414	25,588	26,394	28,095	29,407	3.7
	손보재팬	19,332	19,737	20,626	22,689	25,080	6.7
해외시장 보유보험료	동경해상	5,265	4,997	7,343	10,745	13,026	25.4
	MS&AD	2,643	2,622	2,878	3,690	4,159	12.0
	손보재팬	464	533	987	1,585	2,915	58.3
해외시장 보험료비중	동경해상	23.2	21.5	28.7	37.4	41.6	15.8
	MS&AD	10.4	10.2	10.9	13.1	14.1	8.0
	손보재팬	2.4	2.7	4.8	7.0	11.6	48.3

주: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  
 자료: 각사 홈페이지의 IR자료 및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각 그룹별 해외 보험사업의 당기순이익이 그룹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도)을 보면, 2000년대 초에는 크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경영요소로 기능하고 있음.

- 손보재팬그룹의 2014년도 해외사업 순이익기여도는 다른 그룹에 비해 보유보험료 증가속도와 유사하게 연평균 45.8% 증가하고 있지만 순이익 기여도는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낮은 13.4%를 기록하고 있음.
- 동경해상과 MS&AD그룹은 순이익 기여도의 증가속도가 손보재팬그룹에 비해 낮지만 기여도는 각각 58.8%, 24.5%로 매우 높은 상태로 기업가치 창조에 해외 보험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 3대 그룹 해외 보험사업의 당기순이익 기여도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전체시장 순이익	동경해상	719	60	1,295	1,841	2,474	36.2
	MS&AD	145	-875	874	948	1,557	81.0
	손보재팬	807	12	1,116	1,015	1,383	14.4
해외시장 순이익	동경해상	248	-119	692	1,369	1,455	55.6
	MS&AD	18	-1,123	135	180	382	114.6
	손보재팬	24	-197	118	78	186	66.8
해외시장 기여도	동경해상	34.5	-198.3	53.4	74.4	58.8	14.3
	MS&AD	12.4	128.3	15.4	19.0	24.5	18.6
	손보재팬	3.0	-1,641.7	10.6	7.7	13.4	45.8

주: 1) 기여도= 해외시장순이익 / 전체시장 순이익

2)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

자료: 각사 홈페이지의 IR자료 및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또한 해외 보험사업의 수익성을 매출액이익률(순이익/해외시장 보유보험료)로 보면 전체시장 매출액이익률 보다 3대 그룹 모두 1~3%p 높게 나타나 해외 보험사업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동경해상그룹과 MS&AD그룹의 해외시장 수익성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3대 그룹 해외 보험사업의 매출액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전체시장	동경해상	3.16	0.26	5.06	6.41	7.91	24.1
	MS&AD	0.57	-3.42	3.31	3.37	5.29	91.6
	손보재팬	4.17	0.06	5.41	4.47	5.51	5.4
해외시장	동경해상	4.71	-2.38	9.42	12.74	11.17	25.7
	MS&AD	0.68	-42.83	4.69	4.88	9.18	74.5
	손보재팬	5.17	-36.97	11.96	4.92	6.38	7.2

주: 1) 매출액이익률(return on premium)은 해외 보험사업 순이익 / 해외 보험사업 보유보험료

2)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임(당해연도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

자료: 각사 홈페이지의 IR자료 및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4. 요약 및 시사점



■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7,80년대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었지만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동력의 중요한 경영부분이 되었으며, 해외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순이익이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각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흥시장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형태로 선제적으로 진출하고, 세계시장의 70% 이상인 유럽 및 미국 등 선진 시장에도 현지의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 확대와 수익성 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각 그룹은 해외 보험사업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경영요소임을 인식하고 경영자원을 해외 보험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당국도 해외 보험사업과 관계된 자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사의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sup>7)</sup>

7) 일본 금융청은 2014년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크게 완화한 보험법 제106조 제4항을 신설하였음.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회사, 은행, 보험업을 행하는 외국회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 금융기관 인수 시에 제약요인이라는 점을 감독당국이 받아 들여 해외 금융기관 등을 매수할 때 자회사 업무범위의 특례를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인수한 해외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보험업법상 자회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년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堀内勇世, 保険会社の海外展開に係る規制緩和; 2014年の保険業法等の改正法案より, 大和総研, 2014년4월10일.

〈표 5〉 일본 3대 손보그룹 해외 보험사업의 변화와 성과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목적	일본 기업 해외사업 지원	1996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동차대수 둔화 등으로 저성장 극복	국내 저성장극복과 보유리스크의 분산
고객	자국 기업	성장성이 있는 아시아 시장 중심, 자국기업	선진국 시장진입, 현지 고객으로 전환, 신흥시장 수익성 확대
취급보험	기업성 보험(국내계약의 부수계약), 재보험	자동차보험: 현지 고객 기업성보험: 자국 기업	선진국 시장(니치마켓 진출), 재보험 사업 대폭 확대
방법	-1960년대까지는 해당국 보험회사 중개사와 대리점 계약 -1970년대 이후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치	법인, 지점 설치	주요 진출지역의 인수합병 또는 제휴 전략
성과	미미	미미	매우 좋음

자료: 野村秀明(2011), 損害保険会社の海外事業展開, 平成23年度日本保険学会大会シンポジウム,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保険会社の海外進出」, p. 4; 鈴木智弘(2015), わが國損生保會社の國際化: 新たな成長とリスク管理の觀點から, 保険學雜誌 第629号, pp.114~119 참조 정리.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990년대 들어 해외진출을 성장잠재력이 있는 아시아 시장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sup>8)</sup>하고 있지만 해외 보험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는 일본 3대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 보험료는 2006년 927억 원에서 2011년 2,671억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보유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0.34%에서 2011년 0.45%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 또한 해외보험시장의 순이익 기여도(비중)는 1% 정도로 일본 3대그룹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해외보험사업의 매출액이익률은 일본 3대그룹과 유사하게 10%를 넘어서고 있어 해외사업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 중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가 8개국에 진출하여 23개 점포(현지법인 16개, 지점 7개)를 운영하고 있음. 진출국가 중 선진국은 미국 8개 점포(법인 3개), 일본 1개 지점, 영국 2개 법인이며 기타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가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9. 3), “'14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표 6〉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 성과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상)	2014(상)
보유 경과 보험료	전체	257,241	295,862	374,954	438,322	522,445	614,084	332,719	348,184
	해외	927	1,139	1,307	1,543	2,120	2,671	2,302	2,561
	비중	0.34	0.35	0.36	0.36	0.42	0.45	0.71	0.76
당기 순이익	전체	10,678	16,799	13,153	15,483	20,411	24,419	11,360	14,341
	해외	134	251	238	193	249	-519	441	-6
	비중	1.26	1.49	1.81	1.24	1.22	-2.13	3.88	-0.04
매출액이 익률	전체	3.90	5.21	3.59	3.65	4.04	4.07	3.49	4.25
	해외	14.47	22.03	18.18	12.47	11.73	-19.44	19.16	-0.21

주: 1) 매출이익률은 “당기순이익/경과보험료×100”임. 해외실적은 환율 1,100원/달러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2) 2013년과 2014년은 상반기 6개월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전체실적은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을 활용하고, 해외보험 사업실적은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해외점포 영업실적”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저성장 저금리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분야로 인식해 핵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실손보험의 수요에 힘입어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포화에 이르게 되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보험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외형중심의 영업경쟁에서 탈피하여 보유와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원 배분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손해보험 중심으로 성장한 모델과 달리 기업성과 가계성 손해보험의 본연의 상품에 대한 전문성(리스크평가, 가격결정, 보험약관 개발, 보유와 출수재 등 언더라이팅), 개별 리스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등 해외사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kiq**

부록: 일본 3대그룹의 진출별 진출형태 현황(2015. 3월 말 현재)

(단위: 억 엔)

그룹	총자산	보험료	진출 지역	진출형태				해외실적	
				사무소	법인	지점	대리점	보험료	이익
동경 해상	208,897 (1,963,632 억 원)	31,276 (293,994 억 원)	미국	3	16	2	2	6,312	872
			캐나다	1		1			
			중남미	2	3	-	-	1,321	91
			유럽	14	11	8	5	3,048	292
			아시아	13	21	4	1	2,345	200
			소계	33	51	15	8	13,026	1,455
			국가 수	34개국 469개 도시					
MS&A D	187,876 (1,766,034 억 원)	29,407 (276,426 억 원)	미국	14	17	5	2	662	-79
			캐나다	1	1	-	-		
			중남미	4	3	1	-		
			유럽	9	27	24	-	1,187	167
			아시아	16	39	14	-	2,371	314
			소계	44	87	44	2	4,159	382
			국가 수	42개국					
손보 재팬	102,534 (963,820 억 원)	25,080 (235,752 억 원)	미국	0	4	1	1	178	21
			캐나다	-		1	1		
			중남미	-	7	-	-	1,223	6
			유럽	5	16	2	1	1,142	102
			아시아	7	17	3	4	372	57
			소계	12	44	7	7	2,915	186
			국가 수	32개국 210개 도시					

주: 1) 환율은 9.4원/엔(2015. 10. 21)을 적용.

2) 유럽에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포함되고 아시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되었음.

3) MS&AD그룹의 보험료와 이익의 합계는 지역별 합계와 불일치함(공표자료).

자료: 각사 홈페이지의 홍보 및 연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5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인 | 강 호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